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의  
기대효과

2008. 10

외교통상부



# 목 차

요약 ... 1

## 제1장 VWP 개요 및 추진 현황 ... 9

제1절 VWP 개요 및 추진 현황 ... 9

1. VWP 개요 ... 9
2. VWP 동향 및 추진 현황 ... 14

제2절 VWP 가입으로 인한 주요 변화 ... 18

1. 미국 비자발급 현황 및 절차 ... 18
2. VWP 가입 후 주요 변화 ... 23

## 제2장 VWP 관련 국민의 의식과 기대 ... 28

제1절 조사 개요 ... 28

1. 조사 목적 ... 28
2. 조사 설계 ... 29

제2절 비자 발급 만족도 및 불편사항 ... 34

1. 비자 발급 만족도 ... 34
2. 비자 발급 불편사항 ... 35

제3절 VWP 인지도 ... 36

1. VWP에 대한 인지도 조사 ... 36
2. VWP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지식 조사 ... 38

제4절 VWP의 기대효과 ... 40

1. 개인적 측면의 VWP 기대효과 ... 40

- 2. 한·미 관계 증진 ... 41
- 3. 국가 이미지 제고 ... 42
- 4.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 43
- 5. 인적교류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증대 ... 44
- 6. VWP 가입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 ... 45

제5절 VWP 추진 시 고려사항 및 보완사항 ... 46

- 1. VWP 추진 시 고려사항 ... 46
- 2. 중점 보완사항 ... 47

제6절 설문조사 요약 ... 48

- 1. 미국 비자 발급 절차 만족도 및 문제점 파악 ... 48
- 2. VWP에 대한 국민의 인식 파악 ... 48
- 3. 국민이 생각하는 VWP 기대효과 ... 48
- 4. VWP 추진 시 고려사항 ... 50

**제3장 VWP 가입국가 및 비자면제 사례 분석 ... 51**

제1절 VWP 가입국가 사례 분석 ... 51

- 1. VWP 가입국가의 국제적 위상 ... 51
- 2. VWP 시행 후 가입국가의 변화... 59

제2절 다양한 비자면제 사례 분석 ... 67

- 1. 우리나라의 비자면제협정 현황 ... 67
- 2. 유럽의 비자면제협정 사례 ... 71

**제4장 기대효과 분석 ... 74**

제1절 연구 모형 설계 ... 74

- 1. 기대효과 연구 모형 ... 74

2.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 75

제2절 비용절감 효과분석 ... 76

1. 비용절감 세부항목 정의 및 추정 ... 76

2. 연간 B1/B2 비자발급 인원 예측 ... 82

3. 비용 절감액 산출 ... 85

제3절 산업연관분석 ... 88

1.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 88

2. VWP로 인한 관광산업 직접효과 ... 95

3. VWP 가입으로 인한 파급효과 ... 99

제4절 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 108

1. 한·미 관계 우호 증진 ... 108

2. 국가 이미지 제고 ... 110

3. 한·미간 비즈니스 기회 확대 ... 11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15**

제1절 VWP 가입의 기대효과 ... 115

1. 비용 절감 효과 ... 115

2. VWP 가입으로 인한 직접효과 ... 115

3. VWP 가입으로 인한 파급효과 ... 116

4. 정성적 기대효과 ... 117

제2절 요약 및 보완 과제 ... 119

1. 요약 ... 119

2. 향후 연구과제 및 보완 사항 ... 120

## 표 목차

|  |    |
|--|----|
| [표 1] VWP 가입조건                           | 10 |
| [표 2] 비자면제프로그램 관련법                       | 13 |
| [표 3] 연도별 비자거부율 추이                       | 16 |
| [표 4] VWP 가입 추진 경과                       | 16 |
| [표 5] 2007년 비자종류별 미국 비자 발급건수             | 19 |
| [표 6]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 21 |
| [표 7] 분실·위변조·차명여권 건수                     | 24 |
| [표 8] 기존 여권과 전자 여권과의 차이점                 | 25 |
| [표 9] ESTA 사전입국조회 결과                     | 26 |
| [표 10] 성/연령별 분포                          | 30 |
| [표 11] 최종 학력별 분포                         | 30 |
| [표 12] 직업별 분포                            | 31 |
| [표 13] 소득별 분포                            | 31 |
| [표 14] 지역별 분포                            | 32 |
| [표 15] 미국 여행 유무                          | 33 |
| [표 16] 미국 비자 발급경험                        | 33 |
| [표 17] 미국 연고별 분포                         | 33 |
| [표 18] VWP 국가의 OECD 가입현황                 | 54 |
| [표 19] 우리나라와 VWP 가입국의 일인당 GDP, OECD 가입여부 | 55 |
| [표 20] VWP 가입국가의 IMD 국가 경쟁력 순위           | 57 |
| [표 21] VWP 가입국가별 비자 발급건수                 | 60 |
| [표 22] 만명당 비자 발급건수 비교                    | 62 |
| [표 23] VWP 가입 후 국가별 방미객수의 변화             | 63 |
| [표 24] VWP 가입 후 국가별 방미객수의 변화율            | 64 |
| [표 25] 우리나라와 비자면제를 실시하는 국가               | 68 |

|   |     |
|---|-----|
| [표 26] 방한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한국 단기체제 비자면제조치 .....      | 69  |
| [표 27] 방일 한국인에 대한 일본 단기체제 비자면제조치 .....          | 70  |
| [표 28] 비용절감 세부항목 .....                          | 76  |
| [표 29] 교통비 산출방법 .....                           | 78  |
| [표 30] 왕복 통행시간 산출방법 .....                       | 80  |
| [표 31] VWP 가입 후 3개년 방미객 수 변화 .....              | 82  |
| [표 32] 연간 B1/B2 비자 발급건수 .....                   | 84  |
| [표 33] VWP 가입 후 비용 절감액 .....                    | 85  |
| [표 34] NPV 계산식 .....                            | 86  |
| [표 35] NPV를 통한 총비용 절감액 산출과정 .....               | 87  |
| [표 36] 투입계수행렬(A)과 부가가치계수(A <sup>v</sup> ) ..... | 92  |
| [표 37] 생산유발계수의 도출 .....                         | 93  |
| [표 38] 고용유발계수의 도출 .....                         | 94  |
| [표 39] 연도별 방한미국인 수 예측치 .....                    | 97  |
| [표 40] VWP 가입으로 인한 순수 방한미국인 수 증가 .....          | 97  |
| [표 41] VWP 가입으로 인한 관광산업 직접효과 .....              | 98  |
| [표 42] 관광산업의 분류 .....                           | 99  |
| [표 43]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                         | 100 |
| [표 44] 연도별 생산유발효과 .....                         | 102 |
| [표 45]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                       | 103 |
| [표 46] 연도별 부가가치유발효과 .....                       | 104 |
| [표 47]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                         | 105 |
| [표 48] 연도별 고용유발효과 .....                         | 106 |
| [표 49] VWP 가입으로 인한 총 파급효과 .....                 | 107 |
| [표 50] 방미객수 상위 10위 국가의 VWP 가입여부 .....           | 109 |
| [표 51] 우리나라와 VWP 가입국의 방미객수, 교역량 .....           | 112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우리나라 연도별 미국 비자 발급건수 .....                        | 18 |
| [그림 2] B1/B2 비자 발급 프로세스 .....                           | 20 |
| [그림 3] VWP 가입 후 변화 프로세스(B1/B2 비자) .....                 | 27 |
| [그림 4] 미국 비자 발급 절차 만족도 .....                            | 34 |
| [그림 5] 미국 비자 발급 시 불편사항 .....                            | 35 |
| [그림 6] VWP 대한 인지도 .....                                 | 37 |
| [그림 7] VWP 세부 내용에 대한 인지도 .....                          | 38 |
| [그림 8] 여행자 범죄정보 공유에 대한 견해 .....                         | 39 |
| [그림 9] 개인적 차원의 VWP 기대효과 .....                           | 40 |
| [그림 10] 한·미 관계 증진 .....                                 | 41 |
| [그림 11] 국가 이미지 제고 .....                                 | 42 |
| [그림 12]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                             | 43 |
| [그림 13] 인적교류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증대 .....                       | 44 |
| [그림 14] 전반적인 기대효과 .....                                 | 45 |
| [그림 15] VWP의 부정적인 영향 .....                              | 46 |
| [그림 16] 향후 VWP 가입 후 중점 보완사항 .....                       | 47 |
| [그림 17] 국민이 생각하는 VWP 기대효과 .....                         | 49 |
| [그림 18] 우리나라와 VWP 가입국의 GDP .....                        | 52 |
| [그림 19] VWP 가입국가 총 방미객수 변화 .....                        | 62 |
| [그림 20] VWP 가입 후 Inbound와 Outbound 관광객 수 추이(일본) .....   | 65 |
| [그림 21] VWP 가입 후 Inbound와 Outbound 관광객 수 추이(싱가포르) ..... | 66 |
| [그림 22] 기대효과 분석 구조 .....                                | 74 |
| [그림 23] VWP 가입 후 3개년 방미객 수 예측 .....                     | 84 |
| [그림 24]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 90 |
| [그림 25] 산업연관표의 형식 .....                                 | 92 |
| [그림 26] 방미한국인 수 및 방한미국인 수 .....                         | 95 |

|   |     |
|---|-----|
| [그림 27] 방미한국인 수와 방한미국인 수 회귀분석 .....               | 96  |
| [그림 28] 한국 방문 비희망 이유(서양인 대상) .....                | 110 |
| [그림 29] 각국별 방미객수와 교역량 간의 상관관계분석 .....             | 111 |
| [그림 30] 우리나라의 방미객수와 교역량과의 상관관계분석(1998-2005) ..... | 113 |

---

---

## 요 약

### 1. VWP 개요 및 추진 현황

#### ○ VWP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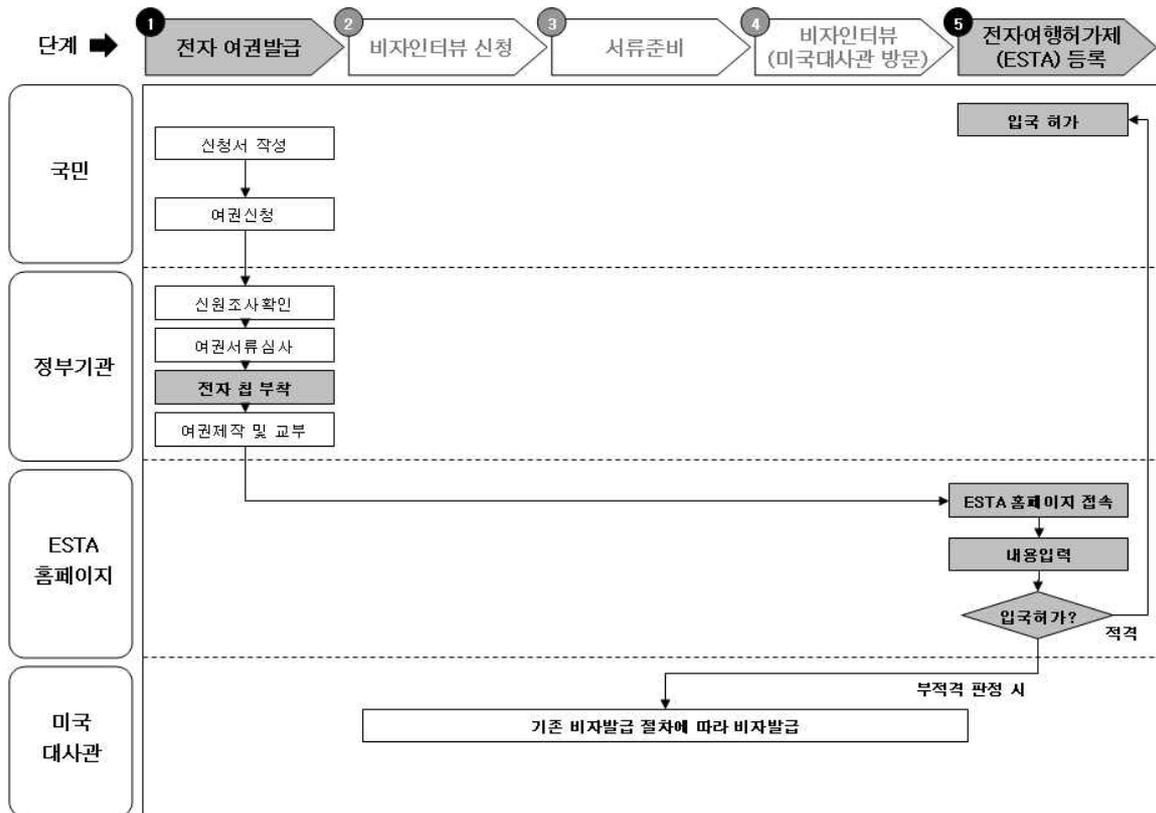
- (개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이하 VWP)은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국민에 대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임
- (가입조건) VW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자거부를 10% 이하, 도난·분실여권 통보체제 수립, 불법체류자 및 범법자 추방 협조, 개별 여행자 정보제공,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등의 가입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VWP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VWP 연내 가입을 목표로 세부 사항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에 있음

#### ○ VWP 가입으로 인한 주요 변화

- (비자 발급과정 축소) VWP 가입 후 비자인터뷰 신청, 관련 서류준비, 비자인터뷰의 과정이 축소되어 미국 여행 준비가 편리해짐
- (전자여권 소지 필요) 전자여권 소지자만 VWP 이용이 가능하므로 VWP를 이용하는 국민은 기존 여권 대신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함

-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미국 방문 전 여행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비행기 내에서 작성하는 입국서류 대신 출국 전에 인터넷을 통해 작성함

VWP 가입 후 변화 프로세스(B1/B2 비자)



## 2. VWP 관련 국민의 의식과 기대

### ○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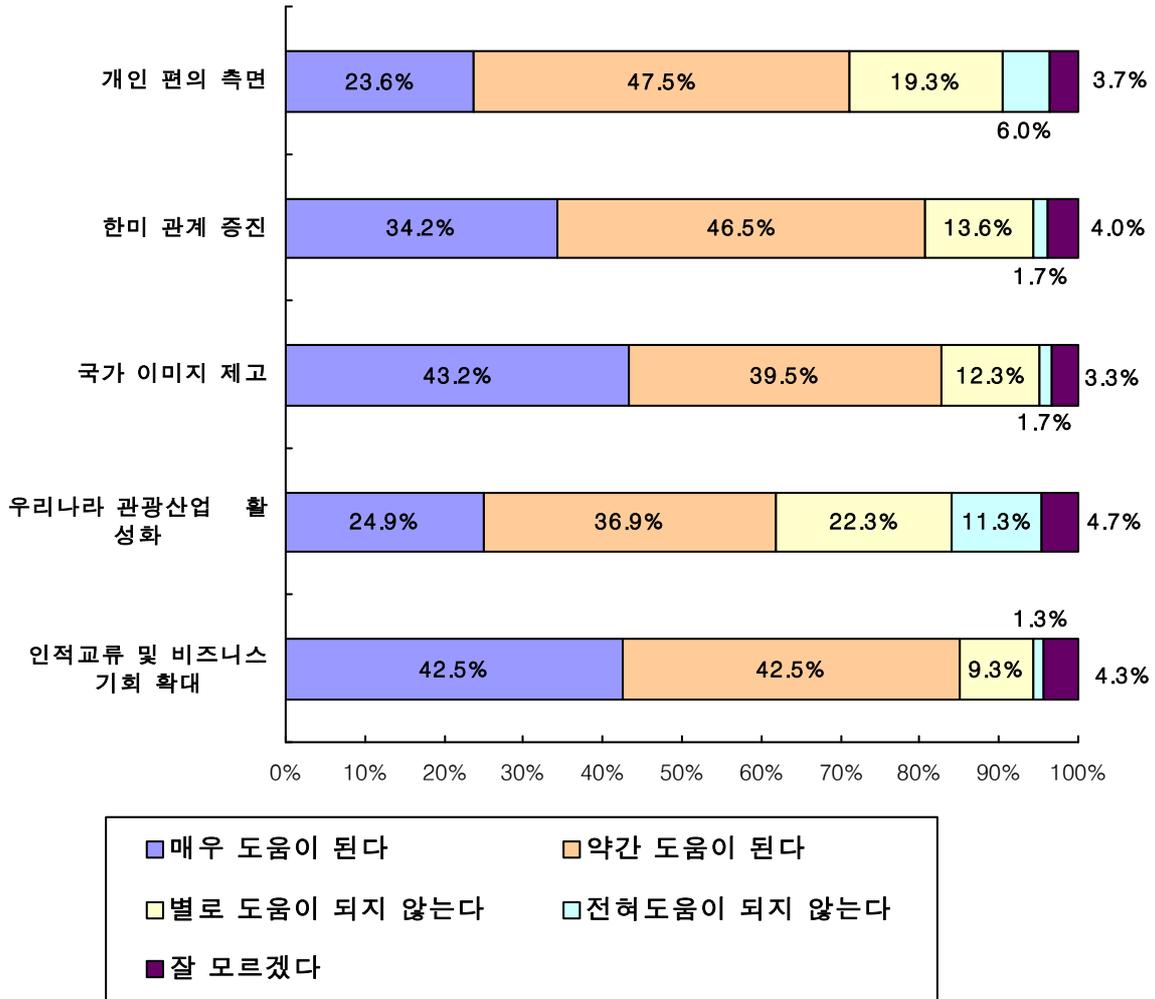
- 조사 기간: 2008년 9월 18일 ~ 9월 24일
- 조사 대상: 전국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 표본 크기: 총 301명
- 조사 지역: 서울특별시 및 전국 6대 광역시
- 조사 방법: 전화조사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5.7\%$
- 분석 방법: 빈도분석, 교차분석

### ○ 설문조사 결과

- (비자 발급 절차 만족도) 미국 비자 발급을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0.1%)이 미국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하여 '불만족한다(40.7%)'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9.9%)'라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불편사항) 가장 불편한 사항은 '비자 인터뷰의 대기시간이 길다(39.5%)'로 나타나, 직접적인 비자발급 수수료 비용(8.6%)보다 비자 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더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VWP 인지도) 응답자의 73.4%가 VWP의 전반적인 내용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임
- (세부내용에 대한 지식) VWP가 관광 및 상용 목적(53.2%)에 한하여 무비자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여행자 범죄정보 공유(36.9%), 전자여행허가제(30.6%), VWP 가입 유지 조건(35.5%) 등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음
- (VWP 가입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 VWP 가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81.7%가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였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국민 편의, 한·미 관계 증진, 국가 이미지 제고,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 교류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 증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국민이 생각하는 VWP 기대효과



- (VWP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견해) VWP 가입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VWP 악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으며, 불법체류, 관광수지 적자, 비자 변경 불가 등의 순서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홍보가 필요함
- (중점 보완사항) VWP 가입 후 중점 보완사항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관광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3. VWP 가입국가 및 비자면제 사례 분석

#### ○ VWP 가입국가의 국제적 위상

- (국제적 위상) VWP 가입국 대부분은 GDP 3만 불 이상의 경제 강국이며, OECD 회원국 대부분이 VWP에 가입되어 있고, IMD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 VWP 시행 후 가입국가의 변화

- (B1, B2 비자 발급건수) B1/B2 비자가 면제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VWP 가입국가는 평균 3,158건의 B1/B2 비자를 발급하였으며, 이는 전체 비자 발급건수의 18%를 차지함
- (만명당 비자 발급건수) VWP 가입국가의 만명당 전체 비자 발급건수는 13건, B1/B2 비자 발급건수 3건, B1/B2 이외 비자 발급건수 10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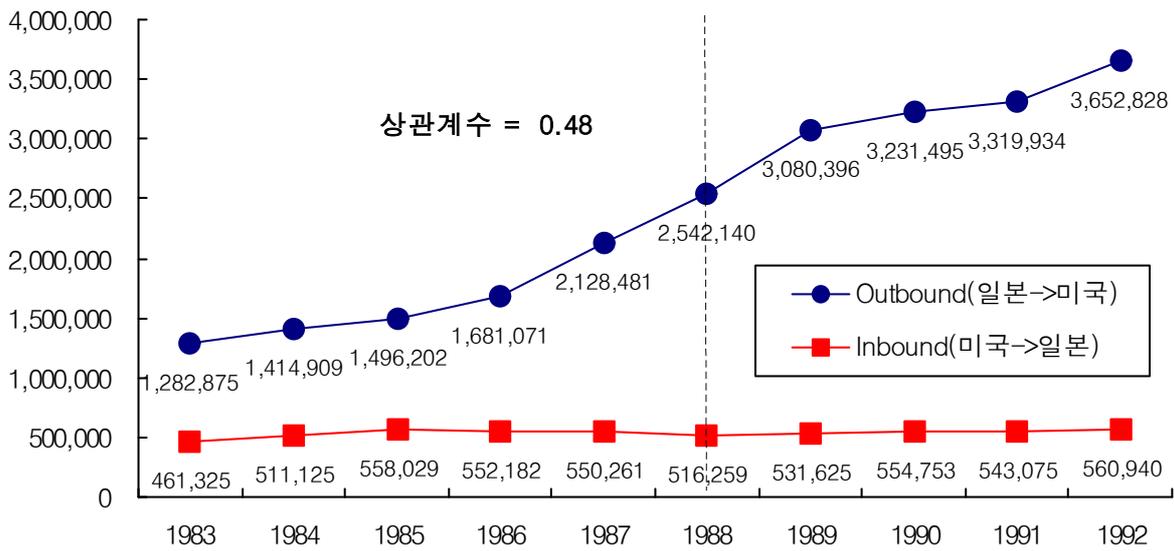
만명당 비자 발급건수 비교

| 국가       | 만명당 전체 비자 발급건수 | 만명당 B1/B2 비자 발급건수 | 만명당 B1/B2 이외 비자 발급건수 |
|----------|----------------|-------------------|----------------------|
| VWP 가입국가 | 13             | 3                 | 10                   |
| MOU 체결국가 | 40             | 31                | 9                    |
| 한국       | 91             | 71                | 20                   |

- (VWP 가입 후 방미객수 증가율) VWP 가입 전후 3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가입년도 12.7%, 가입 1년 후 15.3%, 가입 2년 후 4.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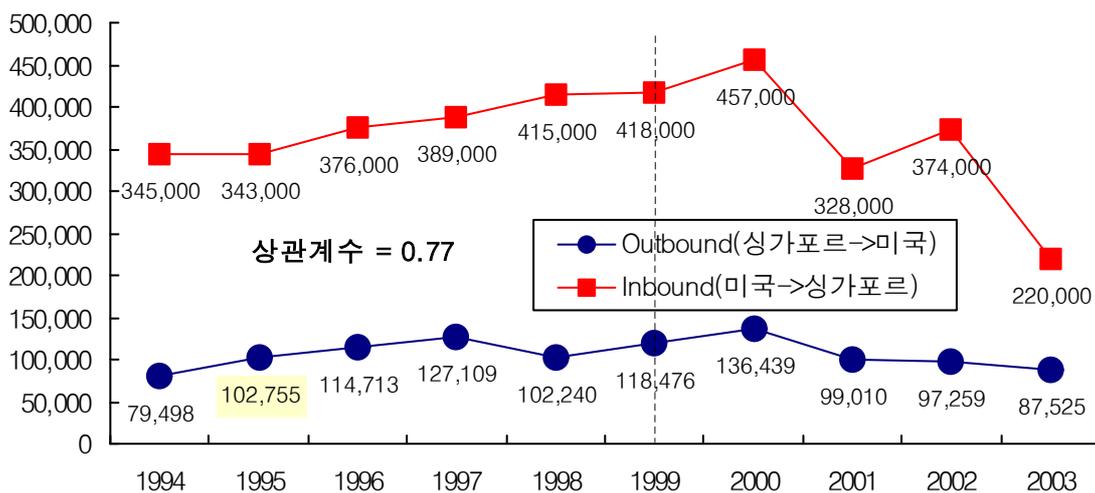
- (VWP 가입 후 Inbound & Outbound 변화)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VWP 가입 후 방미 관광객 증가와 동시에 미국인 관광객도 유사한 패턴으로 증가함
- 일본의 경우 방미 관광객과 방일 관광객 사이의 상관계수가 0.48이나 가입 후 5개년 동안의 상관계수는 0.92임

VWP 가입 후 Inbound와 Outbound 관광객 수 추이(일본)



- 싱가포르의 경우 방미관광객과 싱가포르 여행하는 미국인 사이의 상관계수가 0.77임

VWP 가입 전후 Inbound와 Outbound 관광객 수 추이(싱가포르)



- (비자면제 사례) 일본과 한국, 유럽지역의 비자 면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인적교류를 통한 우호 관계 증진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불법체류자의 증가, 외국인 범죄의 증가, 테러의 위협 등의 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4. 기대효과 분석

##### ○ 비용절감 효과

- (연도별 비용절감 효과) VWP 가입 후 3개년 동안의 비용 절감액은 가입년도 약 1,407억 원, 가입 1년 후 약 1,621억 원, 가입 2년 후 약 1,693억 원의 연도별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 (총 비용절감 효과) 미국 비자면제로 인한 정량적인 비용절감 효과는 총 2조 1,369억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 VWP 가입으로 인한 직접효과

- (VWP 가입으로 인한 방한미국인 수 증가) VWP 가입으로 인한 방한미국인 수 증가량은 VWP 가입년도 141,397명, 가입 1년 후 243,511명, 가입 2년 후 266,989명으로 예측됨
- (관광산업 직접효과) 방한미국인 증가를 통한 관광산업의 3개년 동안의 직접효과는 가입년도 약 1,261억 원, 가입 1년 후 약 2,172억 원, 가입 2년 후 약 2,382억 원으로 산출됨

---

---

## ○ VWP 가입으로 인한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연도별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한 결과 2009년 약 2,196억 원, 2010년 약 3,783억 원, 2011년 4,148억 원의 파급효과가 산출되어, VWP 가입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3개년 동안 총 약 1조 127억 원으로 예상됨
- (부가가치유발효과) 연도별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한 결과 2009년 약 966억 원, 2010년 약 1,665억 원, 2011년 약 1,826억 원의 파급효과가 산출되어, VWP 가입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3개년 동안 총 약 4,457억 원으로 예상됨
- (고용유발효과) 연도별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한 결과 2009년 3,808명, 2010년 6,559명, 2011년 7,194명의 고용 파급효과가 산출되어, VWP 가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3개년 동안 총 17,561명으로 예상됨

## ○ 정성적 기대효과

- (한·미관계 우호 증진) 우리나라의 VWP 가입은 한·미 양국간의 인적교류의 활성화와 한·미관계 우호증진에 도움이 됨
- (국가 이미지 제고) VWP 가입국가들의 전반적인 국제적 위상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VWP 가입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됨
- (한·미간 비즈니스 기회 확대) VWP 가입으로 인해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 물적교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미간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제1장 VWP 개요 및 추진 현황

### 제1절 VWP 개요 및 추진 현황

#### 1. VWP 개요

#####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이하 VWP)

- (개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이하 VWP)은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국민에 대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임
  - 미 의회는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 217절의 제정을 통해 VWP 제도를 1986년에 신설하고 그 운영을 미 행정부에 위임하였음
  - VWP는 미국의 출입국 및 이민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의 제정과 운영은 미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 VWP는 관광 및 상용목적에 의한 무비자 방문이기 때문에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관광 및 상용목적이라도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입국할 경우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목적) 미국은 VWP 추진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간 관계 증진, 불필요한 여행 장벽 제거, 여행 산업의 촉진, 원활한 영사 업무 추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가입조건) 미 행정부는 이민국적법 제 217절에 근거하여 VW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VWP 가입국 확대 시 가입국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표 1]과 같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표 1] VWP 가입조건

| 가입조건                   | 내 용   |
|------------------------|---|
| 비자거부율 10% 미만           | 관광·상용·유학비자 등 비이민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그 발급이 거부된 비율이 전체 신청자 수의 10%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 상호주의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동등한 수준의 무사증입국을 허용함   |
| 바이오정보 인식 여권 소지         | VWP에 따라 무비자 미국 입국을 원하는 여행자는 안면정보(디지털안면사진), 지문정보 등의 바이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여권을 소지함    |
| 사법 협력                  | 무사증 입국 허용이 양국의 법집행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며, 양국 사법 당국간 협력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
| 도난·분실 여권 정보 공유         | 양국이 발행한 여권 중 도난·분실된 여권이 타인에 의해 오용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공유함                   |
|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도입 협조 | 미국 정부가 구축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가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함                   |
| 불법체류자·범법자 추방 협조        | 상대국 법원에 의해 최종적인 추방명령을 받은 자국민을 수용함   |
| 여행자 정보 공유              | 양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여행자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함                                    |
| 공항보안 강화                | 공항 내 제한구역 등에 관한 보안 요건을 강화함  |
| 항공 보안요원 탑승             | 항공기를 테러리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내 보안요원을 탑승함  |
| 여권 및 여행자 문서 기준 강화      | 여권 및 여행자 문서가 위조되어 오용되지 않도록 여권 및 여행자 문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함                            |
| 대테러 협력                 | 국제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 사법당국 및 정보당국간 협력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함                             |

출처: [www.vwpkorea.go.kr](http://www.vwpkorea.go.kr), 비자면제프로그램 홍보 홈페이지, 2008

- (가입국가) 현재 VWP는 전 세계 27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직 신규 가입국가가 없음
  - 유럽 VWP 가입 22개국: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스웨덴
  - 아시아 VWP 가입 3개국: 일본, 브루나이, 싱가포르
  - 대양주 VWP 가입 2개국: 호주, 뉴질랜드

### ○ VWP 관련법 및 역사

- VWP는 1986년에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시작됨: 이민개정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 이민개정통제법에서 VWP가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이후 반복적으로 VWP의 효력을 지속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VWP 가입국은 29개까지 늘어났으나, 불법체류자 증가와 경제위기로 인한 불안 때문에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VWP에서 제외되었음
  - 현재 27개국이 VWP에 참여하고 있음
  
- 2000년 10월 30일에 영구비자면제프로그램법이 승인되었고, VWP의 효력이 영구화되면서 기록, 보고 의무조항들이 강화되었음: 영구비자면제프로그램법(Visa Waiver Permanent Program Act)
  - 2007년 10월 1일까지 VWP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기계판독 가능한 여권 소지를 의무화하였음
  - VWP 신청자는 검사체계(lookout system)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VWP 참여국가는 VWP 가입 유지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받아야 함
  - VWP 참여국 결정을 위한 비자거부율을 측정함에 있어 인종·성·장애로 인한 비자거부는 비자거부율에서 제외함

- 2001년 10월 26일에 제정을 통해 기계판독 가능한 여권 소지 의무조항이 강화됨: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 of 2001)
  - VWP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2003년 10월 1일까지 기계판독가능 여권을 소지하여야 함
  - VWP 가입국이 기계판독가능 여권의 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경우, 국무장관이 2007년 10월 1일까지 의무조항 면제가 가능함
  - 국무장관은 2007년까지 매년마다 지정된 VWP 국가들이 비접촉식 여권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 2003년 9월 24일에 국무장관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VWP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계판독가능 여권을 소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기계판독가능 여권이 없을 경우 비자를 발급받게 하였음
  
- 2002년 5월 14일에 제정된 국경 보안법은 VWP 가입국들이 국민들에게 전자여권(기계판독가능, 비접촉식, 바이오인식정보)을 발행하는지 확인하도록 함: 강화된 국경 보안과 비자 입국 개정법(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of 2002)
  - 국경보안법은 VWP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2004년 10월 26일 이후 전자여권에는 바이오인식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함
  - 바이오인식정보 여권 의무조건은 2005년 10월 27일까지 연장됨
  - 2005년 10월 27일 이후 발급되는 전자여권은 기계판독 가능한 비접촉식의 바이오인식정보 포함 여권이어야 함
  - 국경보안법은 VWP 가입국에게 도난·분실 여권을 적절한 시기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표 2] 비자면제프로그램 관련법

| 관련법  | 시 기         | 내 용                     |
|--|-------------|-------------------------|
| 이민개정통제법<br>(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 1986년       | VWP의 시초                 |
| 영구비자면제프로그램법<br>(Visa Waiver Permanent Program Act)                                   | 2000년10월30일 | VWP의 영구화                |
| 미국 애국법<br>(USA Patriot Act of 2001)  | 2001년10월26일 | 전자여권 조건 강화              |
| 강화된 국경 보안과 비자 입국 개정법<br>(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of 2002) | 2002년5월14일  | 전자여권에 바이오인식 정보 포함 조건 강화 |

## 2. VWP 동향 및 추진 현황

### ○ VWP 개편 동향

- (개편 배경) 9.11 테러 이후 VWP를 남용하여 테러리스트들이 입국했다는 사실 때문에 VWP에 추가로 가입된 국가가 없었으나, 보안 조치 강화와 우방국들의 VWP 가입 노력으로 최근에 VWP 가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
  - VWP의 허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각에서는 VWP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9.11 테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난 지금, 미국 내에서는 VWP 가입국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VWP 확대가 미국의 안보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미국 내 관광산업의 발달, 미국의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 미국 국무부 영사 인력의 효율화 등의 목적으로 VWP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대테러 우방국들의 지속적인 VWP 가입 노력이 VWP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음
  
- (개편 현황) 부시 대통령은 2006년 11월 28일 에스토니아 방문 중에 VWP 가입을 쉽게 하면서 출입국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VWP 수정 방침을 발표함
  - VWP 개편 법안의 확정·발효가 우리나라의 VWP 가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VWP 가입을 위한 미국 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VWP 개편 법안은 “9.11 위원회 법안”이라는 패키지 법안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으며, 이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 강화 측면에서 VWP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함

- (개편 내용) 주요 개편 내용은 융통성 있는 비자거부를 적용, 도난·분실여권 통보체제 수립, 불법체류자·범법자 추방 협조, 개별 여행자 정보제공,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등으로 요약됨
  - 융통성 있는 비자거부를 적용: 전년도 비자거부율이 10%를 상회하지 않거나 비자기간 초과 체류비율이 향후 국토안보부에 의해 책정될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비자거부율 3% 조건 배제 가능
  - 도난·분실여권 통보체제 수립: 가입국은 미국과 협정을 통해 도난 및 분실여권에 대한 정보를 일정 시한 내에 미 정부 또는 인터폴에 제공
  - 불법체류자·범법자 추방 협조: 해당 정부는 집행 가능한 최종 추방명령(final executable order of removal)을 받은 VWP 가입국 국민, 시민에 대해 동 명령 발급 3주 내에 추방에 협조함
  - 개별 여행자 범죄 정보제공: 가입국은 미국과 협정을 통해 가입국 국민이 미국 여행 시 미국과 시민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여행자 범죄 정보를 공유함
  - 전자여행허가제: 미국에 무비자 입국 희망자는 미국 출입국 당국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제공하면, 신원정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미국 입국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출국통제체제 확립: 법 발효 후 1년 내 모든 VWP 입국자에 대한 출국통제 체제를 확립하고 6개월 내 진전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야 함
  - 기타 사안: VWP 가입국 선정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무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VWP 가입국은 미국과의 대테러 동맹국으로 공항보안, 기내보안관 도입, 여권 및 여행증명서 보안 등이 확보되어야 함

## ○ 우리나라 VWP 가입 추진 현황

- 2007년 8월 3일 미 VWP 현대화 법안 확정으로 우리나라의 VWP 가입이 가시화되었으며, 현재 비자거부율, 기계판독 생체정보인식 여권발급, 사법기관 범집행 협조 등의 VWP 핵심 가입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 2007년 비자거부율은 4.4%로 VWP 가입 기준인 비자거부율 10% 이하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

[표 3] 연도별 비자거부율 추이

| 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
| 비자거부율 | 3.23% | 3.28% | 3.6% | 4.4% |

출처: 미국무부

-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전면 발급으로 기계판독 생체정보인식 여권에 대한 가입조건을 충족함
- 사법기관 법집행 협조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 밀입국, 비자 신청 문서 위변조, 여권 밀매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양국 사법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효율적인 협력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4] VWP 가입 추진 경과

| 연도    | 날짜      | 내 용                 |
|-------|---------|---------------------|
| 2004년 | 12월 07일 | 제1차 한·미 사증워킹그룹회의 개최 |
| 2005년 | 02월 01일 | 제2차 한·미 사증워킹그룹회의 개최 |
|       | 04월 14일 | 제3차 한·미 사증워킹그룹회의 개최 |
|       | 09월 15일 | 제4차 한·미 사증워킹그룹회의 개최 |
|       | 12월 08일 | 제5차 한·미 사증워킹그룹회의 개최 |
| 2006년 | 03월 14일 | 제6차 한·미 사증워킹그룹회의 개최 |
|       | 05월 19일 | 제7차 한·미 사증워킹그룹회의 개최 |

|       |           |   |
|-------|-----------|---|
|       | 09월 22일   | 제8차 한·미 사증위킹그룹회의 개최                         |
|       | 12월 15일   | 제9차 한·미 사증위킹그룹회의 개최 및 한국의 VWP 가입을 위한 로드맵 합의 |
| 2007년 | 04월 30일   | 우리측 보안현황 설명팀 미국 파견 (워싱턴 D.C.)               |
|       | 05월 31일   | 제10차 한·미 사증위킹그룹회의 개최                        |
|       | 06월 30일   | 부시 대통령, 한국의 VWP 가입 지지 성명                    |
|       | 07월 24일   | 미 국토안보부 장관 특사 방한 및 제1차 한미 협의회 개최 (서울)       |
|       | 08월 03일   | 미 VWP 현대화 법안 확정                             |
|       | 11월 6~7일  | 제2차 한미 협의회 개최 (서울)                          |
| 2008년 | 1월 30~31일 | 제3차 한미 협의회 개최 (워싱턴 D.C.)                    |
|       | 04월 18일   | VWP 양해각서(MOU) 서명 (워싱턴 D.C.)                 |
|       | 04월 19일   | 한·미 정상, VWP 연내 가입을 목표로 추진키로 확인 (워싱턴 D.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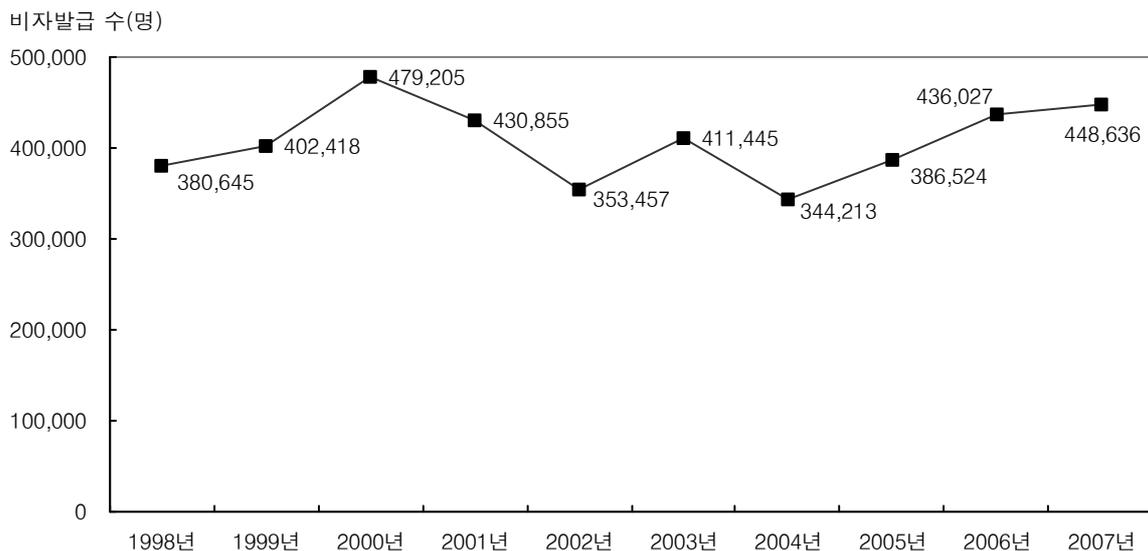
## 제2절 VWP 가입으로 인한 주요 변화

### 1. 미국 비자 발급 현황 및 절차

#### ○ 미국 비자 발급 현황

- (미국 비자 발급 추이) 최근 10년 간 미국 비자 발급건수는 평균 407,373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우리나라의 최근 10년 동안 평균 미국 비자 발급건수는 407,373건이며, 2007년의 미국 비자 발급건수는 448,636건임
-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은 8.8%이며, 2007년 증가율이 2.9%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음
- 2000년을 기준으로 전체 미국 비자 발급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004년부터 미국 비자 발급건수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임

[그림 1] 우리나라 연도별 미국 비자 발급건수



- (B1/B2 비자의 비중) 2007년에 VWP를 통해 비자면제가 가능한 B1/B2(관광 및 상용목적)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351,351명이며 전체 미국 비자 발급건수의 78.3%를 차지하고 있음
- VWP 가입으로 비자면제가 가능한 비자는 관광과 상용목적으로 발급하는 B1/B2이며, B1/B2 이외의 비자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2007년 기준으로 B1/B2 비자는 351,351건이 발급되었으며, 전체 미국 비자 중 B1/B2의 비중은 78.3%를 차지하고 있음

[표 5] 2007년 비자종류별 미국 비자 발급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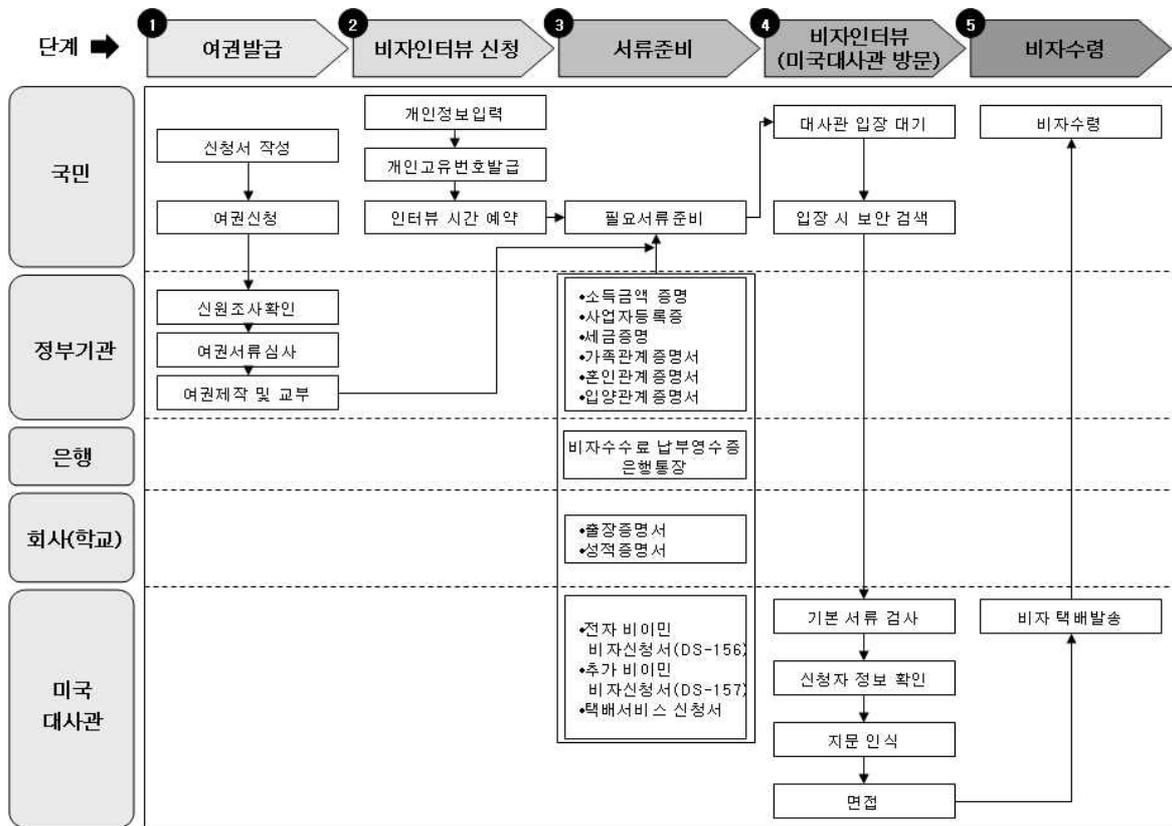
| 비자종류         | 비자목적                         | 비자<br>발급건수<br>(2007년) | 비중            |
|--------------|------------------------------|-----------------------|---------------|
| A            | 정부 공무원                       | 2,966                 | 0.7%          |
| <b>B1/B2</b> | <b>단기 상용 방문 및 관광</b>         | <b>351,351</b>        | <b>78.3%</b>  |
| C            | 미국 경유 방문                     | 495                   | 0.1%          |
| C-1/D        | 선원, 승무원과 선원                  | 4,763                 | 1.1%          |
| E            | 상사주재원, 투자자, 호주인 전문직 직원       | 3,606                 | 0.8%          |
| F            | 정규 교육 및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 53,169                | 11.9%         |
| G            | 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파견 근무        | 364                   | 0.1%          |
| H            | 전문직 직원, 임시직 근로자, 산업 연수생      | 6,789                 | 1.5%          |
| I            | 언론·보도 활동                     | 729                   | 0.2%          |
| J            | 문화 교류 방문자                    | 17,452                | 3.9%          |
| L            | 동일 회사 내 미국 지사 전근자            | 4,209                 | 0.9%          |
| M            | 직업교육 유학                      | 384                   | 0.1%          |
| O            | 과학, 예술, 운동, 사업, 교육 분야의 재능소유자 | 370                   | 0.1%          |
| P            | 운동선수와 예술인                    | 604                   | 0.1%          |
| Q            |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 70                    | 0.0%          |
| R            | 종교 활동 행사 참가자                 | 883                   | 0.2%          |
| 기타           |                              | 432                   | 0.1%          |
| <b>합계</b>    |                              | <b>448,636</b>        | <b>100.0%</b> |

출처: 미국무부

○ 미국 비자 발급 절차

- (비자 발급 절차) B1/B2 비자 발급 절차는 [그림 2]와 같이 여권발급, 비자인터뷰 신청, 서류준비, 비자인터뷰 (미국대사관 방문), 비자수령의 5단계로 이루어짐

[그림 2] B1/B2 비자 발급 프로세스



- (1단계: 여권발급) 여권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공문서로서 미국 여행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국가를 여행할 때에 반드시 필요함
  - 여권은 구청에서 신청 후 평균 5일 후 발급됨
  -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남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서 등의 병역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2단계: 비자인터뷰 신청) 비자인터뷰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인터넷 신청은 12,000원, 전화 신청은 19,000원의 비용이 소요됨
  - 비자인터뷰를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us-visaservices.com](http://www.us-visaservices.com))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비자인터뷰 시간을 예약하여야 함
  - 비자인터뷰 신청비용은 인터넷은 12,000원, 전화는 19,000원임
  - 비자인터뷰 신청 후 비자인터뷰까지 평균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인터넷에서 비자인터뷰 신청자는 예상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음
  
- (3단계: 서류준비) 비자 발급을 위해 서류는 정부기관, 은행, 회사(학교), 미국대사관 등에서 발급받으며, 필요한 서류 목록은 [표 6]과 같음

[표 6]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 발급기관   | 필요 서류   |
|--------|---|
| 정부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li> <li>· 소득금액 증명</li> <li>·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증명</li> <li>· 신청자의 정확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li> <li>· 미국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li> </ul> |
| 미국대사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li> <li>·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li> <li>·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li> </ul>   |
| 회사(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나 배우자가 봉급생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li> <li>· 출장으로 갈 경우에는 출장증명서</li> <li>·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li> </ul>  |
| 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li> <li>· 재정적인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은행통장 원본</li> </ul>   |

출처: 주한 미국 대사관

- (4단계: 비자인터뷰) 비자인터뷰는 보안검색, 서류검사, 신청자 확인, 지문인식, 인터뷰 순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한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임
  - 비자인터뷰 신청자는 예약한 인터뷰 날짜에 미국대사관에 미국 비자 관련 인터뷰를 실시하게 됨
  - 비자인터뷰는 보안검색, 서류검사, 신청자 확인, 지문인식, 인터뷰 순으로 진행됨
  - 2007년 10월 22일 이후부터 비자 인터뷰를 할 때 열손가락 지문인식을 통한 확인 제도가 시행됨
  - 비자인터뷰를 위해 신청자는 미국대사관에서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를 소요하고 있음
  
- (5단계: 비자수령) 비자인터뷰 후 발급된 비자는 택배로 발송되어 평균 3~5일 정도 후에 본인이 수령하게 되며, 평균 택배비용은 8,000원으로 조사됨
  - 비자 발급 후 택배는 DHL 일양택배와 한진택배에서 발송하며 택배 발송 후 평균 3~5일 후 수령이 가능함
  - 택배비용은 서울 6,000원, 경기도 8,000원, 지방 10,000원으로 신청자가 부담하며, 평균 택배비용은 지역별 평균값인 8,000원으로 계산함

## 2. VWP 가입 후 주요 변화

### ○ 관광 및 상용 목적 B1/B2 비자면제

- (B1/B2 비자면제)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미국에 90일 이내 방문할 경우, B1/B2 비자가 면제됨
  - B1/B2 이외의 비자는 기존의 비자 발급절차와 동일함
  - B1/B2 비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기존에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실시하였던 인터뷰 신청, 서류준비, 비자인터뷰 절차는 [그림 3]과 같이 생략됨
  - 인터뷰 신청, 서류준비, 비자인터뷰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비용 및 시간 절감이 예상됨
  - VWP 가입 후 관광 및 상용목적의 방미 신청자는 전자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이하 ESTA)에 접속하여 입국허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비자 Status 변경 불능) 기존에는 비자 Status 변경이 미국 현지에서 가능했으나, 향후 VWP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유학, 취업을 위한 비자 Status 변경이 불가능함

### ○ 전자여권 소지자만 VWP 이용이 가능

- (개념) 전자여권은 여권 책자 뒷표지 안에 칩과 안테나를 내장하여 여권 정보를 한번 더 수록한 여권을 나타냄
  - 전자여권은 외형상 현행 여권과 큰 차이는 없으며, 다만 여권 내에 여권 정보가 기록된 IC칩을 내장하고 여권 표지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하는 전자여권 심볼마크를 표시하는 점이 차이점임

- (도입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보안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전자여권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여권의 보안성 및 신뢰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
  - 여권 위·변조 차단: 신원정보면상의 정보를 칩에 한 번 더 전자적으로 수록하고 칩에 각종 보안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칩과 신원정보 페이지를 동시에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
  - 여권 도용 억제: 전자여권의 칩에 내장된 정보와 여권 소지자의 정보 등을 비교함으로써, 분실여권의 도용을 억제함
  - 정확·신속한 출입국 심사 구현: 전자여권발급이 확대되면 전자여권 전용 무인 출입국심사대도 확산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출입국 심사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여행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표 기] 분실·위변조·차명여권 건수

| 내 용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분실여권 신고건수    | 60,063건 | 59,336건 | 66,912건 |
| 위변조 여권 적발 건수 | 1,299건  | 1,240건  | 1,029건  |

출처: 외교통상부

- (도입 시기) 시스템 안정화 및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하여 2008년 3월 31일부터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시범 발급을 실시하였고, 2008년 8월 2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자여권의 발급을 시작함
  - 현재 바이오정보는 IC칩에 저장되지 않으며, 전자여권의 안정성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바이오정보 인식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
- (발급 수수료) 전자여권발급 수수료는 기존의 일반여권발급 수수료와 동일함
  - 칩 내장, 여권사무대행기관의 대폭적인 확대 등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으나, 물가 안정 등 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당분간 전자여권발급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함

- (본인 신청제) 기존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가서 여권을 신청해야 함
  - 여권 본인신청 원칙은 전자여권의 도입 목적인 여권의 보안성 및 신뢰성 강화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함
  - 전자여권 내 지문정보 수록시점(2010.1.1) 이전에는 접수처에서 신청인의 얼굴정보 및 신분증만을 확인하되, 동 시점 이후에는 접수처에서 지문정보를 제공받아 동 정보를 행자부 주민등록시스템에 있는 지문정보와 대조함
  - 여권은 국제적 여행문서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유효하게 통용되는 신분증이므로, 각국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여권을 발급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표 8] 기존 여권과 전자 여권과의 차이점

| 세부 항목     | 기존 여권 | 전자여권 | 비고                           |
|-----------|-------|------|------------------------------|
| IC칩 내장 여부 | X     | O    | 이중 정보 입력으로 위변조 방지            |
| 생체정보 입력   | X     | O    | 2010년 1월 1일 부터 실시            |
| 본인 직접 신청제 | X     | O    | 전자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행 발급 불가 |

○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ESTA) 시행

- (개요) VWP 가입국 여행자는 미국 여행 전 ESTA 홈페이지에서 미국출입당국에 간단한 출입국정보를 입력하면, 동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미국 입국 자격 여부를 심사함
  - 2008년 8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2009년 1월 12일부터는 VWP를 이용한 여행객은 입국 전에 반드시 ESTA를 통해 사전 심사를 받아야함
  - 현재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의 경우 여행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때 ETA에 등록하여 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미국의 ESTA가 호주의 ETA를 벤치마킹하여 구축하였기 때문에 VWP 가입 이후 미국 여행을 할 때에 여행사의 도움으로 ESTA 홈페이지에서 신원정보를 입력하여 입국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호주의 경우 AUS \$20.00(약 19,000원)를 수수료로 받음
- 현재는 영어로만 입력이 가능하나 다른 언어도 서비스 제공 예정임
- 미국 입국 72시간 전에는 신원 정보를 ESTA를 통해 제출해야 함
- 현재 미국 여행 시 입국 비행기 내에서 I-94(VWP 미가입국의 입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입국장에서 제출함
- 기존에 비행기 안에서 서류(I-94, I-94W)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출국 전 국내에서 미리 작성하는 과정으로 미국 입국 심사를 미리 받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 입국 심사 과정과 동일함
- 현재는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 있음
-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는 VWP 가입국의 여행자가 현재 입출국시 작성해야 하는 I-94W(VWP 가입국의 입출국신고서)의 내용과 유사함

[표 9] ESTA 사전입국조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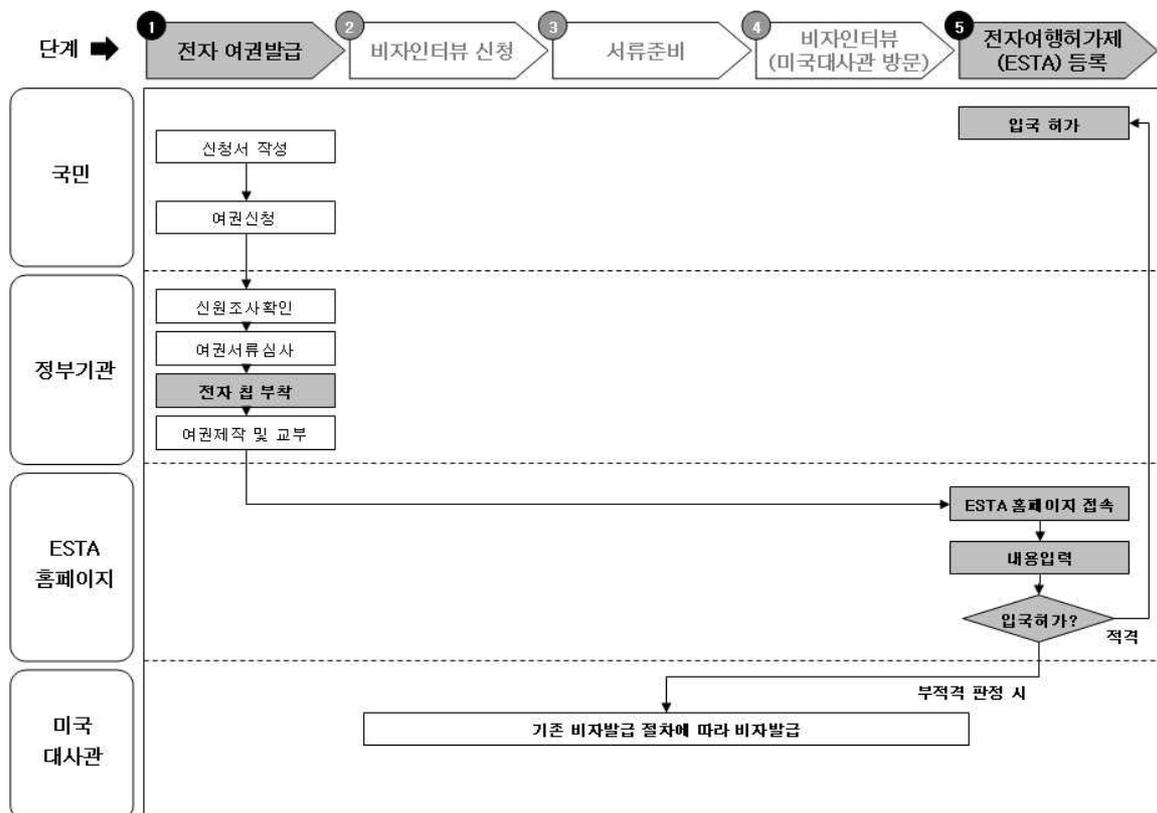
| 결과                     | 내용  |
|------------------------|---|
| Authorization Approved | 여행이 허가됨   |
| Travel Not Authorized  | 여행객은 미국 여행 전에 미국 대사관에서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
| Authorization Pending  | 여행객은 최종 응답을 받기 위해 72시간 내에 ESTA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미국무부

○ VWP 가입 후 변화 프로세스

- (비자 발급과정 축소) VWP 가입 후 비자인터뷰 신청, 관련 서류준비, 비자인터뷰의 과정이 축소되어 미국 여행 준비가 편리해짐
- (전자여권발급) 전자여권 소지자만 VWP 이용이 가능하므로 VWP를 이용하는 국민은 기존 여권 대신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함
-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미국 방문 전 여행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비행기 내에서 작성하는 입국서류 대신 출국 전에 인터넷을 통해 작성함

[그림 3] VWP 가입 후 변화 프로세스(B1/B2 비자)



## 제2장 VWP 관련 국민의 의식과 기대

### 제1절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 ○ 미국 비자 발급 절차 만족도 및 문제점 파악

-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던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미국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을 파악함
- 국민 편의 측면에서 VWP 가입으로 인한 미국 비자 발급 절차 면제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함

##### ○ VWP에 대한 국민의 인식 파악

- VWP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지도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지식정도를 측정하여 국민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모색함
- 특히, 여행자 범죄정보 공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미국과 VWP 가입을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데 활용함

##### ○ 국민이 생각하는 VWP 기대효과 파악

- 국민들이 생각하는 VWP의 기대효과를 파악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성적 기대효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함

- 한·미관계 증진, 국가 이미지 제고, 관광산업 활성화, 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증대 등 VWP 예상 기대효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함
- VWP의 부정적인 효과 및 향후 VWP 가입 추진 시 보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

## 2. 조사 설계

###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08년 9월 18일 ~ 9월 24일
- 조사 대상: 전국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 표본 크기: 총 301명
- 조사 지역: 서울특별시 및 전국 6대 광역시
- 조사 방법: 전화조사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5.7\%$
- 분석 방법: 빈도분석, 교차분석

## ○ 응답자 특성

- (성/연령별 분포)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남자' 45.2%, '여자' 54.8%이며, 연령별로는 '20대' 17.9%, '30대' 22.6%, '40대' 20.6%, '50대' 22.6%, '60대' 16.3%임

[표 10] 성/연령별 분포

| 성/연령   | 사례 수(명) | 구성비(%) |
|--------|---------|--------|
| 남자     | 136     | 45.2   |
| 여자     | 165     | 54.8   |
| 20대    | 54      | 17.9   |
| 30대    | 68      | 22.6   |
| 40대    | 62      | 20.6   |
| 50대    | 68      | 22.6   |
| 60대 이상 | 49      | 16.3   |

- (최종 학력별 분포) 최종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27.6%, '대학' 61.1%, '대학원 이상' 9.0%, '무응답' 2.3%임

[표 11] 최종 학력별 분포

| 최종 학력   | 사례 수(명) | 구성비(%) |
|---------|---------|--------|
| 고등학교 이하 | 83      | 27.6   |
| 대학      | 184     | 61.1   |
| 대학원 이상  | 27      | 9.0    |
| 무응답     | 7       | 2.3    |

- (직업별 분포) 직업별로는 '사무직' 32.6%, '생산직' 1.0%, '학생' 8.0%, '사업' 15.0%, '가사' 32.6%, '기타' 11.0%임

[표 12] 직업별 분포

| 직업  | 사례 수(명) | 구성비(%) |
|-----|---------|--------|
| 사무직 | 98      | 32.6   |
| 생산직 | 3       | 1.0    |
| 학생  | 24      | 8.0    |
| 사업  | 45      | 15.0   |
| 가사  | 98      | 32.6   |
| 기타  | 33      | 11.0   |

- (연평균 가계소득별 분포) 연평균 가계소득별로는 '1~2천만 원 이내' 12.3%, '3~4천만 원' 28.2%, '5~6천만 원' 27.9%, '7~8천만 원' 7.3%, '8천만 원 이상' 6.6%, '없음' 1.0%, '무응답' 16.6%임

[표 13] 소득별 분포

| 연평균 소득   | 사례 수(명) | 구성비(%) |
|----------|---------|--------|
| 1~2천만 원  | 37      | 12.3   |
| 3~4천만 원  | 85      | 28.2   |
| 5~6천만 원  | 84      | 27.9   |
| 7~8천만 원  | 22      | 7.3    |
| 8천만 원 이상 | 20      | 6.6    |
| 없음       | 3       | 1.0    |
| 무응답      | 50      | 16.6   |

- (지역별 분포) 지역별로는 '서울' 26.2%, '부산' 8.3%, '대구' 8.0%, '인천' 9.3%, '광주' 14.6%, '대전' 2.0%, '울산' 8.0%, '경기' 23.6%임

[표 14] 지역별 분포

| 지역 | 사례 수(명) | 구성비(%) |
|----|---------|--------|
| 서울 | 79      | 26.2   |
| 부산 | 25      | 8.3    |
| 대구 | 24      | 8.0    |
| 인천 | 28      | 9.3    |
| 광주 | 44      | 14.6   |
| 대전 | 6       | 2.0    |
| 울산 | 24      | 8.0    |
| 경기 | 71      | 23.6   |

- (미국여행 경험 유무) 미국여행 경험 있는 응답자는 25.6%,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74.4%임

[표 15] 미국 여행 유무

| 미국여행 유무 | 사례 수(명) | 구성비(%) |
|---------|---------|--------|
| 있다      | 77      | 25.6   |
| 없다      | 224     | 74.4   |

- (미국 비자 발급경험) 미국 비자 발급 경험이 있는 27.2%,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72.8%임

[표 16] 미국 비자 발급경험

| 미국 비자 유무 | 사례 수(명) | 구성비(%) |
|----------|---------|--------|
| 있다       | 82      | 27.2   |
| 없다       | 219     | 72.8   |

- (미국연고) 미국 연고별 응답자 특성은 아래의 [표 17]과 같음

[표 17] 미국 연고별 분포

| 미국연고                  | 사례 수(명) | 구성비(%) |
|-----------------------|---------|--------|
| 미국에 가족 및 친척이 있음       | 113     | 32.3   |
| 미국 이민 계획이 있음          | 7       | 2.0    |
| 미국에 유학·취업·어학연수 계획이 있음 | 67      | 19.1   |
| 사업·출장으로 미국 방문이 많음     | 31      | 8.9    |
| 기타                    | 132     | 3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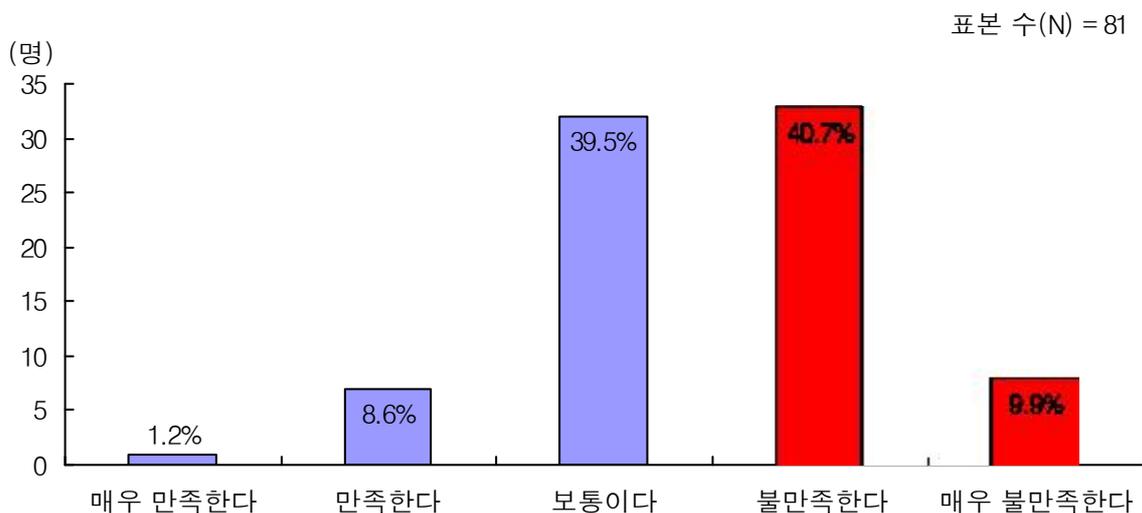
## 제2절 비자 발급 만족도 및 불편사항

### 1. 비자 발급 만족도

#### ○ 미국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한 만족도

- (미국 비자 발급 절차 만족도) 미국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51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가 낮으며, 미국 비자 발급을 경험한 국민들 절반 이상이 미국 비자 발급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
  - (질문) 미국 비자 발급절차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미국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51로서 낮은 수준임
  - 미국 비자 발급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절반 이상(50.6%)이 ‘매우 불만족한다(9.9%)’, ‘불만족한다(40.7%)’하다고 응답하여, 미국 비자 발급에 대하여 2명 중 1명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

[그림 4] 미국 비자 발급 절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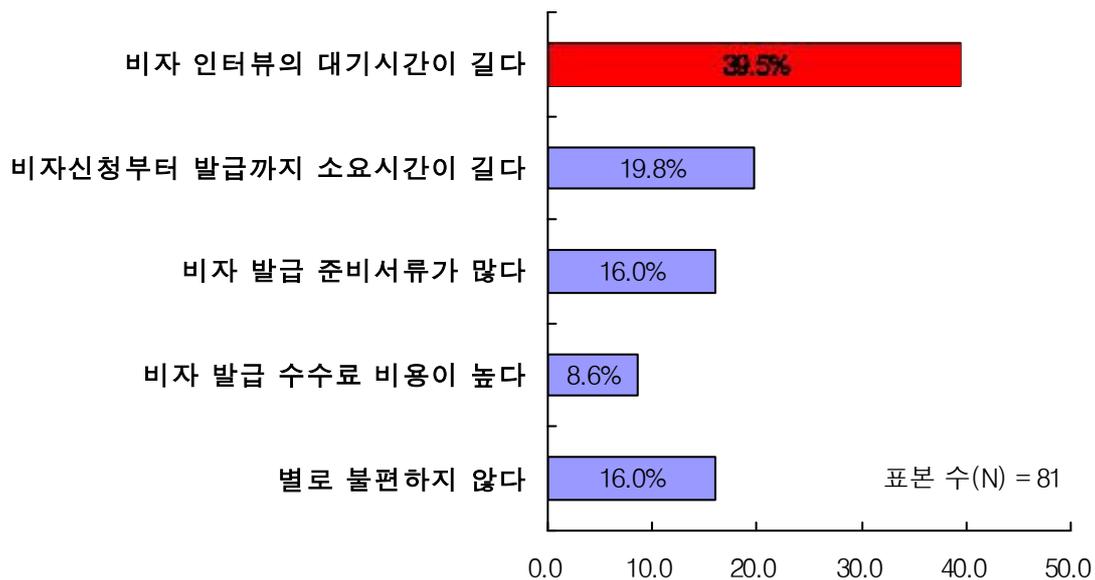
## 2. 비자 발급 불편사항

### ○ 미국 비자 발급 절차에서 경험하는 불편사항

- (미국 비자 발급 불편사항) 가장 불편한 사항은 ‘비자 인터뷰의 대기시간이 길다(39.5%)’로 나타나, 직접적인 비자발급 수수료 비용(8.6%)보다 비자 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질문) 미국 비자 발급에 있어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십니까?
- 미국 비자 발급 시 가장 불편사항은 ‘비자 인터뷰의 대기시간이 길다(39.5%)’이며, ‘비자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시간이 길다(19.8%)’, ‘비자 발급 준비서류가 많다(16.0%)’, ‘비자 발급 수수료 비용이 높다(8.6%)’ 순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비자 발급 수수료 비용이 높다(8.6%)’의 비율이 낮아, 직접적인 수수료 비용보다 간접적인 시간과 노력에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미국 비자 발급 시 불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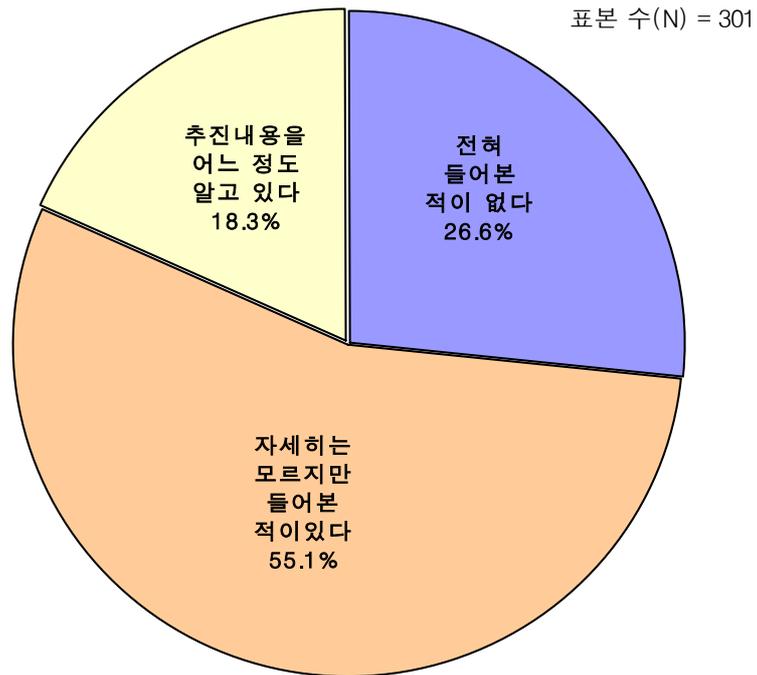


### 제3절 VWP 인지도

#### 1. VWP에 대한 인지도 조사

- (VWP에 대한 인지도) VWP에 대하여 국민 73.4%가 추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소득 수준과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VWP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질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본 적이 있다(55.1%)', '추진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18.3%)',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26.6%)'로 응답하여, VWP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73.4%로 국민 3명중 2명은 VWP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88.3%), 40대(75.8%), 50대(76.5%)가 VWP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20대(53.7%)와 60대 이상(67.3%)은 평균 인지도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 연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VWP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76.6%)', '대학원 이상(77.8%)'이 '고등학교 이하(63.9%)'보다 VWP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그림 6] VWP 대한 인지도



## 2. VWP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지식 조사

- (VWP 세부 내용에 대한 지식) VWP 세부 내용에 대한 지식은 3명 중 1명만 인지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나, 무비자 혜택이 관광 및 상용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은 53.2%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었음

· 질문: 아래의 보기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세부 내용 1: 무비자 혜택은 여행, 출장에만 적용되고 유학·이민 목적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세부 내용 2: 한·미간 여행자 범죄정보 공유에 합의해야 함

- 세부 내용 3: 전자 여행허가제에 의해 기본여행정보를 입력하고 미국입국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 세부 내용 4: 가입 후 한국인 불법체류비율이 높아지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취소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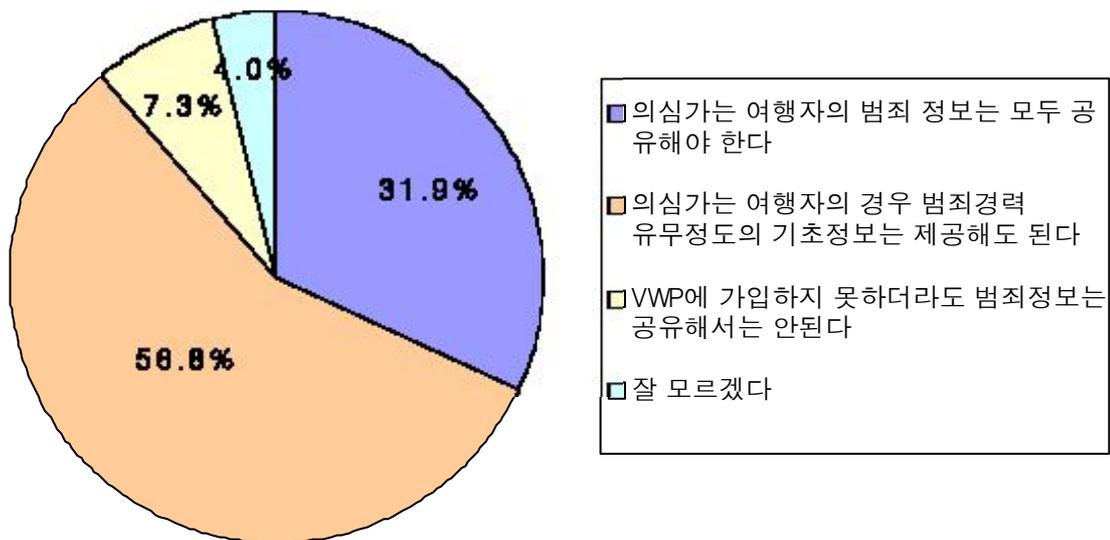
· 세부 내용1의 인지도가 53.2%로 가장 높았으며, 세부 내용 2(36.9%), 세부 내용 3(30.6%), 세부 내용4(35.5%)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임

[그림 7] VWP 세부 내용에 대한 인지도



- (여행자 범죄정보 공유에 대한 견해) 여행자 범죄정보 공유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응답자의 비율이 88.7%로서, 범죄 예방 측면에서 여행자 범죄정보 공유는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질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내용 중 여행자 범죄정보 공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행자 범죄정보 공유에 긍정적인 의견('의심가는 여행자의 경우 범죄경력 유무정도의 기초정보는 제공해도 된다(56.8%)', '의심가는 여행자의 범죄 정보는 모두 공유해야 한다(31.9%))'을 나타낸 응답자는 88.7%이며, 범죄정보 공유에 부정적인 의견('VWP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범죄정보는 공유해서는 안된다(7.3%)')을 보인 응답자는 7.3%에 불과하였음
  - 국민 대부분(88.7%)이 여행자 범죄정보 공유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여행자 범죄정보 공유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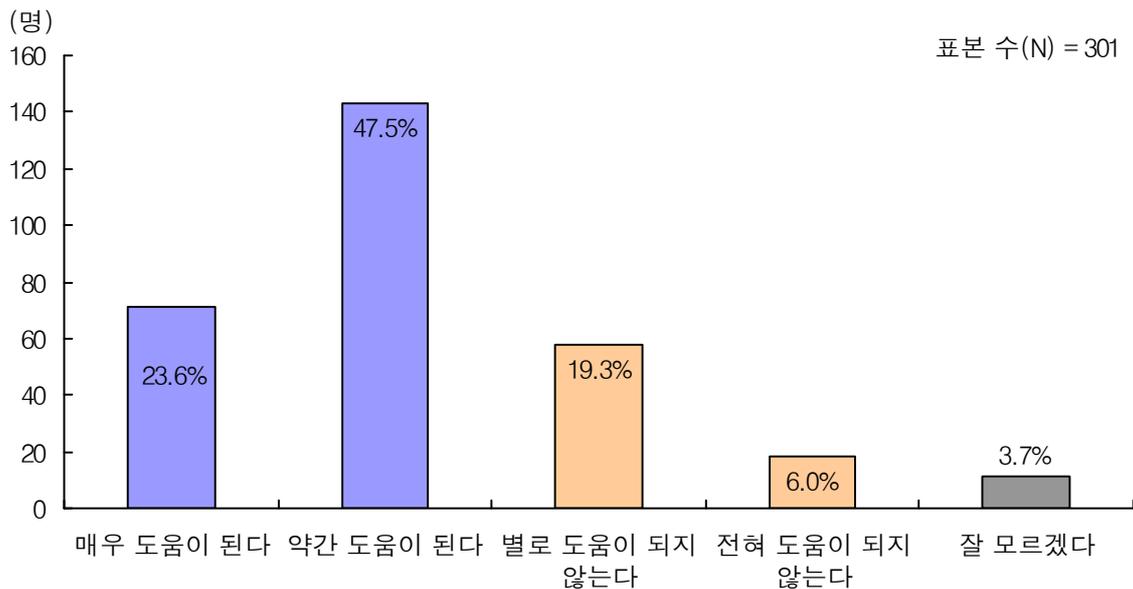


## 제4절 VWP의 기대효과

### 1. 개인적 측면의 VWP 기대효과

- (개인적 측면의 VWP 기대효과) 71.1%의 응답자가 VWP가 개인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VWP 가입이 직접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질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도움이 된다(23.6%)', '약간 도움이 된다(47.5%)'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응답자는 71.1%이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19.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6.0%)'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응답자는 25.3%임
  - 연령별로는 '20대(75.9%)', '40대(75.8%)'의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음
  - 소득수준과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음

[그림 9] 개인적 차원의 VWP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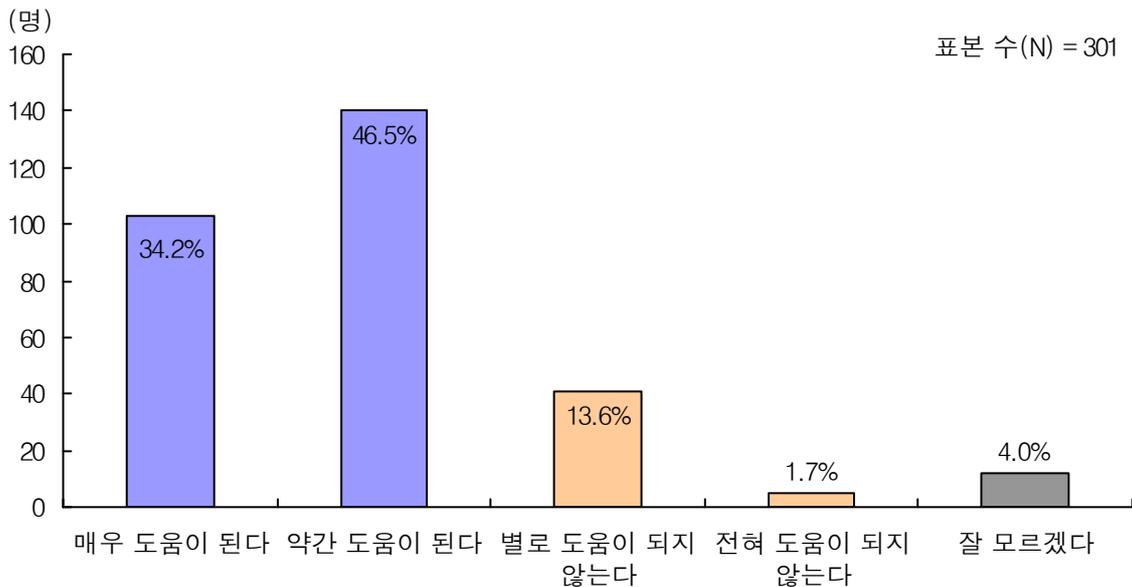


## 2. 한·미 관계 증진

- (한·미 관계 증진) 80.7%의 응답자가 VWP 가입이 한·미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대와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음

- 질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한·미관계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매우 도움이 된다(34.2%)’, ‘약간 도움이 된다(46.5%)’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응답자는 80.7%이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13.6%)’,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7%)’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응답자는 15.3%임
-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음
-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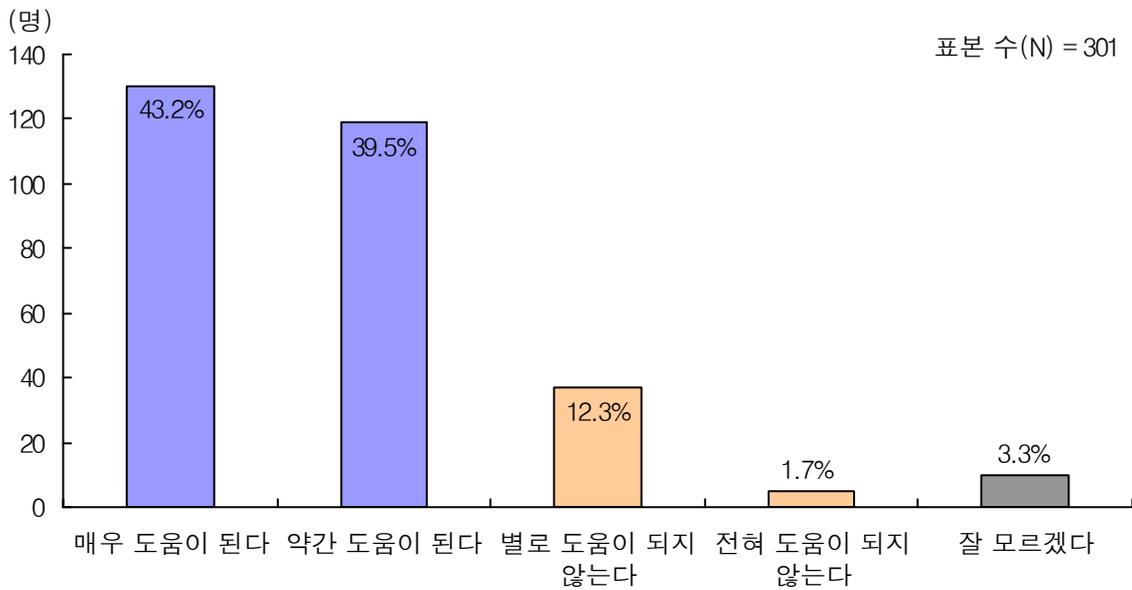
[그림 10] 한·미 관계 증진



### 3. 국가 이미지 제고

- (국가 이미지 제고) 82.7%의 응답자가 VWP 가입이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음
- 질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국가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매우 도움이 된다(43.2%)’, ‘약간 도움이 된다(39.5%)’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응답자는 82.7%이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12.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7%)’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응답자는 14.0%임
-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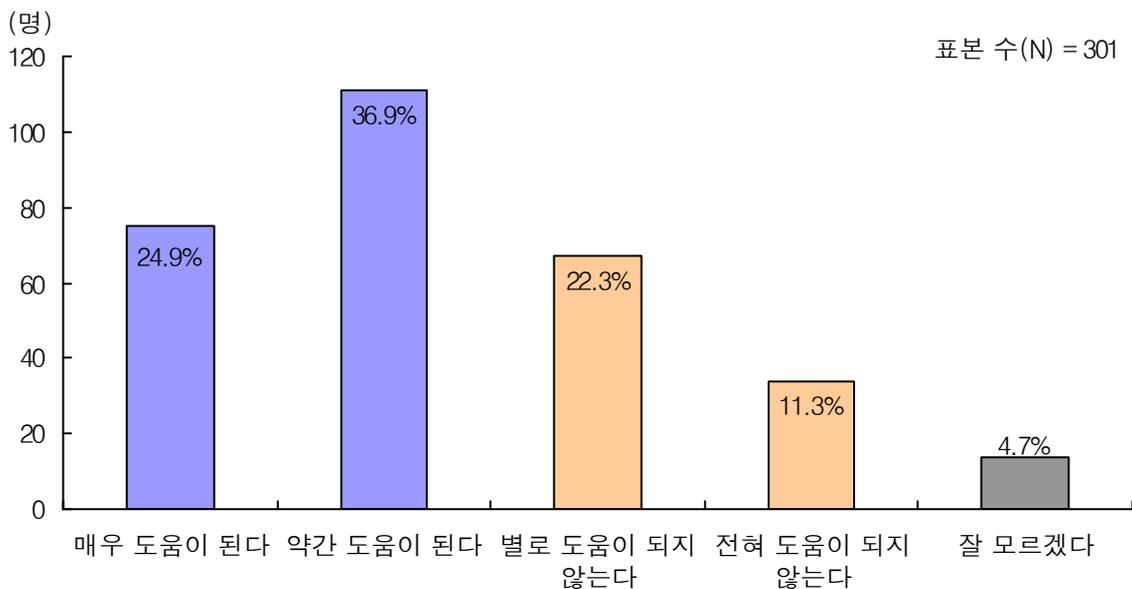
[그림 11] 국가 이미지 제고



#### 4.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VWP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61.8%로서 다른 기대효과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질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매우 도움이 된다(24.9%)’, ‘약간 도움이 된다(36.9%)’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응답자는 61.8%이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22.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1.3%)’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응답자는 33.6%임
- 소득과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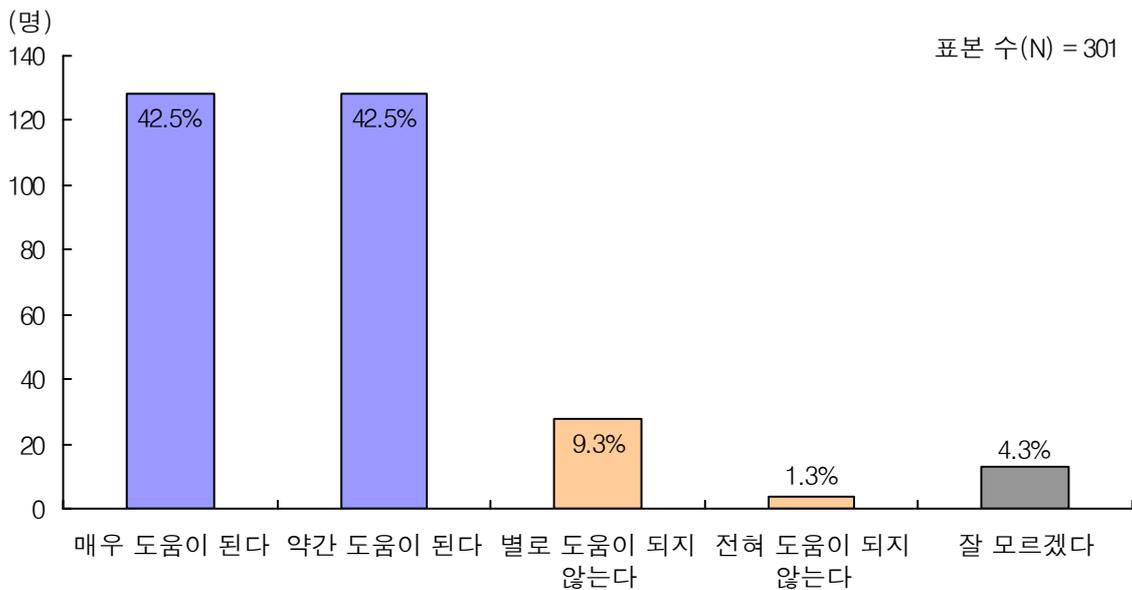
[그림 12]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 5. 인적교류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증대

- (인적교류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증대) 85.0%의 응답자가 VWP 가입이 인적교류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과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음
  - 질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인적교류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매우 도움이 된다(42.5%)’, ‘약간 도움이 된다(42.5%)’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응답자는 85.0%이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9.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3%)’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응답자는 10.6%임
  - 소득과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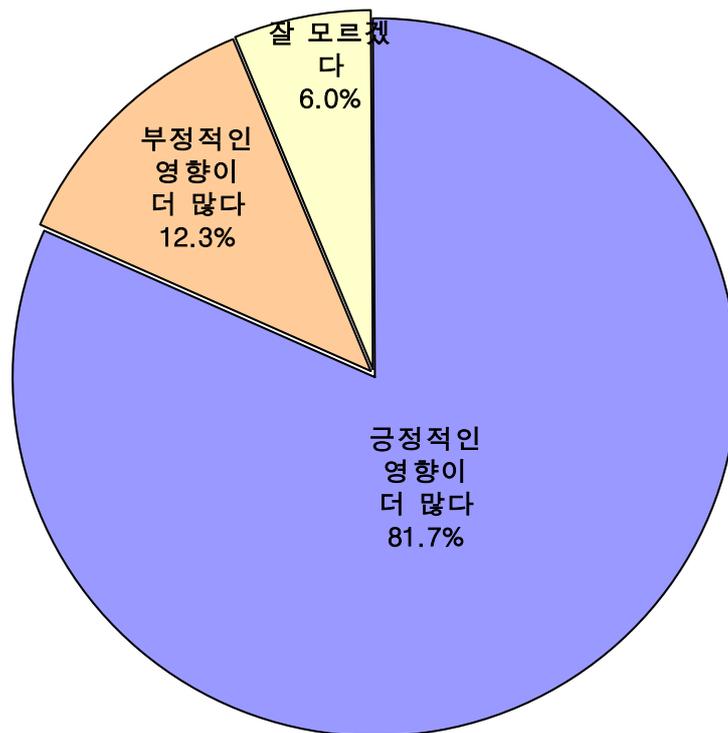
[그림 13] 인적교류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증대



## 6. VWP 가입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

- (VWP 가입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 VWP 가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81.7%가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여, VWP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질문: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81.7%)',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12.3%)', '잘 모르겠다(6.0%)'로 응답하여 VWP 가입에 대하여 81.7%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대별로는 '30대(89.7%)', '50대(82.4%)', '60대(83.7%)'가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음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음

[그림 14] 전반적인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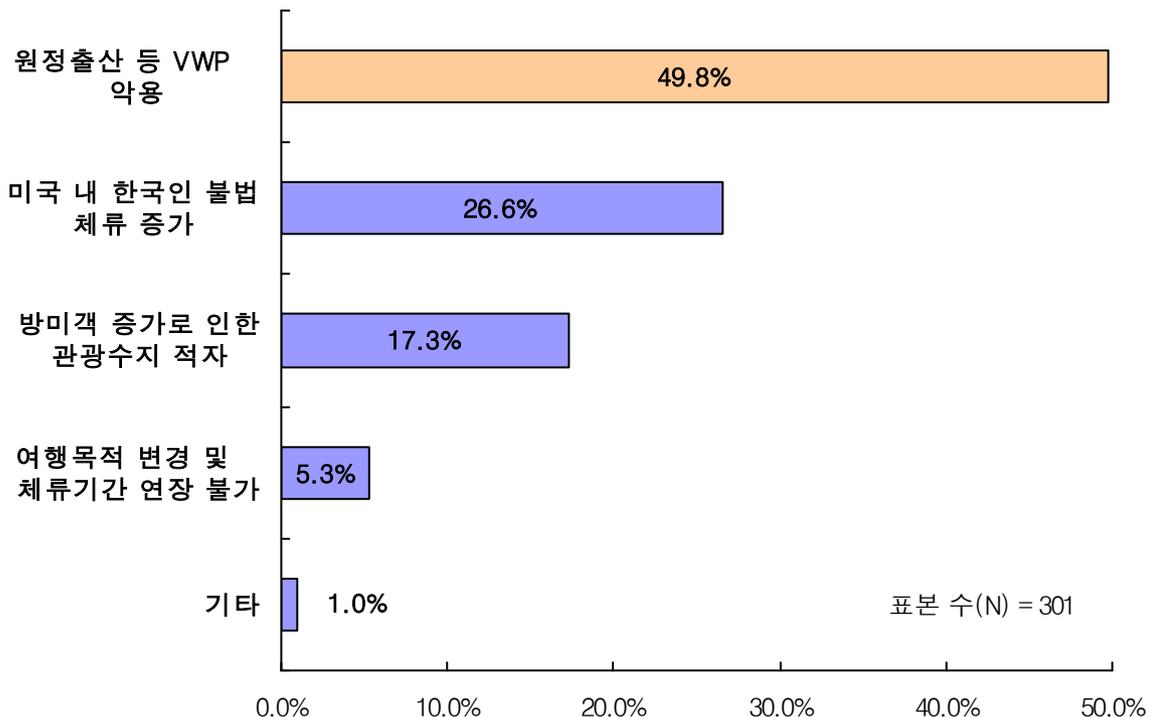


## 제5절 VWP 추진 시 고려사항 및 보완사항

### 1. VWP 추진 시 고려사항

- (VWP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견해) VWP 가입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VWP 악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으며, 불법체류, 관광수지 적자, 비자 변경 불가 등의 순서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홍보가 필요함
- 질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의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VWP의 부정적인 영향은 '원정출산 등 VWP 악용(49.8%)',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 증가(26.6%)', '방미객 증가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17.3%)', '여행목적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불가(5.3%)'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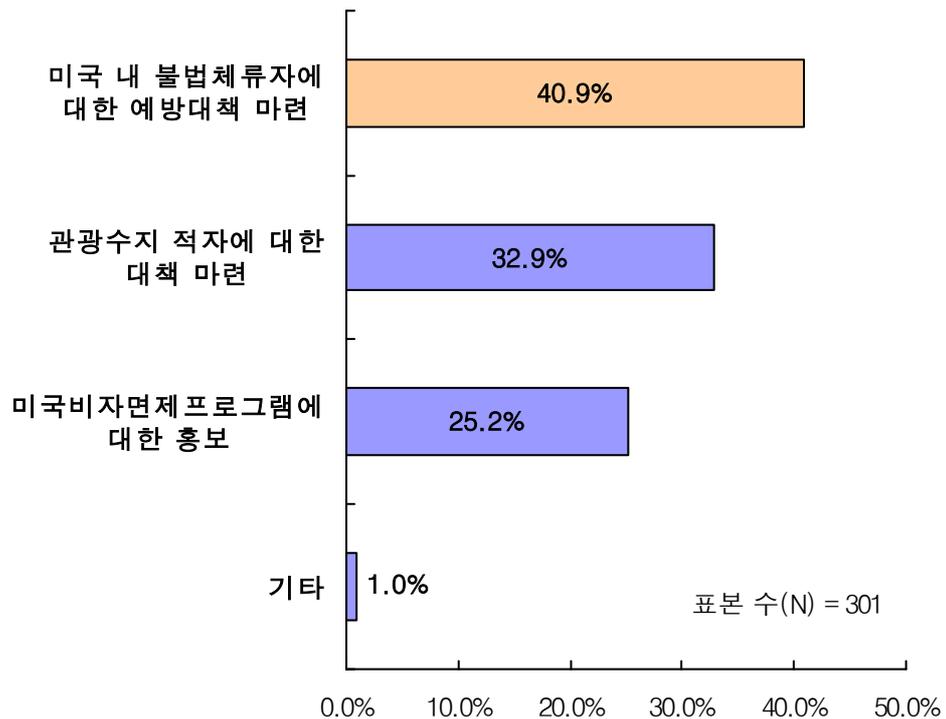
[그림 15] VWP의 부정적인 영향



## 2. 중점 보완사항

- (중점 보완사항) VWP 가입 후 중점 보완사항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관광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질문: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연내가입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가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점 보완사항으로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2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관광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17.3%)',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홍보(5.3%)', '기타(1.0%)' 순으로 나타남

[그림 16] 향후 VWP 가입 후 중점 보완사항



## 제6절 설문조사 요약

### 1. 미국 비자 발급 절차 만족도 및 문제점 파악

- (비자 발급 절차 만족도) 미국 비자 발급을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0.1%)이 미국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하여 '불만족한다(40.7%)'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9.9%)'라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음
- (주요 불편사항) 가장 불편한 사항은 '비자 인터뷰의 대기시간이 길다(39.5%)'로 나타나, 직접적인 비자발급 수수료 비용(8.6%)보다 비자 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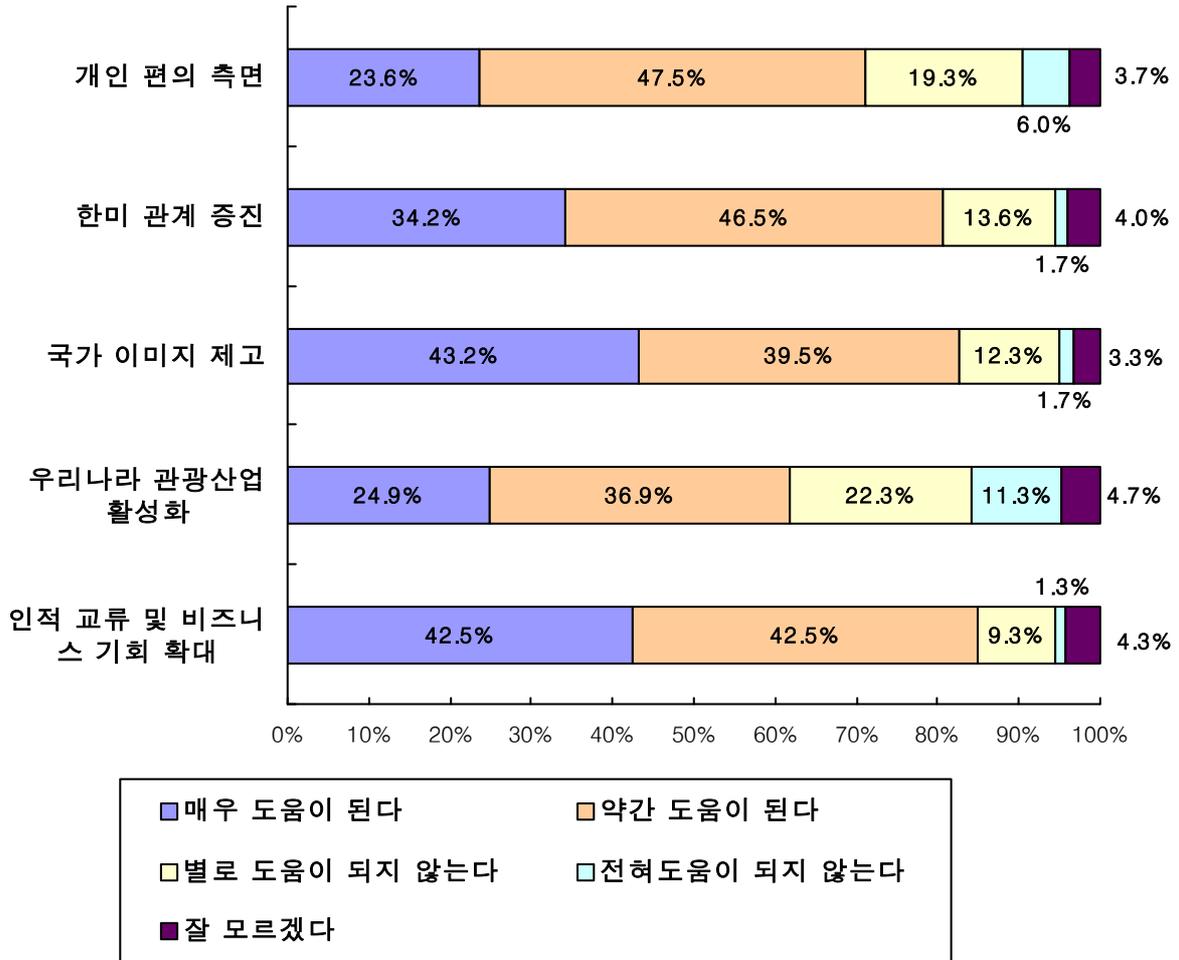
### 2. VWP에 대한 국민의 인식 파악

- (VWP 인지도) 응답자의 73.4%가 VWP의 전반적인 내용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임
- (세부내용에 대한 지식) VWP가 관광 및 상용 목적(53.2%)에 한하여 무비자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여행자 범죄정보 공유(36.9%), 전자 여행허가제(30.6%), VWP 가입 유지 조건(35.5%) 등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음

### 3. 국민이 생각하는 VWP 기대효과

- (VWP 가입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 VWP 가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81.7%가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였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국민 편의, 한·미 관계 증진, 국가 이미지 제고,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 교류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 증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그림 17] 국민이 생각하는 VWP 기대효과



- (국민 편의 측면 효과) 응답자의 71.1%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VWP 가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한·미 관계 증진) 응답자의 80.7%가 VWP 가입이 한·미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국가 이미지 제고) 응답자의 82.7%가 VWP 가입이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VWP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61.8%로서 다른 기대효과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인적교류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증대) 85.0%의 응답자가 VWP 가입이 인적교류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4. VWP 추진 시 고려사항

- (VWP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견해) VWP 가입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VWP 악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으며, 불법체류, 관광수지 적자, 비자 변경 불가 등의 순서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홍보가 필요함
- (중점 보완사항) VWP 가입 후 중점 보완사항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관광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 제3장 VWP 가입국가 및 비자면제 사례 분석

### 제1절 VWP 가입국가 사례 분석

#### 1. VWP 가입국가의 국제적 위상

##### ○ 일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

- (VWP 가입국가의 GDP) GDP는 개별국가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지표로써, VWP 가입국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일인당 GDP를 가지고 있음
- (VWP 가입국가의 일인당 GDP) 2007년 기준 27개 VWP 가입 국가 중 포르투갈(\$21,700)을 제외한 26개 국가의 GDP가 우리나라(\$24,800)보다 높음
  - 일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의 국가는 27개국 중 23개국으로 전체의 85%임
- (VWP 가입국가의 일인당 GNI<sup>1)</sup>) 세계은행은 경제력 측정의 일반적인 기준인 일인당 GNI를 사용하여 국가들을 분류하는데, VWP 가입국은 전부 High Income 군에 속하는 선진 경제국가임
  - 일인당 GNI는 GDP에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측정함
  - 세계은행은 경제 수준으로 국가를 구분할 때, GNI를 기준으로 \$11,456 이상을 high income, \$3,706에서 \$11,455까지는 upper middle income, \$936에서 \$3,705까지는 lower middle income, \$935 이하를 low income으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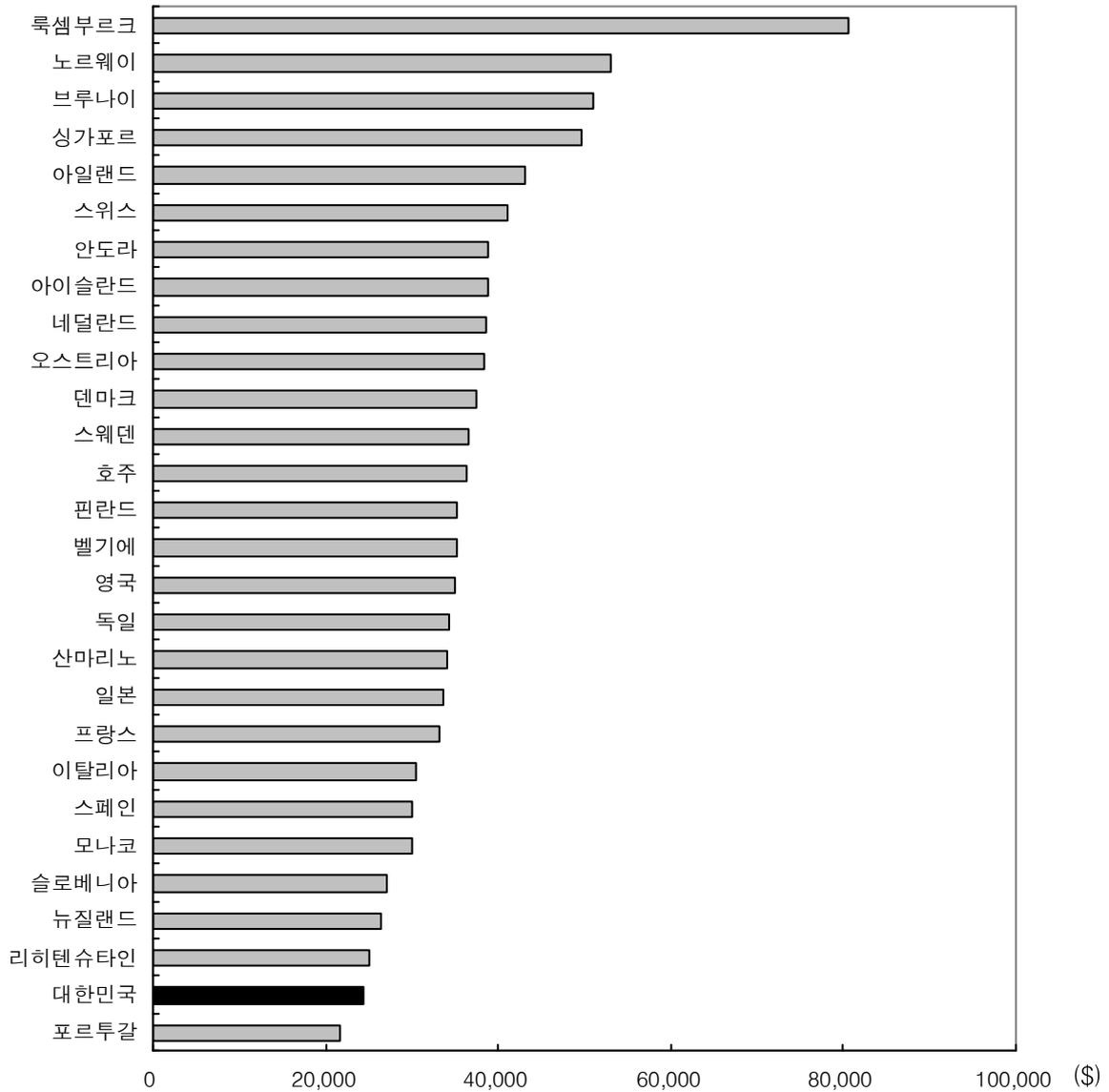
---

1) GNI(Gross National Income)은 가계, 기업, 정부 등 한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합산한 소득지표임

·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무역 손익을 더한 후 실질 대외 순수취요소소득을 합친 것임

- VWP 가입 국가는 'high income'에 속하는 국가이며 그 중에서도 높은 일인당 GNI를 가지고 있음

[그림 18] 우리나라와 VWP 가입국의 GDP



출처: The World Factbook, CIA, 2007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여부2)

- (OECD 개요) 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 존중을 주요 핵심 가치로 공유하는 세계 경제 선진국들의 모임으로 대부분의 VWP 가입국은 OECD 회원국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OECD의 목적)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임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함
  -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함
  -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함
  
- (사업 내용) OECD는 3대 가치와 설립 목적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다음의 사업을 진행함
  - 거시경제, 구조조정, 금융국제화, 규제개혁,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기술혁신,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공통적 우선순위과제에 대해 각국 경험의 비교검토 (benchmarking)와 추진현황의 상호평가를 통해 정책개선 내지 구조개혁을 촉진함
  - 세계적, 경기변동,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다국적 기업, 국제적 뇌물수수, 유해 조세관행, 전자상거래,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 규제방안 등 국제적 주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책을 강구함
  - 비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OECD가 추진하는 국제적 정책협력에 동참토록 유도함
  
- (OECD 가입국의 국제경제비중) OECD 회원국의 총인구는 11억6853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18.15%를 차지하나 국제경제에서는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2) OECD 개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state/internationalcooperation/oecd/index.jsp>)

- OECD 회원국 경제규모는 총GDP 기준으로 세계경제의 약 78.75%, 총수출 기준으로 약 63.53%, 총수입 기준으로 68.70%의 비중을 차지하며(2005년 기준) OECD 회원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음
- (VWP 국가의 OECD 가입현황) 유럽, 북미, 아·태지역 등 세계 3대 경제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비교적 골고루 참여하고 있으며 G7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들이 참여하는 만큼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음
  - VWP 가입국가 27개 중 20개국, 74%가 OECD 가입국임
  - OECD 국가 중 VWP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0개국으로 그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가 미국과 VWP MOU를 체결함
  - VWP 가입국 중 인구 10만 이하의 국가를 제외하면 86%의 VWP 국가가 OECD 가입국임

[표 18] VWP 국가의 OECD 가입현황

|          | OECD 회원국  | OECD 비회원국                                      |
|----------|---|--|
| VWP 가입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20개국) |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브루나이, 슬로베니아, 싱가포르(7개국) |
| VWP 미가입국 | 캐나다, 그리스, 터키,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9개국)   |  |

[표 19] 우리나라와 VWP 가입국의 일인당 GDP, OECD 가입여부

| 국가명    | 일인당 GDP | OECD 가입여부 |
|--------|---------|-----------|
| 룩셈부르크  | 80,500  | O         |
| 노르웨이   | 53,000  | O         |
| 브루나이   | 51,000  | X         |
| 싱가포르   | 49,700  | X         |
| 아일랜드   | 43,100  | O         |
| 스위스    | 41,100  | O         |
| 아이슬란드  | 38,800  | O         |
| 안도라    | 38,800  | X         |
| 네덜란드   | 38,500  | O         |
| 오스트리아  | 38,400  | O         |
| 덴마크    | 37,400  | O         |
| 스웨덴    | 36,500  | O         |
| 호주     | 36,300  | O         |
| 벨기에    | 35,300  | O         |
| 핀란드    | 35,300  | O         |
| 영국     | 35,100  | O         |
| 독일     | 34,200  | O         |
| 산마리노   | 34,100  | X         |
| 일본     | 33,600  | O         |
| 프랑스    | 33,200  | O         |
| 이탈리아   | 30,400  | O         |
| 스페인    | 30,100  | O         |
| 모나코    | 30,000  | X         |
| 슬로베니아  | 27,200  | X         |
| 뉴질랜드   | 26,400  | O         |
| 리히텐슈타인 | 25,000  | X         |
| 대한민국   | 24,300  | O         |
| 포르투갈   | 21,700  | O         |

출처: the World Factbook, CIA, 2007

www.OECD.org, OECD, 2008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가 경쟁력 순위

- (국가 경쟁력의 개념) 국가 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의미함
  -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경쟁할 때 기업의 경쟁우위 유지에 필요한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 등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함
  - 국가 경쟁력 지수는 주로 기업의 해외투자 입지선택, 정부 정책과 기업의 참고자료로 활용됨
  
- (IMD 국가 경쟁력 순위)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대학원으로서 1987년부터 세계 경쟁력 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통해 세계 주요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함
  -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해 경제운영성과, 정부효율, 기업효율, 발전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는 다음과 같이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됨
  - 경제운영성과분야(77개 항목)는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물가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경제운영성과는 국내경제에 대한 거시경제학적인 평가임
  - 정부효율분야(73개 항목)는 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 여건, 기업 관련법, 사회적 여건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IMD보고서에서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기업효율성분야(69개 항목)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혁신적이고, 사업적이며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며 세부 부문은 생산성·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행태, 기업관련 태도·가치의 5개 부문임
  - 인프라분야(95개 항목)는 어느 정도 기술자원, 과학자원과 인력 자원들이 기업 활동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세부 부문은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5개 부문임

- (VWP 가입국 순위) IMD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VWP 가입국들은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2위, 룩셈부르크 4위 등 27개 국가 중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10위 안에 VWP에 가입한 7개국이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 29위를 차지함
  - VWP 가입국 중 18개국의 순위가 우리나라의 순위보다 높음
  - 인구 10만명 미만인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노, 안도라는 순위에 들지 못함
  - VWP 가입국가 대부분은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VWP 가입국가의 미래 성장력이 높음을 의미함

[표 20] VWP 가입국가의 IMD 국가 경쟁력 순위

| 국가명   | 국가경쟁력순위(점수) |
|-------|-------------|
| 싱가포르  | 2(99.121)   |
| 룩셈부르크 | 4(92.207)   |
| 덴마크   | 5(91.926)   |
| 스위스   | 6(90.432)   |
| 아이슬란드 | 7(88.689)   |
| 네덜란드  | 8(85.864)   |
| 스웨덴   | 9(84.119)   |
| 오스트리아 | 11(83.184)  |
| 호주    | 12(82.387)  |
| 노르웨이  | 13(81.992)  |
| 아일랜드  | 14(81.856)  |
| 독일    | 16(78.022)  |
| 핀란드   | 17(77.337)  |
| 뉴질랜드  | 19(75.506)  |
| 영국    | 20(75.447)  |
| 일본    | 24(74.303)  |

제3장 VWP 가입국가 및 비자면제 사례 분석

|        |            |
|--------|------------|
| 벨기에    | 25(71.543) |
| 프랑스    | 28(62.561) |
| 한국     | 29(61.564) |
| 스페인    | 30(61.208) |
| 포르투갈   | 39(55.984) |
| 슬로베니아  | 40(55.172) |
| 이탈리아   | 42(48.268) |
| 안도라    | -          |
| 산마리노   | -          |
| 브루나이   | -          |
| 모나코    | -          |
| 리히텐슈타인 | -          |

출처: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 2007

## 2. VWP 시행 후 가입국가의 변화

### ○ VWP 가입 후 비자 발급현황

- (전체 비자 발급건수) VWP 가입국가<sup>3)</sup>의 평균 비자 발급건수는 17,797건으로 VWP에 가입되지 않은 우리나라<sup>4)</sup> 비자 발급건수 448,636건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준임
  - VWP 가입국가의 평균 비자 발급건수는 2007년 기준 평균 17,797건으로 VWP 가입 후 B1/B2 비자면제를 통해 전체 비자 발급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음
  -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비자 발급건수인 448,636건과 비교해 볼 때, VWP 가입국가의 전체 비자 발급건수인 17,797건은 우리나라의 약 4%수준임
  - 우리나라 전체 비자 발급건수의 78.3%를 차지하고 있는 B1/B2 비자 발급건수는 VWP 가입 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됨
- (B1, B2 비자 발급건수) B1/B2 비자가 면제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VWP 가입국가는 평균 3,158건의 B1/B2 비자를 발급하였으며, 이는 전체 비자 발급건수의 18%를 차지함
  - 비자 Status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비자면제 거부 등의 이유로 VWP 가입국가 여행객들은 B1/B2 비자를 발급받고 있음
- (B1, B2 이외의 비자 발급건수) VWP 가입국가의 B1/B2 이외의 비자 발급건수는 14,693건이며, VWP 가입국 중 일본이 76,581건으로 가장 많이 발급받고 있음
  - VWP 가입국가의 B1/B2 이외의 비자 발급건수는 14,693건임
  - VWP 가입국가 중에 B1/B2 이외의 비자 발급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이며, 영국, 독일, 프랑스의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B1, B2 이외의 비자 발급건수는 97,285건으로 VWP 가입국 평균

3) VWP 가입국가의 평균 인구는 2007년 기준 20,300,605명임

4)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7년 기준 49,232,844명임

14,693건보다 약 6.6배 정도 많으며, VWP 가입국 중 가장 많이 발급받는 일본보다 약 2만 건이 많은 수치임

[표 21] VWP 가입국가별 비자 발급건수

| 국가명(인구수기준) | 총비자 발급수(건) | B1, B2 비자 발급수(건) | B1, B2 이외 비자 발급수(건) |
|------------|------------|------------------|---------------------|
| 일본         | 80,979     | 4,398            | 76,581              |
| 독일         | 65,809     | 9,477            | 56,332              |
| 프랑스        | 44,042     | 5,749            | 38,293              |
| 영국         | 94,336     | 25,402           | 68,934              |
| 이탈리아       | 26,014     | 8,373            | 17,641              |
| 한국         | 448,636    | 351,351          | 97,285              |
| 스페인        | 19,083     | 3,273            | 15,810              |
| 호주         | 32,126     | 7,424            | 24,702              |
| 네덜란드       | 15,610     | 1,982            | 13,628              |
| 포르투갈       | 5,566      | 1,497            | 4,069               |
| 벨기에        | 6,066      | 630              | 5,436               |
| 스웨덴        | 13,701     | 1,903            | 11,798              |
| 오스트리아      | 6,024      | 897              | 5,127               |
| 스위스        | 10,225     | 2,652            | 7,573               |
| 덴마크        | 8,415      | 2,054            | 6,361               |
| 핀란드        | 5,442      | 607              | 4,835               |
| 노르웨이       | 9,831      | 2,749            | 7,082               |
| 싱가포르       | 9,761      | 1,097            | 8,664               |
| 뉴질랜드       | 8,992      | 2,658            | 6,334               |
| 아일랜드       | 15,382     | 1,657            | 13,724              |
| 슬로베니아      | 1,062      | 211              | 851                 |
| 룩셈부르크      | 290        | 61               | 229                 |
| 브루나이       | 228        | 110              | 118                 |

|        |       |     |     |
|--------|-------|-----|-----|
| 아이슬란드  | 1,362 | 364 | 998 |
| 안도라    | 51    | 10  | 41  |
| 리히텐슈타인 | 69    | 14  | 55  |
| 모나코    | 24    | 5   | 19  |
| 산마리노   | 24    | 3   | 21  |

출처: Table XVII(Part I) Nonimmigrant Visas Issued Fiscal Year 2007, 미국무부, 2007

- (만명당 비자 발급건수) VWP 가입국가의 만명당 전체 비자 발급건수는 13건, B1/B2 비자 발급건수 3건, B1/B2 이외 비자 발급건수 10건임
  - 우리나라를 제외한 VWP 양해각서(MOU) 체결국가<sup>5)</sup>의 만명당 전체 비자 발급건수는 40건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우리나라는 만명당 91건으로 VWP 가입국가의 평균 13건에 비해 비자 발급비율이 7배 이상 높아 VWP 가입 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를 제외한 MOU 체결국가의 경우 인구 만명당 평균 B1, B2 비자 발급건수가 31건으로 우리나라의 71건에 비해 44%정도 수준임

5) VWP MOU 체결국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몰타, 대한민국

- VWP 가입국가의 인구 만명당 평균 B1, B2 이외의 비자 발급건수는 12건으로 우리나라의 20건에 비해 60% 수준임
- 우리나라를 제외한 MOU 체결국가의 경우 인구 만명당 평균 B1, B2 이외의 비자 발급건수가 9건으로 우리나라의 20건에 비해 50%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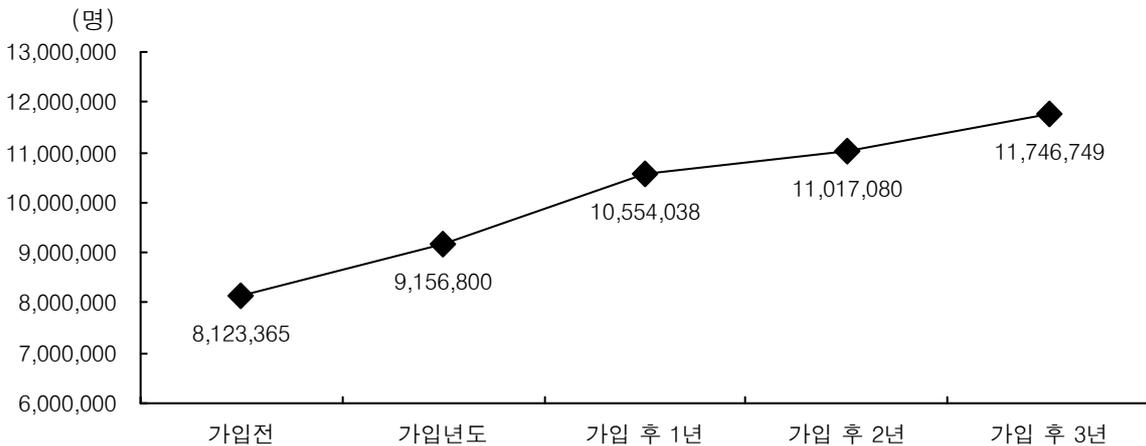
[표 22] 만명당 비자 발급건수 비교

| 국가       | 만명당 전체 비자 발급건수 | 만명당 B1/B2 비자 발급건수 | 만명당 B1/B2 이외 비자 발급건수 |
|----------|----------------|-------------------|----------------------|
| VWP 가입국가 | 13             | 3                 | 10                   |
| MOU 체결국가 | 40             | 31                | 9                    |
| 한국       | 91             | 71                | 20                   |

○ VWP 가입 후 방미객수 변화

- (VWP 가입 후 총 방미객수 변화) VWP 가입 전후 5년 동안의 VWP 가입국가의 총 방미객수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VWP 가입 후 방미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19] VWP 가입국가 총 방미객수 변화



- (VWP 가입국가별 방미객수 변화) VWP 가입 후 방미객 수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나 핀란드,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소폭 감소하고 있음

[표 23] VWP 가입 후 국가별 방미객수의 변화

| 국가명   | VWP 가입시기 | 가입 전      | 가입년도      | 가입 1년 후    | 가입 2년 후    | 가입 3년 후    |
|-------|----------|-----------|-----------|------------|------------|------------|
| 일본    | 1988     | 2,128,481 | 2,542,140 | 3,080,396  | 3,231,495  | 3,319,934  |
| 영국    | 1988     | 1,362,479 | 1,827,831 | 2,221,871  | 2,243,792  | 2,495,354  |
| 프랑스   | 1989     | 618,506   | 653,685   | 716,036    | 770,230    | 795,444    |
| 스웨덴   | 1989     | 239,964   | 281,261   | 282,163    | 260,424    | 261,728    |
| 스위스   | 1989     | 282,598   | 274,885   | 293,652    | 304,541    | 321,725    |
| 네덜란드  | 1989     | 247,860   | 260,840   | 284,203    | 316,309    | 342,034    |
| 독일    | 1989     | 1,153,359 | 1,076,385 | 1,202,826  | 1,430,193  | 1,691,663  |
| 이탈리아  | 1989     | 356,513   | 354,920   | 395,783    | 478,853    | 589,837    |
| 핀란드   | 1991     | 103,411   | 93,151    | 83,716     | 69,116     | 62,754     |
| 뉴질랜드  | 1991     | 173,844   | 145,306   | 139,515    | 133,746    | 119,412    |
| 노르웨이  | 1991     | 103,960   | 93,691    | 103,863    | 106,437    | 101,094    |
| 덴마크   | 1991     | 96,796    | 95,399    | 100,353    | 103,665    | 101,062    |
| 스페인   | 1991     | 242,670   | 291,646   | 343,922    | 309,695    | 274,597    |
| 아이슬란드 | 1991     | 13,742    | 15,183    | 16,221     | 18,150     | 16,746     |
| 오스트리아 | 1991     | 106,885   | 121,000   | 150,663    | 164,095    | 148,135    |
| 벨기에   | 1991     | 138,134   | 149,099   | 171,146    | 185,836    | 192,277    |
| 룩셈부르크 | 1991     | 10,532    | 11,910    | 13,738     | 15,796     | 15,245     |
| 호주    | 1996     | 423,631   | 463,177   | 500,615    | 460,705    | 483,157    |
| 아일랜드  | 1996     | 149,430   | 205,231   | 217,278    | 232,391    | 246,394    |
| 슬로베니아 | 1997     | 1,198     | 2,171     | 13,306     | 15,379     | 14,886     |
| 포르투갈  | 1999     | 67,132    | 79,413    | 86,333     | 67,222     | 56,012     |
| 싱가포르  | 1999     | 102,240   | 118,476   | 136,439    | 99,010     | 97,259     |
| 전체    |          | 8,123,365 | 9,156,800 | 10,554,038 | 11,017,080 | 11,746,749 |

출처: Historical Inbound by Countries, 미상무부 산하 OTTI 홈페이지

- (VWP 가입 후 방미객수 증가율) VWP 가입 전후 5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가입년도 12.7%, 가입 1년 후 15.3%, 가입 2년 후 4.4%, 가입 3년 후 6.6% 증가함

[표 24] VWP 가입 후 국가별 방미객수의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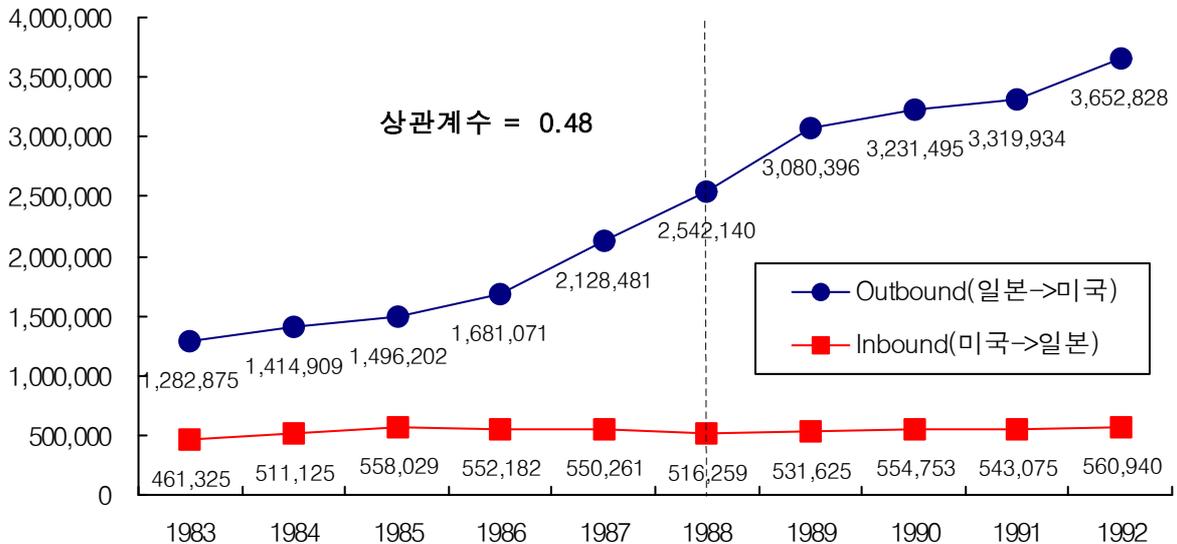
| 국가명   | VWP<br>가입시기 | 가입년도  | 가입<br>1년 후 | 가입<br>2년 후 | 가입<br>3년 후 |
|-------|-------------|-------|------------|------------|------------|
| 일본    | 1988        | 19.4  | 21.2       | 4.9        | 2.7        |
| 영국    | 1988        | 34.2  | 21.6       | 1.0        | 11.2       |
| 프랑스   | 1989        | 5.7   | 9.5        | 7.6        | 3.3        |
| 스웨덴   | 1989        | 17.2  | 0.3        | -7.7       | 0.5        |
| 스위스   | 1989        | -2.7  | 6.8        | 3.7        | 5.6        |
| 네덜란드  | 1989        | 5.2   | 9.0        | 11.3       | 8.1        |
| 독일    | 1989        | -6.7  | 11.7       | 18.9       | 18.3       |
| 이탈리아  | 1989        | -0.04 | 11.5       | 21.0       | 23.2       |
| 핀란드   | 1991        | -9.9  | -10.1      | -17.4      | -9.2       |
| 뉴질랜드  | 1991        | -16.4 | -4.0       | -4.1       | -10.7      |
| 노르웨이  | 1991        | -9.9  | 10.9       | 2.5        | -5.0       |
| 덴마크   | 1991        | -1.4  | 5.2        | 3.3        | -2.5       |
| 스페인   | 1991        | 20.2  | 17.9       | -10.0      | -11.3      |
| 아이슬란드 | 1991        | 10.5  | 6.8        | 11.9       | -7.7       |
| 오스트리아 | 1991        | 13.2  | 24.5       | 8.9        | -9.7       |
| 벨기에   | 1991        | 7.9   | 14.8       | 8.6        | 3.5        |
| 룩셈부르크 | 1991        | 13.1  | 15.3       | 15.0       | -3.5       |
| 호주    | 1996        | 9.3   | 8.1        | -8.0       | 4.9        |
| 아일랜드  | 1996        | 37.3  | 5.9        | 7.0        | 6.0        |
| 슬로베니아 | 1997        | 81.2  | 512.9      | 15.6       | -3.2       |
| 포르투갈  | 1999        | 18.3  | 8.7        | -22.1      | -16.7      |
| 싱가포르  | 1999        | 15.9  | 15.2       | -27.4      | -1.8       |
| 전체    |             | 12.7  | 15.3       | 4.4        | 6.6        |

출처: 미상무부 산하 OTTI

○ VWP 가입 후 Inbound와 Outbound 관광객 수 변화

- (일본 사례 분석) VWP 가입 전후 5개년 동안 Inbound와 Outbound 관광객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0.48이 산출되어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산출되었지만, VWP 가입 후 5개년 동안은 상관계수가 0.92로 산출되어 VWP 가입 후 Outbound의 증감에 따라 Inbound도 유기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Outbound와 Inbound의 상관계수는 0.44로 낮은 수준임
  - 그러나, VWP 가입 후 5개년 동안은 상관계수가 0.92로서 VWP 가입 후 미국으로 가는 관광객 수도 증가함과 동시에 반대로 일본으로 오는 미국인 관광객 수도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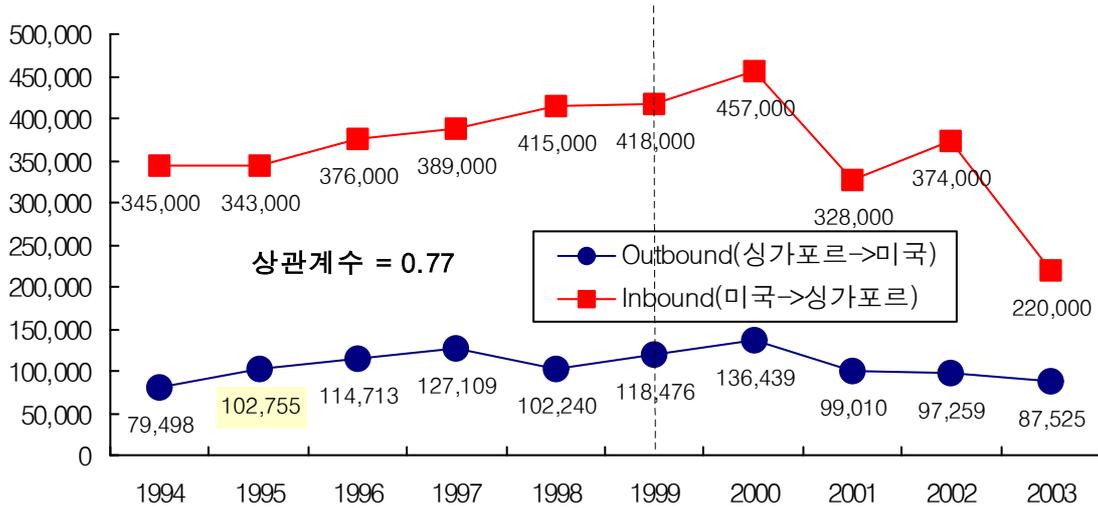
[그림 20] VWP 가입 전후 Inbound와 Outbound 관광객 수 추이(일본)



- (싱가포르 사례 분석) VWP 가입 전후 5개년 동안 Inbound와 Outbound 관광객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0.77로 산출되어,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Outbound의 증감에 따라 Inbound도 유기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VWP 가입 후 Outbound와 Inbound의 상관계수가 0.86으로 Outbound와 Inbound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VWP 가입 후 미국으로 가는 관광객 수도 증가했지만, 반대로 싱가포르로 오는 미국인 관광객 수도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음

[그림 21] VWP 가입 후 Inbound와 Outbound 관광객 수 추이(싱가포르)



- (종합)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과 싱가포르의 관광객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VWP 가입 후 Outbound 관광객 수 증가와 더불어 Inbound 관광객 수도 증가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2절 다양한 비자면제 사례 분석

### 1. 우리나라의 비자면제협정 현황

#### ○ 우리나라 비자면제 현황

- (비자면제현황) 우리나라는 전 세계 80여 국가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으며, 50여 국가와는 협정없이 비자면제를 시행하고 있음
  - 비자면제의 수준은 외교관, 관용, 일반 비자면제로 나누어지고, 체류기간에 따라 30일부터 60일, 90일(3달), 무제한으로 나누어짐
  
- (비자면제목적) 비자면제협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 관계 확립임
  - 우리나라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제적 외교관계 활성화를 위해 세계 많은 국가들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비자면제형식)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동일한 조건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경우와 공식적인 양국의 협정 체결 외에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일방적인 비자면제를 실시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는 현재 방한 미국인 관광객에 대한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비자면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VWP 가입을 통해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2006년 일본이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영구적 비자면제 실시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비자면제를 실시하고 있음

[표 25] 우리나라와 비자면제를 실시하는 국가<sup>6)</sup>

| 구분                              | 지역         | 국가명  |
|---------------------------------|------------|--|
| 비자면제<br>협정<br>체결국               | 아시아        | 태국,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
|                                 | 아메리카       |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도미니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
|                                 | 유럽         |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
|                                 | 중동<br>아프리카 |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튀니지, 레소토   |
|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
| 한국인의<br>무사증<br>입국이<br>가능한<br>나라 | 아시아        | 동티모르, 레바논, 마카오, 몽골,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팔라우, 필리핀, 홍콩   |
|                                 | 아메리카       | 가이아나,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 파나마, 파라과이   |
|                                 | 유럽         |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안도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
|                                 | 중동<br>아프리카 | 괌, 나우루,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군도   |
|                                 | 오세아니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스와질란드, 마다가스카르, 통가   |

6) [www.0404.go.kr](http://www.0404.go.kr), 해외 안전여행, 외교통상부, 2007

|                                |            |   |
|--------------------------------|------------|---|
| 한국에<br>무사증<br>입국이<br>가능한<br>나라 | 아시아        | 홍콩, 일본, 마카오,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대만, 인도네시아, 레바논     |
|                                | 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우루과이, 파라과이, 가이아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
|                                | 유럽         | 모나코, 교황청,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안도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                                | 오세아니아      |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미크로네시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피지, 마셜군도, 팔라우, 사모아, 호주               |
|                                | 중동<br>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이집트, 모리셔스, 세이셸   |

○ 일본과의 비자면제 현황)

- (일본인 비자면제) 우리나라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 제고 목적으로 1993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에 대해 시한부(1년) 조치를 매년 연장하는 방식을 빌려 입국비자를 면제해 왔음
  - 체류기간은 15일에서 30일, 90일로 순차적으로 연장함
  - 2006년 방일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실시 발표 이후 우리나라도 비자면제를 발표함

[표 26] 방한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한국 단기체재 비자면제조치

| 체류기간   | 발효일자                     | 참고사항        |
|--------|--------------------------|-------------|
| 15일 이내 | 1993. 8 - 1999. 2        | 일본인 관광객 유치  |
| 30일 이내 | 1999. 3 - 2005. 2        | 일본인 관광객 유치  |
| 90일 이내 | 2005. 3. 1 - 2006. 2. 28 | 일본인 관광객 유치  |
| 90일 이내 | 2006. 3. 1 - 현재          | 영구적 비자면제 실시 |

7) 일본 단기체재 사증 면제 조치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정책팀, 2006

- (방일 한국인 비자면제) 일본은 한국인에 대해 2002년 한일 월드컵, 2003년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 게임, 2005년 아이치 엑스포 등 주요 행사가 있는 시기에 한해 일시적으로 비자면제를 실시하였고, 2006년 방일 한국인에 대한 항구적 비자면제를 발표함
  - 아이치 엑스포 기간에 실시한 한시적 비자면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본에서 한국인에 의한 범죄 등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없음을 확인한 후 내린 결정임
  - 취직 또는 취업할 의도 등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에게는 비자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취업과 유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가 필요함
  -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라 각국이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거나 전염병 등 특별한 필요가 생길 경우 중단될 수 있음

[표 27] 방일 한국인에 대한 일본 단기체제 비자면제조치

| 체류기간   | 발효일자                                       | 참고사항                        |
|--------|--|-----------------------------|
| 40일 이내 | 2002. 5. 15 - 6. 30                        | 한일 월드컵 개최기간                 |
| 30일 이내 | 2003                                       |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br>한국 측 대회 관계자 |
| 90일 이내 | 2004. 3. 1 - 2006. 2. 28                   | 수학여행자 및 그 인솔자               |
| 90일 이내 | 2005. 3. 11 - 9. 30<br>(2006. 2. 28 까지 연장) | 아이치 엑스포 개최 기간               |
| 90일 이내 | 2006. 3. 1 - 현재                            | 영구 비자면제 조치                  |

## 2. 유럽의 비자면제협정 사례

### ○ 셴겐 조약(Schengen Agreement)

- (개요) 셴겐 조약은 조약체결국가 국민들이 셴겐 지역(조약에 합의한 국가)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유럽 국가 간의 비자면제 협정임
  - 내부국경의 철폐와 통합, 외부국경의 도입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미국에서 주와 주 사이를 이동할 때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는 것처럼 유럽 국가들 사이를 이동할 때에도 출입국심사와 세관심사를 받지 않는 것을 뜻함
  
- (배경) 1985년에 유럽 연합(EU : European Union)의 구성원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각국 정부 간 조약에 서명함
  - 1950년대에 시작한 유럽 경제 공동체(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통해서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유럽 통합의 주요 과제로 삼음
  - 50년대에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달성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1985년에야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가 룩셈부르크의 셴겐에 모여 공통국경에서 점진적으로 출입국심사를 폐지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EU의 법적 규제 밖에서 체결함
  - 이 협정은 당사국간 역내 국경에서는 통제를 폐지하고, 비당사국의 역외 국경에서는 입국심사 및 사증 요건 등에 관하여 공통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발전) 1990년에 실질적으로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구축하는 셴겐 이행 협약으로 확대 체결되고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회원국으로 가입함
  - 경찰력의 공조, 사법 공조, 외부 국경의 강화 등의 세부 항목을 삽입하여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함

- (통합) 쉐겐협정, 쉐겐이행협약, 동 협정 및 협약에 대한 추가 가입국의 가입의정서, 기타 관련 결정 및 조치 등 관련 문서를 통칭해 쉐겐 *acquis*라 하며, 이 규정들은 1999년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 부속의정서에 의해 EU 체제 내로 통합됨
  - 당시 EU 회원국이었던 영국과 아일랜드는 언제든지 ‘쉐겐 *acquis*’ 일부 또는 전부에 참여 요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승인받고 쉐겐 *acquis*에 참가하지 않음
  - 현재 영국과 아일랜드는 쉐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참여국가) 참여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임
  - EU 가입국 중 영국과 아일랜드,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루마니아를 제외한 국가와 비 EU 가입국 중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쉐겐 조약에 참여함
  - 유럽 여행 중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입국할 경우 프랑스에서는 쉐겐 출국심사를 영국에서는 영국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함
  - 쉐겐 조약에 합의한 국가들은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함
  
- (쉐겐정보시스템) 쉐겐정보시스템(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 SIS)은 쉐겐 가입국의 경찰, 세관, 영사들이 특정 개인(범죄인), 도난, 분실 물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 교환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임
  - 미국 9.11 이후 유럽은 영국 런던 버스 테러 사건,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 사건 등의 테러 사건을 경험하여 국가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국가 보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쉐겐정보시스템을 만들었음
  - 쉐겐정보시스템은 범죄 사실이 알려진 범법자를 자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
  - 쉐겐정보시스템 접근은 쉐겐 가입국에게만 허가됨

- (비자정책) 센겐 가입국들은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에게 동일한 비자 조건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센겐 가입국인 프랑스에서 받은 비자를 가진 관광객은 3개월 간 다른 센겐 가입국을 여행할 수 있으며, 이는 관광객이 유럽을 여행할 때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장점으로 작용함

### ○ 비자면제의 장단점

- (장점) 사례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비자면제는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돈독하게 함
  - 세계 많은 국가와의 비자면제협정 체결은 그 국가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침
  - 또한 인적교류 활성화로 인해 물적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
  -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주도형 산업 국가는 비자면제를 통해 얻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비자면제는 양국간의 공적인 우호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됨
- (단점) 불법체류자의 증가, 외국인 범죄의 증가, 테러의 위협 등 비자면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음
  - 유럽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국경의 자유로운 이동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센겐정보시스템과 같은 범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인적 이동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국경을 넘어 벌어지는 마약 밀매, 밀수 등은 여권의 위변조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므로 여권의 위변조를 막는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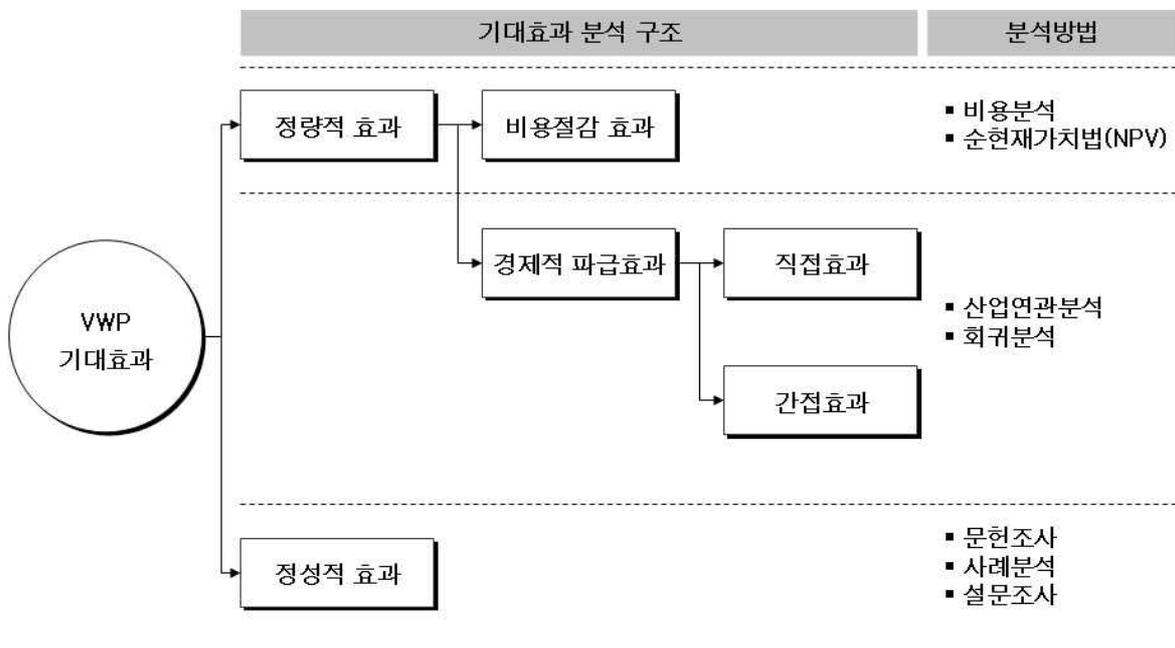
## 제4장 기대효과 분석

### 제1절 연구 모형 설계

#### 1. 기대효과 연구 모형

- VWP 가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22]와 같이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로 크게 구분하여 기대효과를 측정하였음

[그림 22] 기대효과 분석 구조



## 2.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 ○ 정량적 기대효과 분석

- (비용절감 효과) 비자면제로 인해 절감이 예상되는 소요비용 및 시간을 비용절감액으로 환산하여 효과를 측정함
  - 비용분석: 현재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의 구조를 분석하고 연도별 비용절감 효과를 산출함
  - 순현재가치법: 연도별 발생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현재 가치로 변환하여 총 비용절감 효과를 산출함
  
-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VWP의 가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관광산업의 직접효과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의 간접효과를 측정함
  - 직접효과: VWP 가입으로 인한 관광활성화 효과를 회귀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산출함
  - 간접효과: 산업연관표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간접효과를 측정함

### ○ 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 (분석방법) VWP 가입과 관련된 문헌조사, 사례분석,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 예측함
  - 문헌조사: VWP 가입과 관련된 연구자료 및 보고자료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사례분석: VWP 가입국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예상 기대효과를 도출함

## 제2절 비용절감 효과분석

### 1. 비용절감 세부항목 정의 및 추정

#### ○ 비용절감 세부항목 정의

- (항목 구분) 비용절감 항목은 크게 1인당 직접비용 절감액과 1인당 시간비용 절감액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항목은 [표 28]과 같이 정의하였음

[표 28] 비용절감 세부항목

| 구분              | 항목                       |
|-----------------|--------------------------|
| 1인당 직접비용<br>절감액 | ① 비자 인터뷰 신청료             |
|                 | ②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
|                 | ③ 택배비                    |
|                 | ④ 교통비                    |
|                 | ⑤ 사진촬영비                  |
|                 | ⑥ 서류작성비                  |
|                 | ⑦ 비자 발급 대행비              |
| 1인당 시간비용<br>절감액 | ⑧ 비자인터뷰 시간 × 시간당 평균 노동임금 |
|                 | ⑨ 왕복 통행시간 × 시간당 평균 노동임금  |
|                 | ⑩ 서류 준비시간 × 시간당 평균 노동임금  |

- (직접비용 절감액) 직접비용 절감액은 비자 인터뷰 신청료, 비자 신청 수수료, 택배비, 교통비, 사진촬영비, 서류작성비, 비자 발급 대행비의 합으로 정의함

- (시간비용 절감액) 미국 비자 발급 관련 소요 시간은 비자인터뷰 시간, 왕복 통행시간, 서류 준비시간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절감액 산출은 소요시간에 시간당 평균 노동임금을 곱하여 산출함

#### ○ 직접비용 절감액 추정

- (① 비자인터뷰 신청 수수료) 비자인터뷰 신청 수수료는 비자정보 인터넷 사이트([www.us-visaservices.com](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인터뷰 예약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구매 비용 12,000원으로 계산함
  - 인터뷰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정보 인터넷 사이트([www.us-visaservices.com](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관련 정보와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입력함
  - 비자인터뷰 예약을 위한 비용은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구매 비용인 12,000원으로 계산함
- (②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비자 신청 수수료 \$131은 환율 변동에 따라 납부할 때 변동이 되지만, 환율을 1,000원으로 가정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를 131,000원으로 산출함
  -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 비자 신청 수수료 \$131×환율 1000원/\$ = 131,000원
- (③ 택배비) 미국대사관이 인가한 일양택배와 한진택배의 택배비 기준은 서울 6,000원, 경기도 8,000원, 지방 10,000이기 때문에 지역별 평균 8,000원을 사용함
  - 택배비 = (서울 6000원 + 경기도 8,000원 + 지방 10,000원) ÷ 3 = 8,000원
- (④ 교통비)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위해 지불하는 왕복교통비는 [표 29]와 같이 대중교통 왕복요금을 지역별 인구 비례로 가중 평균하여 약 24,000원으로 산출함
  - 교통비 = 지역별 인구비율 × 해당지역 평균 왕복교통비
  - 지역별 인구비율은 통계청 자료(2005년 기준)를 참고하였음

- 해당지역 평균 왕복교통비는 서울은 지하철 왕복요금(2,000원), 인천 및 경기도 지역은 광역버스요금 평균 3,000원, 그 외 지방은 평일 무궁화호 일반요금으로 산정하였음

[표 29] 교통비 산출방법

| 지역          | 인구수(명)     | 인구비율(%) | 왕복비용(원) | 가중평균 교통비(원) |
|-------------|------------|---------|---------|-------------|
| 서울특별시       | 9,762,546  | 21%     | 2,000   | 415         |
| 부산광역시       | 3,512,547  | 7%      | 55,000  | 4,107       |
| 대구광역시       | 2,456,016  | 5%      | 43,000  | 2,245       |
| 인천광역시       | 2,517,680  | 5%      | 3,000   | 161         |
| 광주광역시       | 1,413,644  | 3%      | 44,800  | 1,346       |
| 대전광역시       | 1,438,551  | 3%      | 11,600  | 355         |
| 울산광역시       | 1,044,934  | 2%      | 55,000  | 1,222       |
| 경기도         | 10,341,006 | 22%     | 3,000   | 659         |
| 강원도         | 1,460,770  | 3%      | 16,800  | 522         |
| 충청북도        | 1,453,872  | 3%      | 11,600  | 359         |
| 충청남도        | 1,879,417  | 4%      | 11,600  | 463         |
| 전라북도        | 1,778,879  | 4%      | 44,800  | 1,694       |
| 전라남도        | 1,815,174  | 4%      | 44,800  | 1,729       |
| 경상북도        | 2,594,719  | 6%      | 55,000  | 3,034       |
| 경상남도        | 3,040,993  | 6%      | 55,000  | 3,555       |
| 제주도         | 530,686    | 1%      | 200,000 | 2,256       |
| 가중평균 교통비 합계 |            |         |         | 24,121      |

출처: 통계청, 2005

코레일, 2008

- (⑤ 사진촬영비)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사진촬영비는 시중 평균 사진 촬영 가격인 20,000원으로 계산함
- (⑥ 서류작성비) 비용이 발생하는 서류를 평균 3건, 건당 평균 비용 50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 서류작성비는 1,500원으로 산출됨
  - 서류작성비 = 평균 가족 관련 증명 서류 3건 × 평균 발급비용 500원 = 1,500원
- (⑦ 대행비)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 발급 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균 대행비 40,000원은 비자 발급 비용에 포함함

#### ○ 시간비용 절감액 추정

- (⑧ 비자인터뷰 시간) 비자인터뷰 시간은 미국대사관 입장 대기부터 면접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평균 3시간으로 가정하였음
  - 외교통상부에서는 인권단체 연석회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통산 비자인터뷰 시간을 3시간으로 답변하였음
  - 비자인터뷰 시간 = 미국대사관 입장 대기시간(2시간) + 미국대사관 입장 후 소요시간(1시간) = 3시간
- (⑨ 왕복 통행시간)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위해 소요되는 왕복 통행시간은 [표 30]과 같이 지역별 인구 비례로 해당지역 왕복 통행시간을 가중 평균하여 5.3시간으로 산출하였음
  - 왕복 통행시간 = 지역별 인구비율 × 해당지역 평균 왕복 통행시간
  - 지역별 인구비율은 통계청 자료(2005년 기준)를 참고하였음
  - 해당지역 평균 왕복 통행시간은 서울은 지하철 왕복시간, 인천 및 경기도 지역은 광역버스 이용시간, 그 외 지방은 무궁화호 소요시간으로 산정하였음

[표 30] 왕복 통행시간 산출방법

| 지역           | 인구수(명)     | 인구비율(%) | 왕복시간(시간) | 가중평균 교통비(시간) |
|--------------|------------|---------|----------|--------------|
| 서울특별시        | 9,762,546  | 21%     | 2        | 0.4          |
| 부산광역시        | 3,512,547  | 7%      | 10       | 0.7          |
| 대구광역시        | 2,456,016  | 5%      | 8        | 0.4          |
| 인천광역시        | 2,517,680  | 5%      | 4        | 0.2          |
| 광주광역시        | 1,413,644  | 3%      | 9        | 0.3          |
| 대전광역시        | 1,438,551  | 3%      | 4        | 0.1          |
| 울산광역시        | 1,044,934  | 2%      | 10       | 0.2          |
| 경기도          | 10,341,006 | 22%     | 3        | 0.7          |
| 강원도          | 1,460,770  | 3%      | 4        | 0.1          |
| 충청북도         | 1,453,872  | 3%      | 4        | 0.1          |
| 충청남도         | 1,879,417  | 4%      | 6        | 0.2          |
| 전라북도         | 1,778,879  | 4%      | 6        | 0.2          |
| 전라남도         | 1,815,174  | 4%      | 8        | 0.3          |
| 경상북도         | 2,594,719  | 6%      | 8        | 0.4          |
| 경상남도         | 3,040,993  | 6%      | 10       | 0.6          |
| 제주도          | 530,686    | 1%      | 10       | 0.1          |
| 가중평균 통행시간 합계 |            |         |          | 5.3          |

- (⑩ 서류 준비시간) 서류 준비시간은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평균 1시간으로 계산하였음
  - 서류 준비시간 = 동사무소(10분) + 세무서(10분) + 회사(10분) + 은행(30분) = 1시간
  - 각 행정기관에 직접 가서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서류 발급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서류 발급을 기준으로 최소시간을 산정함

- (1인당 시간비용 절감액 산출) 1인당 시간비용 절감액은 비자인터뷰 시간, 왕복  
통행시간, 서류 준비시간의 합에 평균 시간당 임금 94,609원을 곱하여 산출함

· 1인당 시간비용 절감액 = (비자인터뷰 3시간 + 왕복 통행 5.3시간 + 서류 준비  
1시간) × 8)평균 시간당 임금 10,173 = 94,609원

---

8) 출처: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 2007년

## 2. 연간 B1/B2 비자 발급 인원 예측

### ○ VWP 가입으로 인한 연간 방미객 수 예측

- (VWP 가입국가들의 평균 증가율) VWP 가입국가는 평균적으로 VWP 가입년도 12.7%, VWP 가입 1년 후 15.3%, VWP 가입 후 2년 후 4.4% 증가함
  - VWP 가입으로 인한 관광객 수 증가는 [표 31]와 같이 가입 후 3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3년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었음
  - VWP 가입으로 인한 관광객 수 증가는 3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3년 후에는 경제 환경, 관광이미지 등으로 인한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표 31] VWP 가입 후 3개년 방미객 수 변화

| 국가    | VWP 가입 | 가입 전(명)   | 가입년도(명)   | 가입 1년 후(명) | 가입 2년 후(명) |
|-------|--------|-----------|-----------|------------|------------|
| 영국    | 1988년  | 1,362,479 | 1,827,831 | 2,221,871  | 2,243,792  |
| 일본    | 1988년  | 2,128,481 | 2,542,140 | 3,080,396  | 3,231,495  |
| 프랑스   | 1989년  | 618,506   | 653,685   | 716,036    | 795,444    |
| 네덜란드  | 1989년  | 247,860   | 260,840   | 284,203    | 316,309    |
| 독일    | 1989년  | 1,153,359 | 1,076,385 | 1,202,826  | 1,430,193  |
| 스웨덴   | 1989년  | 239,964   | 281,261   | 282,163    | 260,424    |
| 스위스   | 1989년  | 282,598   | 274,885   | 293,652    | 304,541    |
| 이탈리아  | 1989년  | 356,513   | 354,920   | 395,783    | 478,853    |
| 노르웨이  | 1991년  | 103,960   | 93,691    | 103,863    | 106,437    |
| 뉴질랜드  | 1991년  | 173,844   | 145,306   | 139,515    | 133,746    |
| 덴마크   | 1991년  | 96,796    | 95,399    | 100,353    | 103,665    |
| 룩셈부르크 | 1991년  | 10,532    | 11,910    | 13,738     | 15,7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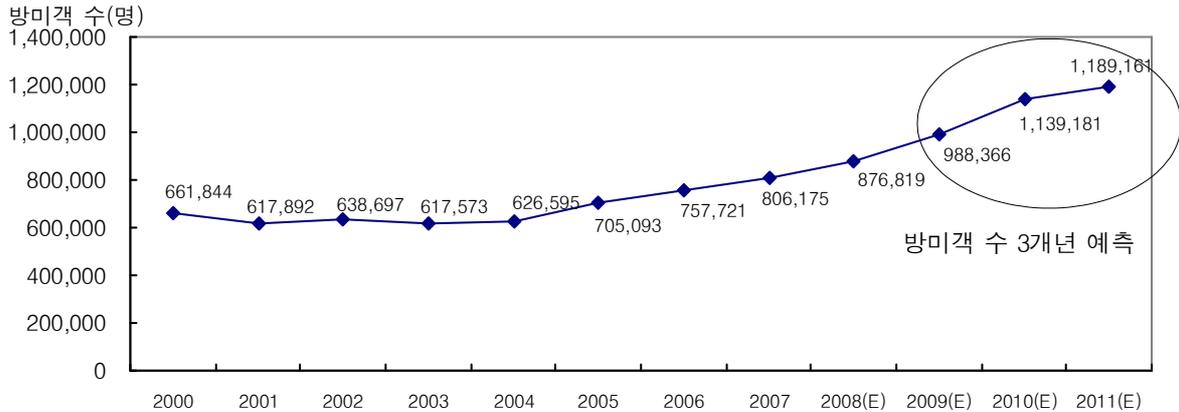
|        |       |           |           |            |            |
|--------|-------|-----------|-----------|------------|------------|
| 벨기에    | 1991년 | 138,134   | 149,099   | 171,146    | 185,836    |
| 스페인    | 1991년 | 242,670   | 291,646   | 343,922    | 309,695    |
| 아이슬란드  | 1991년 | 13,742    | 15,183    | 16,221     | 18,150     |
| 오스트리아  | 1991년 | 106,885   | 121,000   | 150,663    | 164,095    |
| 핀란드    | 1991년 | 103,411   | 93,151    | 83,716     | 69,116     |
| 아일랜드   | 1996년 | 149,430   | 205,231   | 217,278    | 232,391    |
| 호주     | 1996년 | 423,631   | 463,177   | 500,615    | 460,705    |
| 슬로베니아  | 1997년 | 1,198     | 2,171     | 13,306     | 15,379     |
| 싱가포르   | 1999년 | 102,240   | 118,476   | 136,439    | 99,010     |
| 포르투갈   | 1999년 | 67,132    | 79,413    | 86,333     | 67,222     |
| 합계     |       | 8,123,365 | 9,156,800 | 10,554,038 | 11,017,080 |
| 평균 증가율 |       |           | 12.7%     | 15.3%      | 4.4%       |

출처: OTTI, 미상무부, 각년도

- (연간 미국 관광객 수 예측) VWP 가입 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방미객 수를 예측하면 가입년도(2009년) 988,366명, 가입 1년 후(2010년) 1,139,181명, 가입 2년 후 1,189,161명으로 예측됨

- 2008년 미국 관광객 수 = 최근 3개년(2005~2007년) 평균 증가율 8.7% × 2007년 관광객 수 806,175명 = 876,819명
- 2009년 미국 관광객 수 = VWP 가입 1년 후 평균 증가율 12.7% × 2008년 관광객 수 876,819명 = 988,366명
- 2010년 미국 관광객 수 = VWP 가입 2년 후 평균 증가율 15.3% × 2009년 관광객 수 988,366명 = 1,139,181명
- 2011년 미국 관광객 수 = VWP 가입 2년 후 평균 증가율 4.4% × 2009년 관광객 수 1,139,181명 = 1,189,161명
- 2011년 이후는 VWP로 인한 효과보다 경제 환경, 해당국의 상황, 관광이미지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 VWP 가입 후 3개년 방미객 수 예측



- (연간 B1/B2 비자 발급건수 예측) [그림 23]에서 예측된 방미객 수에 방미객 수 대비 B1/B2 발급 비중(2007년)인 43.0%를 곱하여 연간 B1/B2 비자 발급건수를 예측하면 가입년도(2009년) 424,997명, 가입 1년 후(2010년) 489,847명, 가입 2년 후 511,339명으로 예측됨

· 2007년 방미객 수 대비 B1/B2 발급 비중 = (우리나라 2007년 B1/B2 발급 수 351,351 ÷ 2007년 미국 관광객 수 806,175명 × 100) - (VWP 가입국가 2007년 B1/B2 발급 수 85,257 ÷ 2007년 미국 관광객 수 14,135,244명 × 100) = 43.6% - 0.6% = 43.0%

[표 32] 연간 B1/B2 비자 발급건수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 방미객 수                        | 876,819명 | 988,366명 | 1,139,181명 | 1,189,161명 |
| ㉡ B1/B2 비자 발급 비중               | 43.0%    |          |            |            |
| ㉢ B1/B2 비자 발급건수<br>(㉢ = ㉠ × ㉡) | 377,032명 | 424,997명 | 489,847명   | 511,339명   |

### 3. 비용 절감액 산출

#### ○ 연도별 비용 절감액 계산

- (계산 방법) 1인당 직접비용 및 시간비용 절감액 합에 연간 B1/B2 비자 발급건수 예측치를 곱하여 연도별 비용 절감액을 계산함
- 연도별 비용 절감액 = (1인당 직접비용 절감액 + 1인당 시간비용 절감액) × 연간 B1/B2 비자 발급건수

[표 33] VWP 가입 후 비용 절감액

| 구분                                  | 세부 항목                  | 가입년도<br>(단위: 원)        | 가입 후 1년<br>(단위: 원)     | 가입 후 2년<br>(단위: 원)     | 가입 3년 이후<br>(단위: 원) |
|-------------------------------------|------------------------|------------------------|------------------------|------------------------|---------------------|
| 1인당<br>직접<br>비용<br>절감액              | ①비자 인터뷰 신청료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                                     | ②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 131,000                | 131,000                | 131,000                | 131,000             |
|                                     | ③택배비                   | 8,000                  | 8,000                  | 8,000                  | 8,000               |
|                                     | ④교통비                   | 24,000                 | 24,000                 | 24,000                 | 24,000              |
|                                     | ⑤사진촬영비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 ⑥서류작성비                 | 1,500                  | 1,500                  | 1,500                  | 1,500               |
|                                     | ⑦비자 발급 대행비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                                     | ⑧소계                    | <b>236,500</b>         | <b>236,500</b>         | <b>236,500</b>         | <b>236,500</b>      |
| 1인당<br>시간<br>비용<br>절감액              | ⑨비자인터뷰 시간 비용           | 30,519                 | 30,519                 | 30,519                 | 30,519              |
|                                     | ⑩왕복 통행시간 비용            | 53,917                 | 53,917                 | 53,917                 | 53,917              |
|                                     | ⑪서류 준비시간 비용            | 10,173                 | 10,173                 | 10,173                 | 10,173              |
|                                     | ⑫소계                    | <b>94,609</b>          | <b>94,609</b>          | <b>94,609</b>          | <b>94,609</b>       |
| ⑬연간 B1/B2 비자 발급건수                   | 424,997명               | 489,847명               | 511,339명               | 511,339명               |                     |
| <b>연도별 비용 절감액<br/>= (⑧ + ⑫) × ⑬</b> | <b>140,720,331,673</b> | <b>162,192,750,323</b> | <b>169,308,944,951</b> | <b>169,308,944,951</b> |                     |

- (계산 결과) [표 33]과 같이 VWP 가입 후 3개년 동안의 비용 절감액은 가입년도 약 1,407억 원, 가입 1년 후 약 1,621억 원, 가입 2년 후 약 1,693억 원의 연도별 비용이 절감됨
  - 가입 3년 이후 비용절감액은 VWP의 효과 보다는 해당 국가들의 경제 환경, 관광 이미지 등에 의하여 방미객 수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입 후 2년 비용 절감액인 약 1,691억 원 값과 동일하게 사용함

### ○ 총비용 절감액 산출

- (산출 방법)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이하 NPV)을 사용하여 연도별 비용절감액을 현재 시점의 총비용 절감액으로 변환하여 산출함
  - NPV는 사업의 가치나 기대효과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로서, [표 34]의 계산식과 같이 최초 투자 시기부터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의 연도별 순편익의 흐름을 각각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합하여 구함

[표 34] NPV 계산식

$$NPV = \sum_{t=1}^{\infty} \frac{C_t}{(1+r)^t}$$

$t$ : 현금 흐름의 기간

$r$ : 할인률

$C_t$ : 시간  $t$ 에서의 순현금흐름

- (산출 과정) 가입 후 1~3년까지는 비용 절감액을 산출하고, 가입 후 3년 이후는 비용절감액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표 35]와 같이 NPV 계산식을 전개하여 총비용 절감액 약 2조 695억 원을 산출함
  - 현재가치로 변환하기 위한 할인율  $r$ 은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로 7.34%를 사용함
  - 비용절감액은 가입 후 2년까지는 연도별 비용절감액을 사용하고, 가입 후 3년 이후는 가입 3년 후 비용절감액을 고정시켜 사용함

[표 35] NPV를 통한 총비용 절감액 산출과정

$$\begin{aligned}
 NPV &= \sum_{t=1}^{\infty} \frac{C_t}{(1+r)^t} = \sum_{t=1}^2 \frac{C_t}{(1+r)^t} + \frac{\sum_{t=3}^{\infty} \frac{C_t}{(1+r)^t}}{(1+r)^3} = \sum_{t=1}^2 \frac{C_t}{(1+r)^t} + \frac{\frac{C_3}{r}}{(1+r)^3} \\
 &= \frac{140,720,331,673}{(1+0.0734)^1} + \frac{162,192,750,323}{(1+0.0734)^2} + \frac{\frac{169,308,944,951}{0.0734}}{(1+0.0734)^3} \\
 &= 2,136,954,050,797
 \end{aligned}$$

$t$ : 현금 흐름의 기간

$r$ : 할인율 = 93년 만기 회사채 금리 = 7.34%

$C_1$  = 가입 후 1년 비용절감액 = 140,720,331,673원

$C_2$  = 가입 후 2년 비용절감액 = 162,192,750,323원

$C_3$  = 가입 후 3년 비용절감액 = 169,308,944,951원

9)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08.8.29 기준

## 제3절 산업연관분석

### 1. 10)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 ○ 산업연관분석 개요

- (연혁) 산업연관분석은 1936년 미국의 레온티에프(W. W. Leontief)에 의해 현재와 같은 산업연관표가 작성된 이래 정책결정자료, 산업구조분석, 산업간 파급효과 분석 등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음
  - 국민경제에 대한 산업연관분석방법은 레온티에프가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일괄적으로 표현한 경제표의 작성을 시도하여 그 분석결과를 1936년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음
  - 산업연관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케네(F. Quesnay)의 경제표(Tableau Economique : 1758)나 마르크스(K. Marx)의 재생산표식(Reproduktions Schema)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왈라스(L. Walras)나 파레토(V. Pareto)의 일반균형모형임
  -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연관표는 1958년에 당시의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가 1957년과 1958년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면서 시작하여 5년마다 산업연관표가 수정되어 발표되었으며, 현재 가장 최신의 산업연관표는 2003년 산업연관표임
- (정의) 산업연관분석은 산업간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지출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임
  - 산업연관분석의 근간이 되는 산업연관표는 국민경제 내에서 일정기간(통상 1년)동안 재화와 서비스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임

10)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2003년의 내용을 요약함

- (활용) 산업연관분석은 경제계획의 수립과 예측 및 산업구조정책방향 설정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까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기술이나 산업구조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경제에서는 거시경제모형에 의한 총량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율적인 경제 분석이 가능함

#### ○ 산업연관표분석 체제

- (기본구조) 산업연관표는 [그림 24]와 같이 첫째, 산업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부분, 둘째,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부분, 셋째,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에게로의 판매부분 등 세 가지로 구분됨
  - 세로방향(열)은 각 산업부문의 비용구성 즉 투입 구조를 나타내는데 이는 원재료 등의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투입과 노동이나 자본투입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그 합계는 총 투입액임
  - 가로방향(행)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 판매, 즉 배분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간재로 판매되는 중간수요와 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 등으로 판매되는 최종수요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짐
  -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부문 상호간의 거래인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하는 부분이 내생부문이며, 최종수요와 부가가치를 기록하는 부분이 외생부문임
  - 외생부문 값의 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알아보려는 것이 산업연관표 작성의 목적임

[그림 24]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수입(공제) | 총산출액 |
|------|--------------------------------|------|--------|------|
| 중간투입 | 내생부문<br>← 행: 배분구조(생산물의 판매내역) → |      | (-)    |      |
| 부가가치 |                                |      |        | 외생부문 |
| 총투입액 | 열: 투입구조(원재료/노동 등의 구입내역)        |      |        |      |

- (구성항목)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은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 간의 거래를 나타내며, 최종수요 부분은 6개의 항목으로 부가가치는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생부문 중 최종수요 부문은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및 수출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공제항목으로 수입이 설정되어 있음
-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및 순생산세(생산세 - 보조금)로 구성되어 있음

### ○ 산업연관분석의 기본원리

- (가정)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은 아래의 4가지 가정을 기초로 이루어짐
- 첫째, 결합생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하며 각 상품과 각 산업부문은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음
- 둘째, 대체생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한다고 가정함

- 셋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서 각 부문이 사용한 투입량은 그 부문의 생산수준에 비례함
  - 넷째,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서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행한 생산활동 결과의 총계는 각 부문이 동시에 행한 결과와 같다는 가정임
- (원리) 산업연관분석의 기본원리는 투입계수를 매개로 하는 최종수요에 의한 직·간접적인 생산변동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임
- 투입계수는 각 산업 부문이 해당 부문의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및 인력 등의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임
  - 투입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최종수요와 총산출 수준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함
  - 노동 등에 대한 본원적 투입물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 부가가치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을 부가가치계수라고 함
- (투입계수표) 투입계수표는 각 산업 부문이 해당 부문의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및 연료 등의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투입계수를 배열한 행렬임
- 산업연관표의 기본형식을 일반적인 행렬로 나타내면 [그림 25]와 같음
  - 투입계수 =  $a_{ij} = \frac{x_{ij}}{X_j}$ , 부가가치계수:  $v_j = \frac{V_j}{X_j}$
  - 투입계수행렬(A)과 부가가치계수(A<sup>v</sup>)는 [표 36]과 같이 투입계수를 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과 같은 모양으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로방향으로 특정산업의 투입계수와 부가가치계수를 합하면 1과 같음

[그림 25] 산업연관표의 형식

|                  |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수입(공제)   | 총산출액     |
|------------------|---|----------|----------|----------|
| 중<br>간<br>투<br>입 | $x_{11}$ $x_{12}$ ... $x_{1j}$ ... $x_{1n}$ | $Y_1$    | $M_1$    | $X_1$    |
|                  | $x_{21}$ $x_{22}$ ... $x_{2j}$ ... $x_{2n}$ | $Y_2$    | $M_2$    | $X_2$    |
|                  | $\vdots$ $\vdots$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                  | $x_{i1}$ $x_{i2}$ ... $x_{ij}$ ... $x_{in}$ | $Y_i$    | $M_i$    | $X_i$    |
|                  | $\vdots$ $\vdots$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                  | $x_{n1}$ $x_{n2}$ ... $x_{nj}$ ... $x_{nn}$ | $Y_n$    | $M_n$    | $X_n$    |
| 부<br>가<br>가<br>치 | $v_1$ $v_2$ ... $v_j$ ... $v_n$             |          |          |          |
| 총<br>투<br>입<br>액 | $x_1$ $x_2$ ... $x_j$ ... $x_n$             |          |          |          |

[표 36] 투입계수행렬(A)과 부가가치계수(A<sup>v</sup>)

|  |
|--|
| $\sum_{i=1}^n a_{ij} + v_j = 1$  |
| $\text{투입계수행렬}(A) = \begin{bmatrix} a_{11} & a_{12} & \cdots & a_{1j} & \cdots & a_{1n}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a_{i1} & a_{i2} & \cdots & a_{ij} & \cdots & a_{in}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a_{n1} & a_{n2} & \cdots & a_{nj} & \cdots & a_{nn} \end{bmatrix}$ |
| $\text{부가가치계수}(A^v) = [v_1 \ v_2 \ \dots \ v_j \ \dots \ v_n]$   |

-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하였을 때 각 산업부문으로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계수임
- 투입계수를 매개로 하여 무한히 계속되는 생산파급 효과를 매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역행렬이라는 수학적 방법으로 [표 37]와 같이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여 이용함

[표 37] 생산유발계수의 도출

$$\begin{aligned}
 AX + Y - M &= X \\
 X - AX &= Y - M \\
 (I - A)X &= Y - M \\
 X &= (I - A)^{-1}(Y - M)
 \end{aligned}$$

여기서  $(I - A)^{-1}$  행렬을 생산유발계수라고 한다.

$I$ 는 주대각요소가 모두 1이고 그 밖의 요소는 모두 0인 단위행렬임.

-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승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최종수요 변화량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하면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를 계산할 수 있음
-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한 경우 국민경제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나타냄
  - 부가가치유발계수( $V$ ) =  $A^v(I - A)^{-1}Y$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생산유발계수에 부가가치계수를 곱으로 구할 수 있음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부가가치액을 나타내는 승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최종수요 변화량에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곱하면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음

- (고용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는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백만 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 노동계수( $l$ ) = 노동자 수( $L$ ) ÷ 총산출액( $X$ )
- 노동계수가 크면 클수록 산출량 단위당 필요한 노동량이 크므로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노동계수가 작을수록 자본 집약적 산업임

[표 38] 고용유발계수의 도출

$X = (I - A)^{-1}Y$ 에서 노동계수( $l$ )을 곱하면

$$L = l(I - A)^{-1}Y$$

여기서  $l(I - A)^{-1}$  행렬을 고용유발계수라고 한다.

$I$ 는 주대각요소가 모두 1이고 그 밖의 요소는 모두 0인 단위행렬임.

- 한 나라에 있어서 노동의 유발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발되는 생산활동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최종수요 한 단위(백만 원) 변화량에 고용유발계수를 곱하면 고용유발인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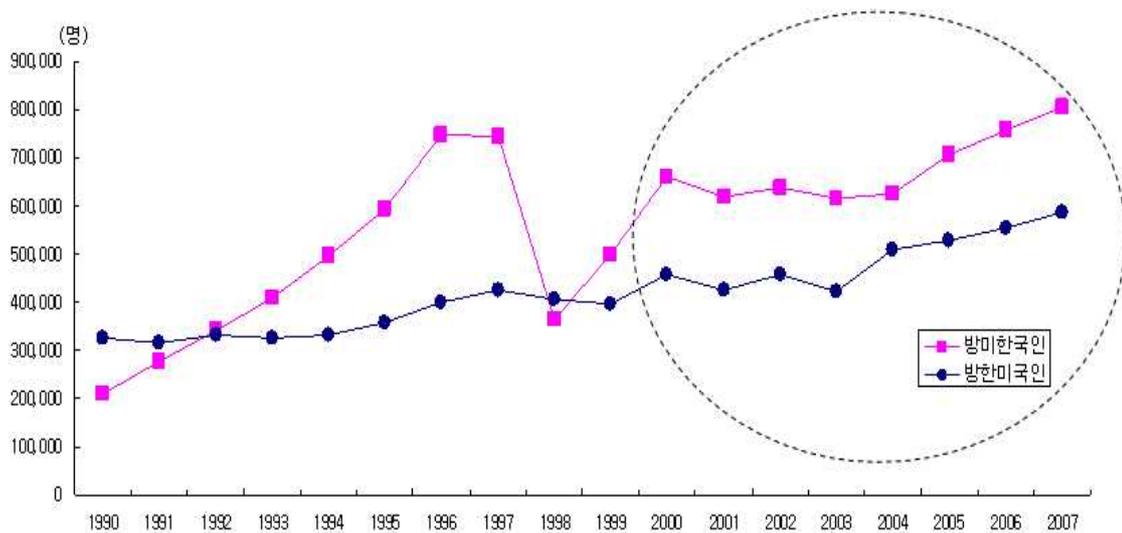
## 2. VWP로 인한 관광산업 직접효과

### ○ 방한미국인 수 예측

- (방한미국인 수와 방미한국인 수의 상관관계) 방미한국인 수와 방한미국인 수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게 나타나, 방미한국인 수의 증감에 따라 방한미국인 수가 증감하는 경향이 있음

-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방미한국인 수와 방한미국인 수의 상관관계수<sup>11)</sup>는 0.78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IMF 등과 같은 급격한 변화요인이 있는 1990년대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0.90으로 방미한국인 수와 방한미국인 수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방한미국인 수와 방미한국인 수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므로, 회귀분석을 통해 방미한국인 수를 예측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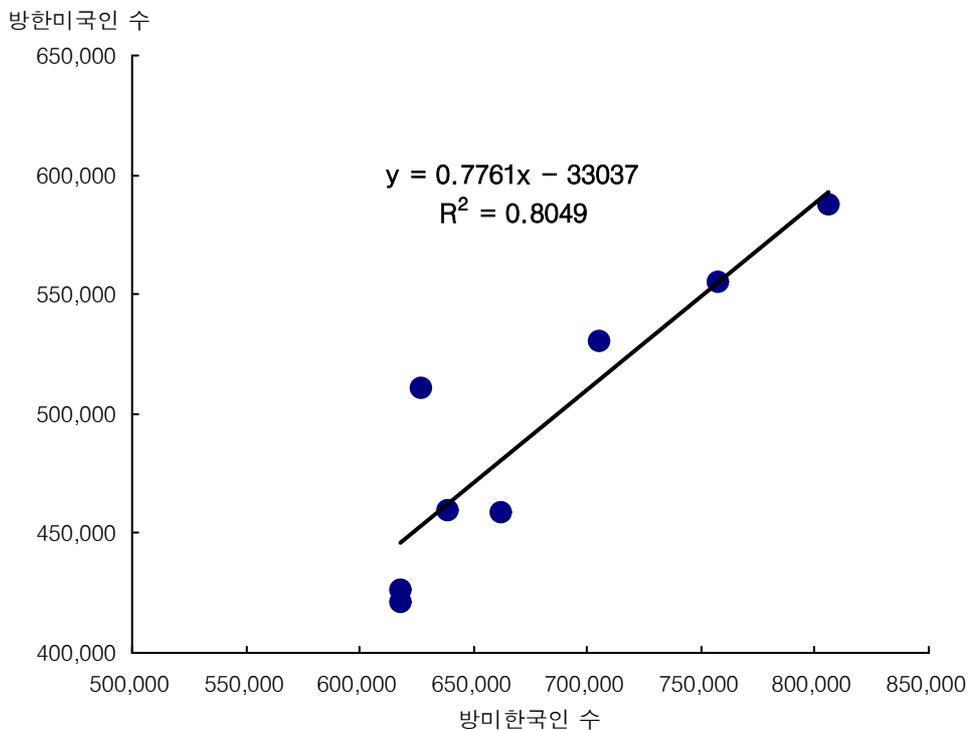
[그림 26] 방미한국인 수 및 방한미국인 수



11) 상관계수는 선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높음

- (방한미국인 수의 예측) 방미한국인 수와 방한미국인 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방한미국인 수를 추정한 결과, VWP 가입년도 734,034명, 가입 1년 후 851,082명, 가입 2년 후 889,871명의 미국인이 방한할 것으로 예측됨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방한미국인 수와 방미한국인 수의 관계 데이터를 통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Y = 0.7761X - 33037$ 로 추정되었으며 12) 결정계수( $R^2$ )가 0.8049로 나타나 예측모델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회귀분석 결과 방미한국인 수가 1명 증가할 때, 방한미국인 수는 0.78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 방미한국인 수와 방한미국인 수 회귀분석



12) 결정계수는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회귀식의 예측력이 높음

- 추정된 회귀식( $Y = 0.7761X - 33037$ )에 앞에서 구한 방미한국인 수를 대입하여 [표 39]와 같이 방한미국인 수를 예측하였음

[표 39] 연도별 방한미국인 수 예측치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X = 방미한국인 수 | 876,819명 | 988,366명 | 1,139,181명 | 1,189,161명 |
| Y = 방한미국인 수 | 647,462명 | 734,034명 | 851,082명   | 889,871명   |

### ○ VWP로 인한 최종수요 변화량 산출

- (VWP 가입으로 인한 순수 관광객 수 증가) VWP 가입 후 방한미국인 수 예측치에서 기존의 방한미국인 수 예측치를 차감하여 VWP 가입으로 인한 순수 방한미국인 수 증가를 [표 40]와 같이 산출함
- ㉓ VWP로 인한 순수 관광객 수 = ㉔ VWP 가입 후 예측치 - ㉕ VWP 가입 전 예측치

[표 40] VWP 가입으로 인한 순수 방한미국인 수 증가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㉔ VWP 가입 후 방한미국인 수 예측치                     | 734,034명 | 851,082명 | 889,871명 |
| 13)㉕ VWP 가입 전 방한미국인 수 예측치                  | 592,637명 | 607,571명 | 622,882명 |
| ㉓ VWP 가입으로 인한 순수 방한미국인 수 증가<br>(㉓ = ㉔ - ㉕) | 141,397명 | 243,511명 | 266,989명 |

13) 2006 관광수요 예측,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강욱

- (최종수요 변화량 추정) VWP 가입으로 인한 방한미국인 수 증가량에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금액을 곱하여, VWP 가입 후 3년 동안의 관광산업 직접효과를 산출하였음
- VWP 가입으로 인해 2009년 약 1,261억 원, 2010년 약 2,172억 원, 2011년 2,382억 원 등 3년 동안 총 5,825억 원의 관광산업 직접효과가 예상됨
  - 2009년 관광산업 직접효과 = 2009년 VWP 가입으로 인한 순수 관광객 수 141,397명 × 14)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금액 892,000원 = 약 1,261억 원
  - 2010년 관광산업 직접효과 = 2010년 VWP 가입으로 인한 순수 관광객 수 243,511명 ×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금액 892,000원 = 약 2,172억 원
  - 2011년 관광산업 직접효과 = 2011년 VWP 가입으로 인한 순수 관광객 수 266,989명 ×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금액 892,000원 = 약 2,382억 원

[표 41] VWP 가입으로 인한 관광산업 직접효과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방한미국인 수 증가 | 141,397명         | 243,511명         | 266,989명         |
| 관광산업 증가효과  | 126,126,135,000원 | 217,211,399,000원 | 238,154,065,000원 |

14)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관광공사

### 3. VWP 가입으로 인한 파급효과

#### ○ 관광산업의 분류

- (관광산업 분류체계) 관광산업의 분류는 15)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분류기준을 사용함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광산업 분류체계는 OECD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됨
  - 관광산업은 [표 42]와 같이 숙박, 식음료, 여객운송, 운송보조, 여행업, 문화공연, 운동경기, 오락유희 등 8가지로 분류함

[표 42] 관광산업의 분류

| 대분류  | 세분류  |
|------|------|
| 관광산업 | 숙박   |
|      | 식음료  |
|      | 여객운송 |
|      | 운수보조 |
|      | 여행업  |
|      | 문화공연 |
|      | 운동경기 |
|      | 오락유희 |

#### ○ 파급효과 분석기법

- (관광승수의 개념) 관광승수는 관광객의 지출이 추가적으로 한 단위 증가될 때 관광목적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할 때 이용함
  - 승수는 한 경제권 내에서 발행한 최초 또는 직접적 변화로 파생되는 간접적·유발적 변화의 비율로서 승수에 직접효과를 곱하면 간접효과와 유발효과가 산출됨

15) 관광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측정지표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 관광산업에서 사용하는 승수모형은 임시특별모형, 경제기반모형, 산업연관분석모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연관분석의 승수를 사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할 예정임
- (산업연관분석의 승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발계수들은 최종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승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 산업연관분석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유발계수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임
  -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에 VWP 가입으로 인한 최종수요 변화량을 곱하면 VWP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할 수 있음

#### ○ VWP 가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관광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 1.8301, 2000년 1.7429, 2003년 1.7415로 산출되었음
  - 관광산업의 생산유발계수(2003년 기준 1.7415)는 전체산업평균(2003년 기준 1.8458)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생산유발효과는 전체산업의 생산유발효과보다 낮은 수준임
  - 관광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 1.8301, 2000년 1.7429, 2003년 1.7415로 산출되었으며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

[표 43]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 구분      | 생산유발계수 |        |        |
|---------|--------|--------|--------|
|         | 1995년  | 2000년  | 2003년  |
| 관광산업    | 1.8301 | 1.7429 | 1.7415 |
| 전체산업 평균 | 1.8406 | 1.8549 | 1.8458 |
| 농림어업    | 1.6026 | 1.6398 | 1.6799 |

|             |        |        |        |
|-------------|--------|--------|--------|
| 광업          | 1.6107 | 1.5864 | 1.5738 |
| 음식료품        | 2.1163 | 2.1062 | 2.0206 |
| 섬유 및 가죽제품   | 1.9510 | 2.0613 | 1.9778 |
| 목재 및 종이제품   | 1.8013 | 1.9451 | 1.9331 |
| 인쇄, 출판 및 복제 | 1.9264 | 2.2277 | 2.1295 |
| 석유 및 석탄제품   | 1.1088 | 1.1363 | 1.1410 |
| 화학제품        | 1.9522 | 1.9679 | 2.0015 |
| 비금속광물제품     | 2.0407 | 2.0942 | 2.0587 |
| 제1차금속제품     | 2.2404 | 2.1951 | 2.2724 |
| 금속제품        | 2.1709 | 2.1514 | 2.1590 |
| 일반기계        | 2.0475 | 2.1426 | 2.1797 |
| 전기 및 전자기기   | 1.9886 | 1.7142 | 1.7142 |
| 정밀기기        | 1.9306 | 2.0159 | 1.8605 |
| 수송장비        | 2.2129 | 2.3669 | 2.3015 |
| 가구 및 기타제조제품 | 1.9592 | 1.9909 | 2.0291 |
| 전력, 가스, 수도  | 1.6587 | 1.4982 | 1.4916 |
| 건설          | 1.8551 | 1.9985 | 1.9797 |
| 도매          | 1.6386 | 1.5478 | 1.6002 |
| 운수 및 보관     | 1.7724 | 1.7252 | 1.5487 |
| 통신 및 방송     | 1.3680 | 1.6571 | 1.5820 |
| 금융 및 보험     | 1.4911 | 1.4850 | 1.4609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1.6072 | 1.4853 | 1.5210 |
| 공공행정 및 국방   | 1.6598 | 1.5180 | 1.5447 |
| 교육 및 보건     | 1.4283 | 1.5545 | 1.5544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1.9659 | 1.9558 | 1.8518 |
| 기타          | 2.6191 | 2.4443 | 2.6706 |

출처: 관광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측정지표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2003년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2007

- (연도별 생산유발효과) 연도별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한 결과 2009년 약 2,196억 원, 2010년 약 3,783억 원, 2011년 4,148억 원의 파급효과가 산출되어, VWP 가입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3개년 동안 총 약 1조 127억 원으로 예상됨
  - 연도별 생산유발효과 = 연도별 관광산업 직접효과 금액 × 생산유발계수
  - 연도별 관광산업 직접효과 금액은 앞 장의 [표 41]에서 산출하였음
  - 관광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03년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1.7415를 사용함

[표 44] 연도별 생산유발효과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관광산업 직접효과 금액          | 약 1,261억 원 | 약 2,172억 원 | 약 2,382억 원 |
| ㉡생산유발계수                | 1.7415     | 1.7415     | 1.7415     |
| ㉢생산유발효과<br>(㉢ = ㉠ × ㉡) | 약 2,196억 원 | 약 3,783억 원 | 약 4,148억 원 |

## ○ VWP 가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5년 0.7110, 2000년 0.7271, 2003년 0.7664로 산출되었음
  -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2003년 기준 0.7664)는 전체산업평균(2003년 기준 0.7609)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전체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보다 낮은 수준임
  -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5년 0.7110, 2000년 0.7271, 2003년 0.7664로 산출되었으며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

[표 45]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 구분          | 부가가치유발계수 |        |        |
|-------------|----------|--------|--------|
|             | 1995년    | 2000년  | 2003년  |
| 관광산업        | 0.7110   | 0.7271 | 0.7664 |
| 전체산업 평균     | 0.7526   | 0.7525 | 0.7609 |
| 농림어업        | 0.8956   | 0.8920 | 0.8857 |
| 광업          | 0.8863   | 0.8989 | 0.8963 |
| 음식료품        | 0.8159   | 0.8072 | 0.7966 |
| 섬유 및 가죽제품   | 0.6627   | 0.6820 | 0.6899 |
| 목재 및 종이제품   | 0.6382   | 0.6180 | 0.6492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8116   | 0.7835 | 0.8155 |
| 석유 및 석탄제품   | 0.4512   | 0.3846 | 0.4087 |
| 화학제품        | 0.5502   | 0.5852 | 0.6261 |
| 비금속광물제품     | 0.7205   | 0.7332 | 0.7690 |
| 제1차금속제품     | 0.5826   | 0.5812 | 0.5898 |
| 금속제품        | 0.7349   | 0.7217 | 0.7437 |
| 일반기계        | 0.6805   | 0.7073 | 0.7188 |
| 전기 및 전자기기   | 0.5253   | 0.5427 | 0.5522 |
| 정밀기기        | 0.7577   | 0.6649 | 0.6632 |
| 수송장비        | 0.6816   | 0.7011 | 0.7019 |
| 가구 및 기타제조제품 | 0.7101   | 0.7124 | 0.7213 |
| 전력, 가스, 수도  | 0.6578   | 0.6741 | 0.6732 |
| 건설          | 0.8567   | 0.8350 | 0.8372 |
| 도매          | 0.8941   | 0.9077 | 0.9133 |
| 운수 및 보관     | 0.7943   | 0.8237 | 0.6846 |
| 통신 및 방송     | 0.9070   | 0.8893 | 0.9114 |
| 금융 및 보험     | 0.9435   | 0.9480 | 0.9499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0.9327   | 0.9479 | 0.9394 |
| 공공행정 및 국방   | 0.8309   | 0.8848 | 0.9088 |

|            |        |        |        |
|------------|--------|--------|--------|
| 교육 및 보건    | 0.9124 | 0.8924 | 0.9023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0.8543 | 0.8616 | 0.8845 |
| 기타         | 0.6621 | 0.6530 | 0.7110 |

출처: 관광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측정지표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2003년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2007

- (연도별 부가가치유발효과) 연도별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한 결과 2009년 약 966억 원, 2010년 약 1,665억 원, 2011년 약 1,826억 원의 파급효과가 산출되어, VWP 가입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3개년 동안 총 약 4,457억 원으로 예상됨
- 연도별 부가가치유발효과 = 연도별 관광산업 직접효과 금액 × 부가가치유발계수
- 연도별 관광산업 직접효과 금액은 앞 장의 [표 41]에서 산출하였음
-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3년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0.7664를 사용함

[표 46] 연도별 부가가치유발효과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관광산업 직접효과 금액            | 약 1,261억 원 | 약 2,172억 원 | 약 2,382억 원 |
| ㉡부가가치유발계수                | 0.7664     | 0.7664     | 0.7664     |
| ㉢부가가치유발효과<br>(㉢ = ㉠ × ㉡) | 약 966억 원   | 약 1,665억 원 | 약 1,826억 원 |

### ○ VWP 가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관광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995년 0.0446, 2000년 0.0346, 2003년 0.0302로 산출되었음
- 관광산업의 고용유발계수(2003년 기준 0.0302)는 전체산업평균(2003년 기준 0.0174)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용유발효과는 전체산업의 고용유발효과보다 높은 수준임
-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5년 0.0446, 2000년 0.0346, 2003년 0.0302로 산출되었으며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

[표 47]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 구분          | 고용유발계수 |        |        |
|-------------|--------|--------|--------|
|             | 1995년  | 2000년  | 2003년  |
| 관광산업        | 0.0446 | 0.0346 | 0.0302 |
| 전체산업 평균     | 0.0288 | 0.0215 | 0.0174 |
| 농림어업        | 0.0729 | 0.0678 | 0.0576 |
| 광업          | 0.0189 | 0.0120 | 0.0097 |
| 음식료품        | 0.0426 | 0.0359 | 0.0272 |
| 섬유 및 가죽제품   | 0.0339 | 0.0216 | 0.0182 |
| 목재 및 종이제품   | 0.0179 | 0.0150 | 0.0133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0266 | 0.0253 | 0.0198 |
| 석유 및 석탄제품   | 0.0018 | 0.0014 | 0.0012 |
| 화학제품        | 0.0208 | 0.0129 | 0.0101 |
| 비금속광물제품     | 0.0171 | 0.0110 | 0.0126 |
| 제1차금속제품     | 0.0127 | 0.0078 | 0.0071 |
| 금속제품        | 0.0224 | 0.0185 | 0.0159 |
| 일반기계        | 0.0220 | 0.0161 | 0.0139 |
| 전기 및 전자기기   | 0.0242 | 0.0101 | 0.0089 |
| 정밀기기        | 0.0261 | 0.0190 | 0.0152 |
| 수송장비        | 0.0210 | 0.0141 | 0.0111 |
| 가구 및 기타제조제품 | 0.0328 | 0.0226 | 0.0176 |
| 전력, 가스, 수도  | 0.0088 | 0.0057 | 0.0044 |
| 건설          | 0.0211 | 0.0206 | 0.0186 |
| 도매          | 0.0601 | 0.0465 | 0.0401 |
| 운수 및 보관     | 0.0374 | 0.0317 | 0.0190 |
| 통신 및 방송     | 0.0170 | 0.0094 | 0.0084 |
| 금융 및 보험     | 0.0269 | 0.0158 | 0.0119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0.0180 | 0.0108 | 0.0108 |
| 공공행정 및 국방   | 0.0291 | 0.0204 | 0.0164 |

|            |        |         |        |
|------------|--------|---------|--------|
| 교육 및 보건    | 0.0277 | 0.0266  | 0.0217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0.0688 | 0.00459 | 0.0308 |
| 기타         | 0.0351 | 0.0245  | 0.0291 |

출처: 관광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측정지표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2003년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2007

- (연도별 고용유발효과) 연도별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한 결과 2009년 3,808명, 2010년 6,559명, 2011년 7,194명의 고용 파급효과가 산출되어, VWP 가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3개년 동안 총 17,561명으로 예상됨
- 연도별 고용유발효과 = 연도별 관광산업 직접효과 금액 × 고용유발계수 ÷ 단위 1,000,000원
- 연도별 관광산업 직접효과 금액은 앞 장의 [표 41]에서 산출하였음
- 관광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03년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0.0302를 사용함

[표 48] 연도별 고용유발효과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관광산업 직접효과 금액                 | 약 1,261억 원 | 약 2,172억 원 | 약 2,382억 원 |
| ㉡고용유발계수                       | 0.0302     | 0.0302     | 0.0302     |
| ㉢부가가치유발효과<br>(㉢=㉠×㉡÷1000,000) | 3,808명     | 6,559명     | 7,194명     |

#### ○ VWP 가입으로 인한 총 파급효과

- (총 파급효과) 최소 3개년 동안 VWP 가입으로 인해 국민경제 산업에 미치는 총 파급효과는 [표 49]와 같이 생산유발효과 약 1조 12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457억 원, 고용유발효과 17,561명으로 산출되었음

[표 49] VWP 가입으로 인한 총 파급효과

| 구분    | 생산유발효과      | 부가가치유발효과   | 고용유발효과  |
|-------|-------------|------------|---------|
| 2009년 | 약 2,196억 원  | 약 966억 원   | 3,808명  |
| 2010년 | 약 3,783억 원  | 약 1,665억 원 | 6,559명  |
| 2011년 | 약 4,148억 원  | 약 1,826억 원 | 7,194명  |
| 합계    | 약 10,127억 원 | 약 4,457억 원 | 17,561명 |

## 제4절 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 1. 한·미 관계 우호 증진

#### ○ 한·미관계 관련 연구 논문으로 본 VWP의 효과<sup>16)</sup>

- (양국간의 관계 강화) 현 주미 대사는 한·미관계의 현황 연구에서 “VWP 가입은 한국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미간 동맹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sup>17)</sup>”라고 언급함
  - 한국의 VWP 가입은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 사회적 분야에서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함을 의미하며 양국간의 관계를 강화시킨다고 언급함

#### ○ 헤리티지 재단<sup>18)</sup>의 VWP에 대한 견해

- (한·미간의 동맹 관계 강화 필요) 헤리티지재단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VWP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제임스 칼라파노가 작성한 2007년 12월 보고서를 보면 “VWP는 자유로운 여행을 가능하게 경제·문화·사회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며 공적인 외교의 최고의 형태이다”라고 언급함
  - 불가리아의 총리는 불가리아의 VWP 가입을 요청하면서 VWP 가입을 미국의 “분명한 신뢰의 표현(a clear sign of trust)”이라고 언급함<sup>19)</sup>

16) Korean Observation on Foreign Relations vol.9 - The Current Status of Korea-U.S. Relations, 한국외교협회, 이태식(現 주미대사), 2007

17) 상동, “Ascension to the Visa Waiver Program would provide Korea with the opportunity to raise, from a political standpoint, the status of the Korea-U.S. alliance to a higher level.”

18) 정치·경제·안보·외교 등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등을 다루는 미국의 보수적인 연구재단

19)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Important for Safer and More Secure Overseas Travel, Heritage Foundation WebMemo No. 1964, Jena Baker McNeill, 2008

## ○ 미국의 VWP 시행의 목적

- (우방국과의 관계 증진) VWP 시행의 목적은 첫째, 우방국과의 관계 증진, 둘째, 방미 여행객의 증가, 셋째, 영사 인력의 효율화이기 때문에, VWP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 ○ 현재 VWP 가입국가와 미국과의 인적교류

- (방미객수 상위국의 VWP 가입여부)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많은 국가 10위권에 서 우리나라와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비자 없이 (VWP, BCC<sup>20</sup>) 미국을 여행할 수 있음

[표 50] 방미객수 상위 10위 국가의 VWP 가입여부

| 순위 | 국가명  | VWP 가입여부 | 방미객수       |
|----|------|----------|------------|
| 1  | 캐나다  | BCC 발급   | 17,735,000 |
| 2  | 멕시코  | BCC 발급   | 15,089,000 |
| 3  | 영국   | O        | 4,497,858  |
| 4  | 일본   | O        | 3,531,489  |
| 5  | 독일   | O        | 1,524,151  |
| 6  | 프랑스  | O        | 997,506    |
| 7  | 대한민국 | X        | 806,175    |
| 8  | 호주   | O        | 669,536    |
| 9  | 브라질  | X        | 639,431    |
| 10 | 이탈리아 | O        | 634,152    |

출처: Inbound Travel to the U.S. 미상무부 산하 OTTI 홈페이지, 2007

20)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인접국으로서 Board Crossing Card(BCC)를 발급받아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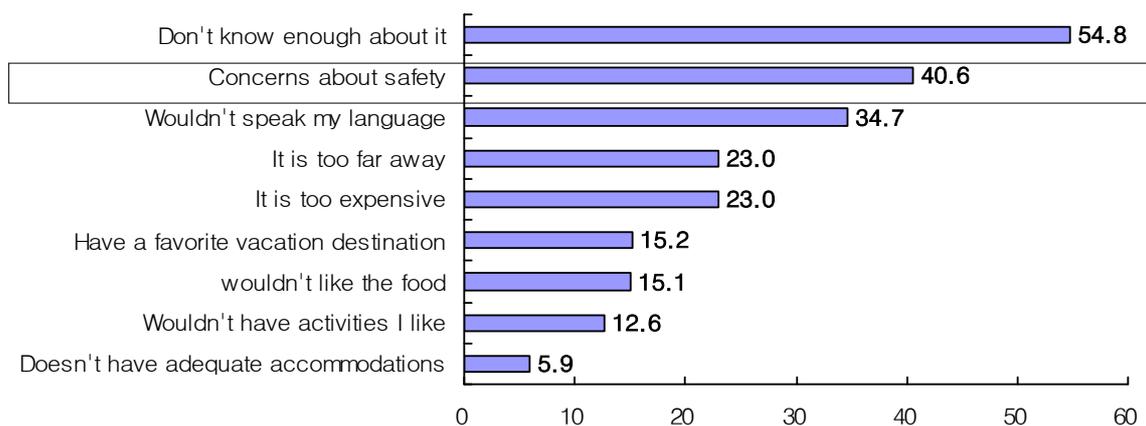
## 2. 국가 이미지 제고

### ○ VWP 가입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가 예상됨

- (국가 위상 제고)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VWP 가입국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적, 제도적으로 선진국 수준이며, VWP 가입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알리는 계기로써, 가입 후 국가 이미지와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관광 이미지 제고) VWP 가입은 우리나라에 대한 보안 이미지를 향상시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할 것임
  - 2005년 우리나라의 관광 이미지 조사<sup>21)</sup>에 따르면 서양인들의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 2위가 안전에 대한 우려임
  - VWP 가입을 계기로 전자여권, 항공 보안 요원 탑승, 여행자 정보 공유, 대테러 협력, 공항 보안 강화 등을 조치로 여행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에 따라 관광 이미지 제고가 기대됨

[그림 28] 한국 방문 비희망 이유(서양인 대상)

한국 방문 비희망자: 2,173, 단위:%(중복응답)



출처: 해외 정량조사 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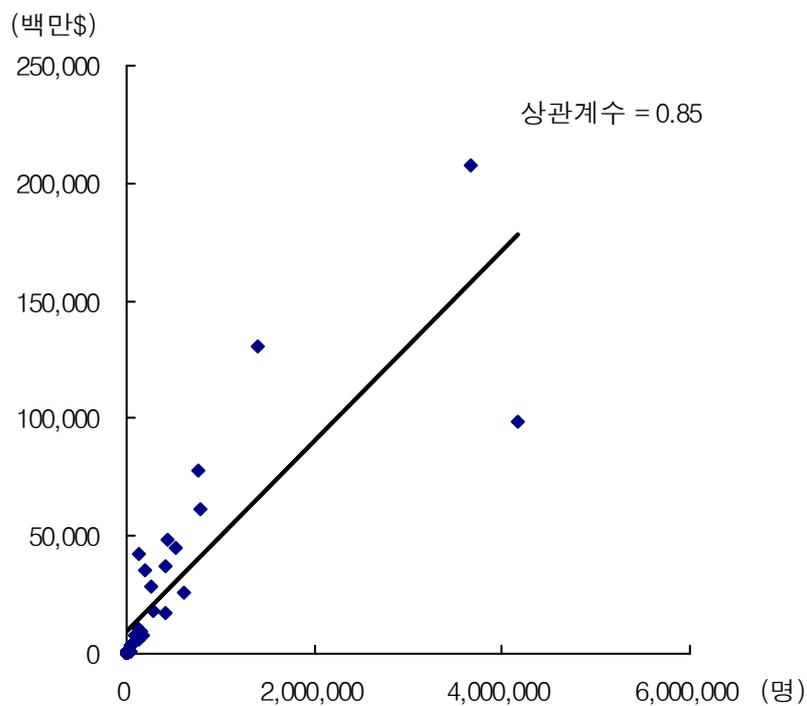
21) 해외 정량조사 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06

### 3. 한·미간 비즈니스 기회 확대

#### ○ 방미객수와 교역량 간의 상관관계 분석

- (각국별 방미객수가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VWP 가입국가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MOU 체결국가의 2006년 방미객수와 교역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방미객수가 증가하면 교역량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각국별 방미객수와 교역량 간의 상관관계분석



-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 나온 상관계수의 값 0.85는 두 변수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VWP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방미객수가 증가하면 대미 교역량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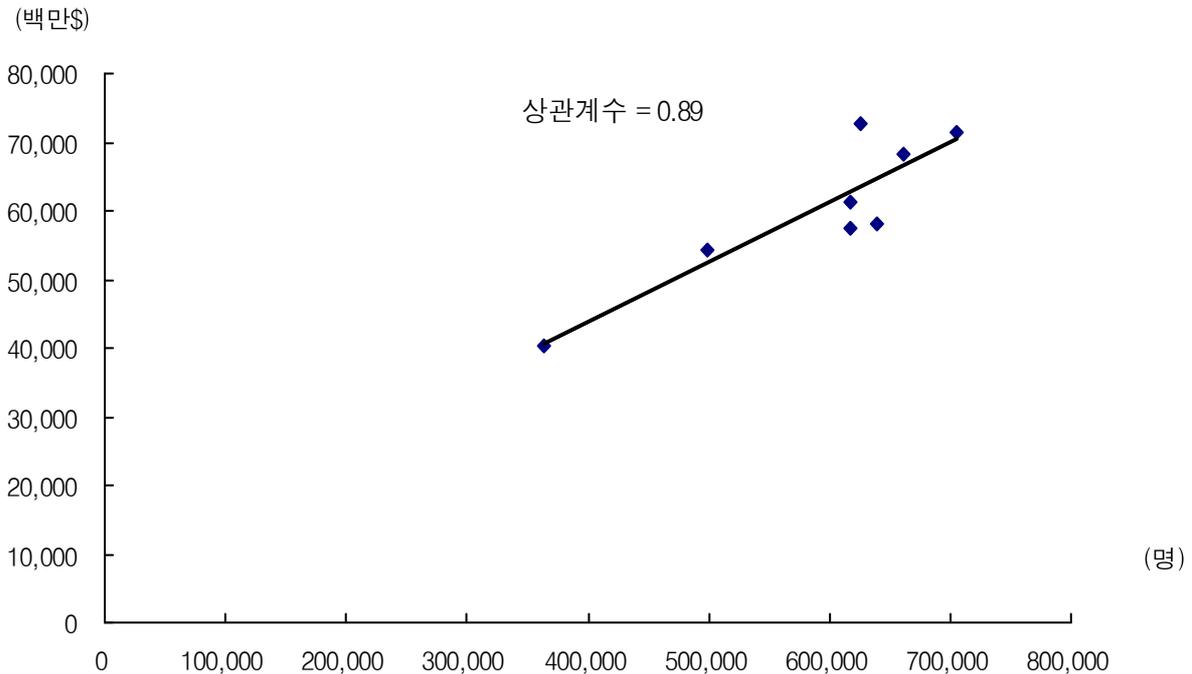
[표 51] 우리나라와 VWP 가입국의 방미객수, 교역량

| 국가명    | 방미객수(명-2006) | 교역량(백만\$-2007) |
|--------|--------------|----------------|
| 일본     | 3,672,584    | 208,166.8      |
| 영국     | 4,176,211    | 107,086.2      |
| 프랑스    | 789,815      | 68,965.2       |
| 독일     | 1,835,520    | 143,815.1      |
| 이탈리아   | 532,829      | 49,177.2       |
| 네덜란드   | 446,785      | 51,366.3       |
| 스웨덴    | 285,994      | 17,518         |
| 스위스    | 270,571      | 31,799.5       |
| 안도라    | 1,133        | 14.9           |
| 오스트리아  | 117,191      | 13,841         |
| 벨기에    | 188,311      | 40,570.9       |
| 덴마크    | 185,337      | 8,993.9        |
| 핀란드    | 87,904       | 8,399.6        |
| 아이슬란드  | 42,139       | 835.3          |
| 리히텐슈타인 | 1,468        | 300.4          |
| 룩셈부르크  | 12,202       | 1527.3         |
| 모나코    | 4,848        | 64.2           |
| 뉴질랜드   | 138,486      | 5,927.8        |
| 노르웨이   | 145,359      | 10,379.4       |
| 산마리노   | 514          | 15.3           |
| 스페인    | 424,224      | 20,360         |
| 브루나이   | 958          | 544.2          |
| 아일랜드   | 414,423      | 39,453.9       |
| 호주     | 603,275      | 27,826.7       |
| 슬로베니아  | 12,762       | 785.2          |
| 포르투갈   | 71,406       | 5527.8         |
| 싱가포르   | 122,995      | 44677.9        |
| 한국     | 757,721      | 82,207.1       |

출처: 미국 상무부(U. S. Department of Commerce)

- (우리나라의 방미객수가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연도별 방미객수와 교역량을 분석한 결과 방미객수가 증가하면 교역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0] 우리나라의 방미객수와 교역량과의 상관관계 분석(1998-2005)



-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의 값이 0.89로 두 변수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
- VWP 가입국가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VWP 가입으로 방미객이 증가하면 한·미간의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교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VWP 가입으로 인한 교포 사회의 영향) VWP 가입은 미국 교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인사회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인 사업장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것임
- 정치적으로는 한국인들이 미국에 소비를 많이 하고 대미관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앞으로 미국의 정치계에서 한인들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임
- 현 주미대사는 VWP 가입으로 동포사회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고 주장<sup>22)</sup>하며 VWP 가입 후 늘어나는 한국인 관광객 증가로 동포사회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22) 미 비자면제프로그램 미주 동포사회에 혜택, 한국일보, 이태식, 2006

---

---

---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제1절 VWP 가입의 기대효과

#### 1. 비용 절감 효과

- (연도별 비용절감 효과) VWP 가입 후 3개년 동안의 비용 절감액은 가입년도 약 1,407억 원, 가입 1년 후 약 1,621억 원, 가입 2년 후 약 1,693억 원의 연도별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 VWP 가입으로 절감되는 직접 비용과 시간 비용을 측정한 결과 2009년 일인당 예상절감액은 331,109원이며 여기에 2009년 절감되는 예상 B1/B2 비자 발급건수를 곱하여 직접 비용 절감액을 측정함
- (총 비용절감 효과) 미국 비자면제로 인한 정량적인 비용절감 효과는 총 2조 1,369억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비자 발급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순현재가치법(NPV)을 사용하여 연도별 절감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결과, 직접 비용 절감액은 약 2조 1,369억 원임

#### 2. VWP 가입으로 인한 직접효과

- (VWP 가입으로 인한 방한미국인 수 증가) VWP 가입으로 인한 방한미국인 수 증가량은 VWP 가입년도 141,397명, 가입 1년 후 243,511명, 가입 2년 후 266,989명으로 예측됨
  - VWP 가입 후 방한미국인 수 예측치에서 VWP 가입 전 방미한국인 수 예측치를 차감하여 VWP로 인한 방한미국인 수 증가량을 계산함

- 방미한국인 수와 방한미국인 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방한미국인 수를 추정  
한 결과, VWP 가입년도 734,034명, 가입 1년 후 851,082명, 가입 2년 후 889,871명  
의 미국인이 방한할 것으로 예측됨
  - VWP 가입 전 방한미국인 수 예측치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관광  
수요 예측치를 사용함
- (관광산업 직접효과) 방한미국인 증가를 통한 관광산업의 3개년 동안의 직접효  
과는 가입년도 약 1,261억 원, 가입 1년 후 약 2,172억 원, 가입 2년 후 약 2,382  
억 원으로 산출됨
- VWP 가입으로 인한 방한미국인 수 증가량에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금액을 곱  
하여, VWP 가입 후 3년 동안의 관광산업 직접효과를 산출하였음
  - 2009년 관광산업 직접효과 = 2009년 VWP 가입으로 인한 순수 관광객 수 141,397  
명 ×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금액 892,000원 = 약 1,261억 원
  - 2010년 관광산업 직접효과 = 2010년 VWP 가입으로 인한 순수 관광객 수 243,511  
명 ×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금액 892,000원 = 약 2,172억 원
  - 2011년 관광산업 직접효과 = 2011년 VWP 가입으로 인한 순수 관광객 수 266,989  
명 ×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금액 892,000원 = 약 2,382억 원

### 3. VWP 가입으로 인한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연도별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한 결과 2009년 약 2,196억 원, 2010  
년 약 3,783억 원, 2011년 4,148억 원의 파급효과가 산출되어, VWP 가입으로 인  
한 파급효과는 3개년 동안 총 약 1조 127억 원으로 예상됨
- 관광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 1.8301, 2000년 1.7429, 2003년 1.7415로 산출되  
었음
- 연도별 생산유발효과 = 연도별 관광산업 직접효과 금액 × 생산유발계수

- (부가가치유발효과) 연도별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한 결과 2009년 약 966억 원, 2010년 약 1,665억 원, 2011년 약 1,826억 원의 파급효과가 산출되어, VWP 가입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3개년 동안 총 약 4,457억 원으로 예상됨
  -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5년 0.7110, 2000년 0.7271, 2003년 0.7664로 산출되었음
  - 연도별 부가가치유발효과 = 연도별 관광산업 직접효과 금액 × 부가가치유발계수
  
- (고용유발효과) 연도별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한 결과 2009년 3,808명, 2010년 6,559명, 2011년 7,194명의 고용 파급효과가 산출되어, VWP 가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3개년 동안 총 17,561명으로 예상됨
  - 관광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995년 0.0446, 2000년 0.0346, 2003년 0.0302로 산출되었음
  - 연도별 고용유발효과 = 연도별 관광산업 직접효과 금액 × 고용유발계수 ÷ 단위 1,000,000원

#### 4. 정성적 기대효과

- (한·미관계 우호 증진) 우리나라의 VWP 가입은 한·미 양국간의 인적교류의 활성화와 한·미관계 우호증진이 도움이 됨
  - 한·미관계 관련 연구논문, 헤리티지 재단의 VWP에 대한 견해, 미국의 VWP 시행 목적, 현재 VWP 가입국가와 미국과의 인적교류 현황 등에서 VWP가 미국과 가입국가들의 관계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국가 이미지 제고) VWP 가입국가들의 전반적인 국제적 위상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VWP 가입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줄 것으로 예상됨
  - VWP 가입국가들의 GDP, OECD 가입 여부, IMD 국가 경쟁력 순위 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상위권에 속해 있음

- (한·미간 비즈니스 기회 확대) VWP 가입으로 인해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 물적교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미간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VWP 가입국가들의 방미객 수와 교역량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상관계수가 0.85로 높게 나와 인적교류 증가가 물적교류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2절 요약 및 보완 과제

### 1. 요약

○ 본 보고서의 기대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구분       | 세부 내용  | 기대효과 금액        |
|----------|--|----------------|
| 정량적 기대효과 | 비용절감 효과  | 총 2조 1,369억 원  |
|          | 관광산업 직접효과  | 3년 간 5,815억 원  |
|          | 생산유발효과   | 3년 간 1조 127억 원 |
|          | 부가가치유발효과   | 3년 간 4,457억 원  |
|          | 고용유발효과   | 3년 간 17,561명   |
| 정성적 기대효과 | <input type="checkbox"/> 한·미관계 우호 증진<br><input type="checkbox"/> 국가 이미지 제고<br><input type="checkbox"/> 한·미간 비즈니스 기회 확대 |                |

## 2. 향후 연구과제 및 보완 사항

- (기대효과의 보수적 계산)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할 때, 직접비용과 시간비용의 절감 요인과 B1/B2 비자 발급건수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최소의 기대효과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제 기대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B1/B2 비자 발급건수는 27개국의 VWP 가입국이 현재 발급받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함
  -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제적 기대효과의 수치는 최소 기대효과이며 각 요인들의 값을 다시 연구할 때에는 기대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연구의 보완점) 사례분석을 할 때, 국가별 가입 시기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들이 다르고, 국가별 차이점이 존재하여 연구에 한계가 있음
  - 1999년에 가입한 싱가포르의 경우 가입 2년 후인 2001년 9월 11에 미국 국제 무역 센터 비행기 테러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입국자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어 방미객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음